발 간 등 록 번 호
11-1613000-000186-01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2014. 1

국토교통부

제 출 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4년 1월

국 토 연 구 원
원장 김 경 환

【 제 목 차 례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1) 내용적 범위 ····· 4

2) 지역적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4

제2장 평가대상 지역개발사업 및 평가추진 현황 ····· 7

제1절 평가의 개념 및 유형 ····· 7

1. 평가의 개념 ····· 7

2. 평가의 유형 ····· 7

제2절 평가대상 지역개발사업 ····· 12

1. 지역개발제도 유형별 ····· 12

1) 신발전지역 ····· 14

2) 개발촉진지구 ····· 17

3) 특정지역 ····· 20

4) 지역종합개발지구 ····· 24

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개발구역 ····· 26

2. 사업유형별 ····· 30

제3절 평가추진 현황 ····· 31

1. 지역개발제도별 평가추진 현황 ····· 31

1) 신발전지역 ····· 33

2) 개발촉진지구 ····· 33

3) 특정지역 ····· 34

4) 지역종합개발지구 ····· 35

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개발구역 ····· 35

2. 지역개발사업 및 평가결과의 문제점 및 시사점 ····· 35
1)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 ····· 35
2) 지역개발사업 평가의 문제점 ····· 38
3) 시사점 ····· 40

제3장 평가추진 사례 ····· 41

제1절 전단계 평가 사례 ····· 41
1. 일본 국토교통성의 공공사업평가 ····· 41
2. 프랑스 정책평가 및 계획계약평가 ····· 43

제2절 사전평가 사례 ····· 46
1. 국토계획 평가 ····· 46
2.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 49
3.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 51
4. 교통시설 투자평가 ····· 53
5. 전략환경영향평가 ····· 56
6. 기업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평가사례 ····· 59
7.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조정 사례 ····· 62

제3절 집행평가 사례 ····· 64
1. 지역개발사업 집행평가 규정(지역균형개발법 및 업무처리지침) ····· 64
2.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 ····· 65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역개발사업 집행평가 사례(2009) ····· 69
4.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 70
5. 성과목표관리제도 ····· 74
6. 재정사업자율평가 ····· 76
7. 재정사업심층평가 ····· 77
8. 일본 지방자치단체 지역투자사업평가 사례 : 사무사업평가 ····· 78
9. 영국의 지역발전사업 성과평가 사례 ····· 80
10.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 83

제4절 성과평가 ····· 85
1. 일본 국토교통성 공공사업평가의 성과평과 ····· 86
2. EU LEADER+ 정책,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의 핵심성과지표 ····· 86

제5절 시사점 ····· 88
1. 전 단계평가 사례의 시사점 ····· 88
2. 사전평가 사례의 시사점 ····· 88
3. 집행평가 사례의 시사점 ····· 89
4. 성과평가 사례의 시사점 ····· 90

제4장 평가체계 구축 방안 ····· 93
제1절 기본방향 ····· 93
1. 평가의 목적 ····· 93
2. 평가의 기본방향 및 평가지표 선정 ····· 95
1) 평가의 기본방향 ····· 95
2) 평가지표 선정 ····· 95
3. 평가대상 지역개발사업 관련 기존 평가와의 비교 ····· 98
제2절 평가 절차 및 조직 ····· 100
1. 평가절차 ····· 100
2. 평가업무 관리조직 ····· 101
제3절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 102
1. 실현가능성 검증 ····· 103
2.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 106
3.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 ····· 111
4.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 평가 ····· 113

제5장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 115
제1절 제도개선 ····· 115
제2절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수립 역량 제고 ····· 117

[부록 1] 실현가능성 검증 평가표 및 작성서식 ····· 119
[부록 2]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평가표 및 작성서식 ····· 156
[부록 3]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 평가표 및 작성서식 ····· 175
[부록 4]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 평가 평가표 및 작성서식 ····· 178

【 표 차 례 】

[표 1] 연구의 내용적 범위(평가대상) ····4
[표 2] 지역개발사업 평가 유형 ····7
[표 3] 본 연구의 평가유형 ····8
[표 4] 중앙부처별 소관 지역계획 현황 ····13
[표 5]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 비교 ····15
[표 6]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현황 ····17
[표 7]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20
[표 8] 특정지역 지정 현황 ····23
[표 9]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절차 ····26
[표 10]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 ····28
[표 11]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절차 ····29
[표 12] 신발전지역 사전검증 대상사업 사업유형별 사업수 ····30
[표 13] 특정지역 사전검증 대상사업 사업유형별 사업수 ····30
[표 14] 개발촉진지구 사전검증 대상사업 사업유형별 사업수 ····31
[표 15]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평가관련 규정 ····32
[표 16] 7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내 단위사업 사전검증 결과 ····33
[표 17] 9개 개발촉진지구 단위사업 사전검증 결과 ····34
[표 18] 3개 특정지역 단위사업 사전검증 결과 ····35
[표 19]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38
[표 20] 공공사업평가 주요 평가항목 ····42
[표 21] 국토계획평가 대상 ····46
[표 22] '지역경쟁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예시 ····48
[표 23]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기준 관련 세부 평가기준 예시 ····48
[표 24]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항목 ····51
[표 2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항목 ····52
[표 26]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항목 개선안 ····52
[표 27] 2012년 기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국내사업 세부 평가항목 ····53

[표 28] 교통시설 투자평가의 평가부문별 주요 평가항목 ····· 55
[표 29]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비교 ····· 56
[표 30]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책부문 평가항목 ····· 57
[표 3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발기본계획부문 평가항목 ····· 58
[표 32]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공통기준 평가항목 ····· 59
[표 33]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관련 평가항목(공통기준) ····· 60
[표 34] 기업도시 유형별로 차별화되어 적용되는 개별 평가기준 ····· 60
[표 35]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조정사례의 부문별 주요 평가항목 ····· 62
[표 36]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 대한 평가원칙과 지표 ····· 63
[표 37] 공공사업평가 주요 평가항목 ····· 64
[표 38]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단계별 평가주체와 방식 ····· 66
[표 39] 부처의 평가방식 예 : 시·도자율편성사업 ····· 67
[표 40] 광특회계 지역개발사업평가의 평가 틀 ····· 67
[표 41] 지역계정 내역사업의 평가기준 ····· 68
[표 42] 광역계정 내역사업의 평가기준 ····· 68
[표 43] 2009년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단위사업 평가항목(신규, 변경, 집행사업) ····· 70
[표 44] 2009년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단위사업 평가항목(완료사업) ····· 70
[표 45]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추진절차 ····· 71
[표 46] 2012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지표 ····· 73
[표 47] 201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공통질문 항목 ····· 77
[표 48]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평가사업표 평가항목 예시 ····· 79
[표 49] RDA 성과평가의 사업목표에 따른 평가항목 ····· 82
[표 50] 구체적인 수치를 설정해야 하는 Tier 3 목표 ····· 82
[표 51] PART의 평가부문과 평가내용 ····· 84
[표 52] PART의 재정사업 분류 ····· 85
[표 53] LEADER+ 정책,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의 성과지표 ····· 87
[표 54] 지역개발사업 평가사례별 시사점 ····· 90
[표 55] 지역개발사업 평가지표의 선정기준 기존 사례 ····· 96

[표 56] 평가지표 선정기준 및 내용 ····· 97
[표 57] 평가대상 지역개발사업 관련 기존 평가와의 비교 ····· 98
[표 58] 평가대상 지역개발사업 관련 기존 평가와의 차이점 및 유사점 ····· 99
[표 59] 지역개발사업 평가업무 담당 방안 비교 ····· 101
[표 60]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요 ····· 103
[표 61] 개발계획안 실현가능성 검증기준 ····· 104
[표 62] 개발계획안 실현가능성 검증시기 및 일정 ····· 105
[표 63] 2012년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시범검증 기반시설사업 사업비 규모 ····· 106
[표 64]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기준 ····· 107
[표 65]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시기 및 일정 ····· 108
[표 66] 교통수요 평가주체 대안간 평가방법 및 장단점 ····· 109
[표 67]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내용 비교 ····· 110
[표 68]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수준 비교 ····· 110
[표 69]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기준 ····· 111
[표 70] 신호등 점검체계 등급기준 ····· 112
[표 71]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시기 및 일정 ····· 112
[표 72]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 평가기준 ····· 113
[표 73]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 평가시기 및 일정 ····· 114

【 그 림 차 례 】

[그림 1] 연구의 흐름 ····· 5
[그림 2]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 체계 ····· 12
[그림 3]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과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 수립 절차 ····· 16
[그림 4]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절차 ····· 19
[그림 5]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절차 ····· 22
[그림 6] 사업추진 단계에 따른 일본 국토교통성의 공공사업평가 유형 ····· 41
[그림 7] 국토계획평가 절차 ····· 47
[그림 8]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절차 ····· 49
[그림 9] 교통시설 투자평가 절차 ····· 54
[그림 10]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변경 ····· 57
[그림 1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발기본계획부문 평가절차 ····· 58
[그림 12]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검토 및 평가절차 ····· 61
[그림 13]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추진체계 ····· 72
[그림 14]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항목 중 '운영실적' 평가항목의 상세 ····· 74
[그림 15] LEADER+ 정책,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의 정책개입 논리와 기대 효과 ····· 87
[그림 16] 지역개발사업 평가지표 선정과정 ····· 97
[그림 17] 관련 주체별 지역개발사업 평가절차 ····· 100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미흡

- 그 동안 지자체 및 민간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하 '신발전법') 등에 근거하여, 정부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지정 및 지역개발계획 승인 하에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지역개발계획 수립·승인 단계에서 상당수의 개발사업이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수립 후에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1)]
  - 개발계획은 수립하였지만 지자체가 민간 사업시행자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해졌더라도 사업부지 또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객 및 입주수요 전망이 불투명하여 개발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또는 부지조성은 완료했지만 관광·휴양·산업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할 입주기업을 유치하지 못하여 개발사업이 중단되기도 함
  - 그리고 지자체가 직접 부지조성 및 시설설치는 완료했더라도 운영주체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시설이 방치되거나 유휴시설로 전락하는 경우도 나타남
- 현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신발전지역의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은 각각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안) 및 특정지역 개발계획(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등의 적정성·타당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국토교통부 조사(이현주 외. 2009. 2009년 지역개발사업 집행평가 연구)에 따르면, 지균법에 근거하여 199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부가 지정해온 개발촉진지구에 2008년 말 현재 총 628개 개발사업이 분포해 있는데, 그 중 278개(44.3%)와 158개(25.2%)의 사업이 각각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임. 나머지 192개 사업(30.6%)은 추진되지 않았거나(136개 사업) 개발촉진지구는 지정되었지만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56개 사업). 또한 완료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약 38.1%인 166개가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사업시행주체로서의 민간기업을 유치할 필요 없이 단순히 국비지원을 받아 지자체가 시행했거나 시행해온 기반시설 사업이라 볼 수 있음

○ 하지만 해당 규정은 지역개발계획(안)의 승인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 실현가능성 사전검증 내용 및 검증체계·지침의 구축·운영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 지역균형발전, 환경과 조화된 국토관리체제의 중요성 지속

○ 새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체감형 지역발전정책, 지역성장거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체제로의 전환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국민체감형 지역발전정책 :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지역활력 회복 추진
- 지역 성장거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자족성 강화, 새만금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제주국제도시의 발전, 낙후지역의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 환경과 조화된 국토관리체제로의 전환 : 개발사업 프로세스 전환, 과잉개발 예방, 난개발 방지

○ 특히, 국토부에서는 환경과 조화된 국토관리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 국토의 수용가능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발사업 평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 소관 지역개발제도의 통·폐합과 개발사업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검토하고 있음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가체계 도입이 필요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역개발사업들은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과계획 및 과개발, 예산낭비 등의 폐해를 일으켜 지역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기회비용을 초래함

○ 따라서 지자체가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한 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개발사업 추진단계별로 시의적절한 평가를 시행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평가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지역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평가추진 실태 파악

- ㅇ 국토부에서 추진해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평가추진 실태를 분석함
- ㅇ 이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방향을 모색함

□ 국내외 평가추진 사례 분석

- ㅇ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를 검토함
- ㅇ 국내외 평가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구축 시 시사점을 도출함

□ 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방안으로서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ㅇ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평가추진 실태 파악과 국내외 평가추진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사전평가, 집행평가) 구축 방안을 제시
- ㅇ 특히, 지역개발사업 중 국비지원 규모가 큰 기반시설사업(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구축된 평가시스템을 적용한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단계별 평가방안을 보다 구체화함

□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ㅇ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신발전지역의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등에 평가관련 세부내용을 보완함
- ㅇ 지자체의 평가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추진 지원 방안을 제시함
  - 특히 평가가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사업의 추진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팅 기능을 확대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 ㅇ 국토부 소관 지역개발제도 중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함
- ㅇ 또한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개발계획(안) 및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표 1] 연구의 내용적 범위(평가대상)

지역개발제도	시전평가		집행평가	
	지역·지구 종합계획	단위지구 및 사업	지역·지구 종합계획	단위지구 및 사업
개발촉진지구	-	ㅇ	ㅇ	ㅇ
특정지역	-	ㅇ	ㅇ	ㅇ
신발전지역	-	ㅇ	ㅇ	ㅇ
지역종합개발지구	-	ㅇ	ㅇ	ㅇ
해안권 및 내륙권	-	ㅇ	ㅇ	ㅇ

2) 지역적 범위

- ㅇ 상기 5개 지역개발제도는 전 국토에 걸쳐 지역 · 지구 · 사업대상지가 분포되어 있으므로, 평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함

2. 연구의 방법

- ㅇ 2차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 · 분석을 수행
- ㅇ 2012년부터 국토부와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전검증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 ㅇ 전문가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연구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
- ㅇ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들과 수시로 연구협의회를 추진

[그림 1] 연구의 흐름


연구방향 설정
지역개발제도 추진·평가 현황
지역개발제도 현황
지역개발사업 평가 현황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관련 평가사례 검토
국내사례
해외사례
적용가능성 검토 및
시사점 도출
평가의 기본 방향
평가유형 세분화
평가시스템 개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지표
종합화 방안
평가결과 활용
제도개선 방안

제2장 평가대상 지역개발사업 및 평가추진 현황

제1절 평가의 개념 및 유형

1. 평가의 개념

o 일반적으로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는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라는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정책평가란 설정된 정책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임(Poister, 1983)
- 또한 정책평가는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정책성과를 확인·검토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음(윤수재, 2003)
- 사업평가에서의 사업은 정책집행을 위하여 구체화된 정책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위수준의 정책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됨(정정길 외, 2007)

o 본 연구의 지역개발사업 평가란 평가대상이 되는 계획·사업의 목적을 확인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화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설정된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2. 평가의 유형

o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수준, 평가방법, 평가근거, 평가범위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함

[표 2] 지역개발사업 평가 유형

구분	유형			비고
평가주체	• 외부평가	• 내부평가(자체평가)		지자체 및 부처별 자체평가, 필요시 상급기관에서의 메타평가 병행이 일반적
평가시기	• 사전평가	• 과정평가	• 사후평가	과정평가와 사후평가는 성과평가에 해당
평가수준	• 과정평가	• 산출평가	• 영향평가	일반적으로 과정 및 산출평가가 주로 활용되며, 영향평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정성평가		일반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평가근거	• 법정평가	• 비법정평가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등은 지균법에 평가근거 명시
평가범위	• 종합평가	• 개별평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 후 종합화 과정을 거쳐 종합평가

○ 본 연구에서의 평가시스템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과정평가 방안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 평가단계별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임

○ 다만, 본 연구에서는 행정적 목적에서 시행되는 평가들에서의 용어들을 받아들여 과정평가는 집행평가로 통일하여 기술함

[표 3] 본 연구의 평가유형

구분	일반적인 평가유형 분류	본 연구의 평가유형
평가주체	• 내부평가(자체평가) • 외부평가	추후 결정
평가시기	• 사전평가 • 과정평가 (집행평가) • 사후평가 (성과평가)	지역개발사업의 사전평가와 과정평가 방안 구축 과정평가는 집행평가로 기술
평가수준	• 과정평가 • 산출평가 • 영향평가	사전 · 집행평가시 과정 및 산출평가를 활용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정성평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평가근거	• 법정평가	지균법, 지역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법정평가
평가범위	• 종합평가 • 개별평가	개별평가 후 종합평가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평가주체, 평가단계(시기), 평가방법 등에 따른 형식적 분류 이외에 평가의 목적, 평가의 수준, 평가의 기준 및 주안점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분류가 가능함

○ 미국의 정책평가학회(Evaluation Research Society)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평가실무를 망라하여 착수직전분석(front-end analysis),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 효율성 또는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프로그램과 문제의 모니터링(monitoring) 및 메타평가(meta-evaluation) 등 여섯 가지 유형의 정책평가 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 상기의 미국 정책평가학회에서 설정한 표준적인 정책평가 방법과 그 외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능률성 평가 및 적합성 평가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착수직전분석(front-end analysis)

○ 착수직전분석의 접근방법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시를 결정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임

o 착수직전분석은 문서, 기록 등 현존하는 자료와 그 이전에 평가를 실시하여 발견하였던 자료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수요(needs), 개념의 적합성, 운영적 측면의 실행가능성(operational feasibility), 재정적 지원의 소스, 기타 필요 자원(ex : 조직의 증설 등)을 재확인하거나 추정함

o 이를 통해 발견된 사실들은 프로그램 계획 수정, 적정한 집행수준의 결정, 프로그램 자체의 개설(install)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됨

o 착수직전분석은 본 연구의 지역개발사업 사전평가와 관련한 평가지표들을 구성하는 데 활용이 가능함

□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

o 평가성 사정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과지향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평가가 프로그램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예비평가의 일정임

o 평가성 사정은 프로그램이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과가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프로그램 평가가 성과를 증진시키는 데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유형임

o 따라서 평가성 사정은 본 연구에서 지역개발사업의 단계별 평가지표 설정을 위한 원칙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음

o 평가성 사정에서는 평가가 프로그램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한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함

① 프로그램의 목적의 명확한 제시

- 프로그램의 목적을 구체적인 프로그램 성과측정의 용어로써 정의하고, 측정에 관한 자료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획득 가능하여야 함

② 프로그램 가정들과 목적들의 실현가능성 확보

- 프로그램 활동들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어야 함

③ 평가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한 명확한 정의

- 프로그램 책임자들이 평가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정의하여야 함

□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

o 형성적 평가는 과정평가 또는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평가라고도 하며, 프로그램이 집행 과정에 있고 아직도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평가임

o 형성적 평가 또는 과정평가는 일반적으로 관리의 전략, 작업과정, 비용, 고객과 실무자들 간의 상호작용 등 집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활동들의 과정을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들 과정의 재 요소를 개선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프로그램 모니터링(program monitoring)

o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이며, 프로그램 집행의 모니터링 또는 행정적 모니터링, 프로그램 성과의 모니터링으로 구분됨

① 프로그램 집행의 모니터링

- 프로그램 집행의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이 당초에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대상 집단에 도달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원래 서비스하기로 하였던 수요들(needs)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 보완 · 개선 · 활성화 할 것을 건의하기 위하여 수행됨

② 프로그램 성과의 모니터링

- 프로그램 성과의 모니터링은 투입활동 및 산출물들을 측정하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사전에 설정한 성과와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둠
- 대부분의 정부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프로그램 성과의 모니터링은 실행가능성이 높고 유용한 평가대안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는 평가방법 중 하나임

□ 정책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o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라고 하면 정책영향평가를 의미할 정도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정책평가의 방법이며,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보아 잘 되어가고 있는지 여부를 발견하기 위한 평가방법임

○ 정책영향평가의 결과는 정책(또는 프로그램)의 계속, 확정 또는 감축과 같은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능률성 평가

○ 프로그램의 능률성 평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효과나 편익이 투입된 비용에 비추어 볼 때 정당화될 수 있느냐를 검토하기 위한 평가임

○ 편익비용분석 또는 투자효과분석과 동일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사용함

□ 적합성 평가

○ 프로그램의 목표와 전반적인 프로그램 타입이 사회정책적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평가임

○ 적합성은 프로그램이 채택한 수단이나 전략보다는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와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개념임

□ 평가종합(evaluation synthesis)

○ 평가종합은 하나 또는 다수의 평가를 통해 발견된 사실들을 재분석하여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하여 학습가능한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임

○ 행정기관이 정책을 조정하거나 감독하기 위해 수행하기도 하며, 국회 등에서 정책을 수정·보완·종결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수행하기도 함

□ 메타평가(meta-evaluation)

○ 메타평가는 평가 그 자체와 피드백 기능을 평가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평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음

○ 평가에 사용된 방법의 적정성, 사용된 자료의 오류여부, 도출된 결과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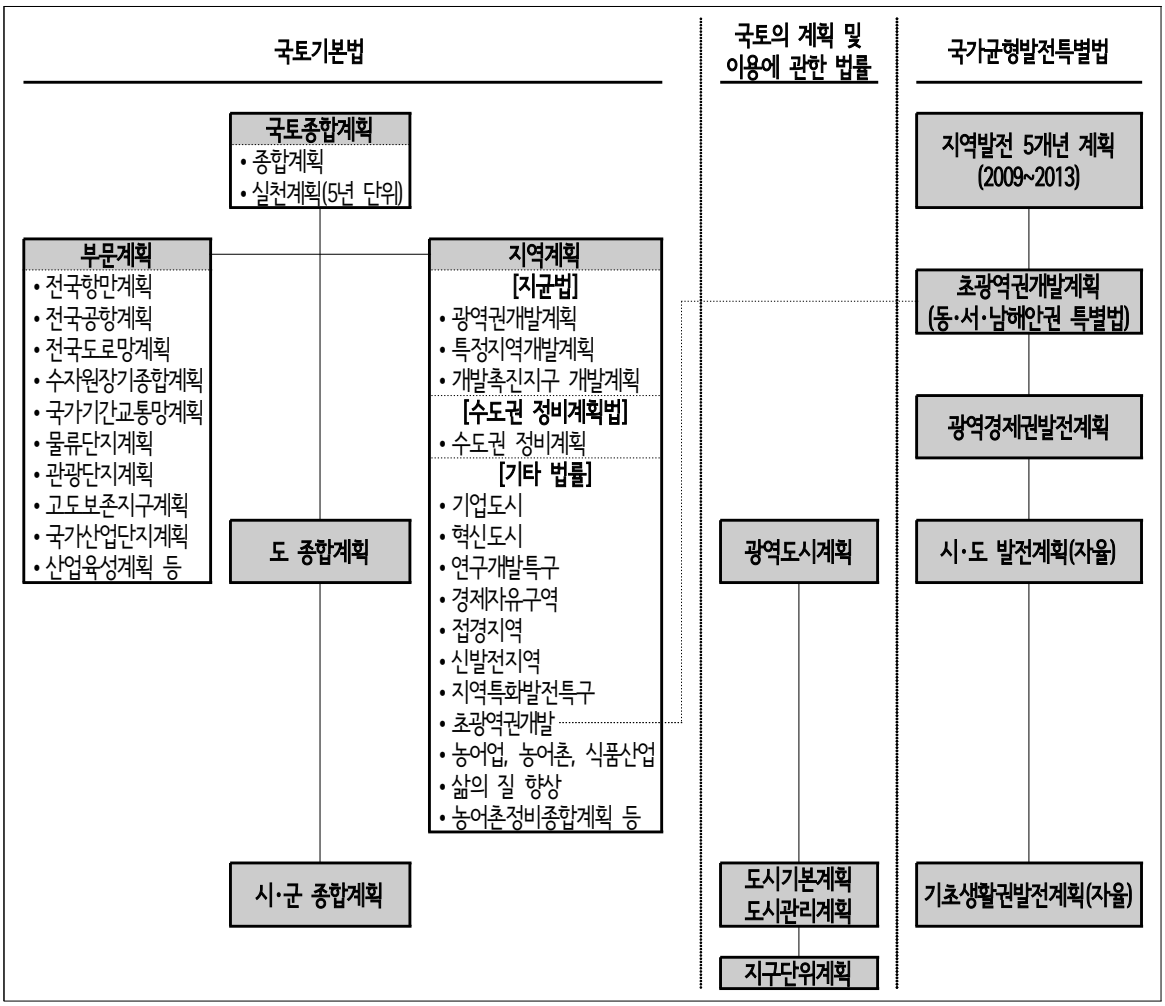
제2절 평가대상 지역개발사업

1. 지역개발제도 유형별

○ 우리나라의 지역계획은 「국토기본법」을 근간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종합계획과 광역·기초단위 행정구역별로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부처별 특성에 맞게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이와는 별개로 2003년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에 의해 지역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계획제도(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가 도입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8년부터는 3차원 공간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초광역발전종합계획, 광역경제권발전계획, 기초생활권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림 2]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 체계



o 중앙부처에서는 산업, 관광, 농·어업, 기반시설 등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세제감면, 재정지원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시·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의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o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의 신청 또는 공모를 통한 단일 사업이나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는 지역·지구에 포함된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추진되고 있음

[표 4] 중앙부처별 소관 지역계획 현황

구분	소관	계획	관련 법률
종합개발	국토교통부	광역권 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도서종합개발	도서개발촉진법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행정안전부	도서종합개발	도서개발촉진법
		소도읍육성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접경지역지원	접경지역지원법
	농림수산식품부	정주기반확충	농어촌정비법
		전원마을 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관광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진흥법
		휴양녹색농촌체험마을	농업농촌기본법
		어촌체험마을	농어촌정비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자원개발	관광진흥법
		문화역사마을	
산업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자유무역지역 조성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정비법
		지역농업혁신클러스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친환경농업지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수산물품질관리법
	중소기업청	향도산업육성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생활기반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정비법
	행정안전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환경부	도서지역식수원개발	수도법

1) 신발전지역

(1)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

□ 도입배경

- ㅇ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역개발은 국지적·개별적·단편적이라는 한계가 대두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의 계획과 추진과정에서도 개발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함
- ㅇ 이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하여 조세감면, 기반시설지원, 규제완화 등의 지원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신발전지역 제도가 도입됨

□ 정책목표

- ㅇ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 가능성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
- ㅇ 광역적 권역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 여건을 조성함

(2) 관련법령

- ㅇ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2008.9.29. 시행)
- ㅇ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 ㅇ 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훈령(신발전지역의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
- ㅇ 세부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한 예규(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주요내용

- ㅇ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개발도서)에 대하여 조세감면, 기반시설지원, 규제완화 등 지원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함

- 대상지역 : 신발전지역(균특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과 그 인접 시·군(전체면적의 50% 미만)을 연계하여 대상지역을 설정
- 구역·지구지정 : 개발사업과 기반시설사업 등이 포함되는 대상지역을 바탕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고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를 지정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대한 개발의 방향과 성격을 제시(국토부장관 직접 또는 도지사 요청에 따라 수립)하고 기본시책, 발전/투자촉진지구,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 기반시설 정비·확충, 소요재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 행정지원 :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기본/관리계획, 택지개발계획, 산단지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2/3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할 경우에 토지수용권을 부여

[표 5]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 비교

구분		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
정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
개념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등의 사업을 시행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촉진지구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특징		•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 토지수용권 및 행위제한	• 사업시행자 없음 • 토지수용권 및 행위제한 없음
지원사항	사업시행자	• 법인·소득세(3년 50%, 2년 25%) • 개발부담금(개발·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초지·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편의시설 설치자금 지원 • 개발사업 관련 채무 지자체 보증 • 기반시설 우선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보조 • 학교, 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입주기업	• 법인·소득세(3년 100%, 2년 50%) • 개발사업 소요자금 지원, 부담금 감면 • 편의시설 설치자금 지원 •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특례 • 임대산업단지 우선지정 • 주택공급 특례	• 법인·소득세(3년 100%, 2년 50%) • 개발사업 소요자금 지원, 부담금 감면 • 편의시설 설치자금 지원 • 기반시설 우선지원 •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특례 • 주택공급 특례
	주민	• 지역주민 우선고용 • 교육, 문화, 관광시설 지원 • 학교, 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지역주민 우선고용 • 교육, 문화, 관광시설 지원

[그림 3]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과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 수립 절차

절차	관련 내용
'종합계획 작성요령' 제정·송부	국토교통부→ 광역자치단체
종합발전계획(안) 작성	광역자치단체장 : 종합발전계획(안) 작성 후 국토교통부 제출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협의 →해당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사전환경성 검토*·협의 포함)→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최종 계획(안) 확정	종합발전계획 최종(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관보 고시 및 광역자치단체 통보
개발계획(안) 및 투자계획(안) 작성	광역자치단체장 :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작성 후 국토교통부 제출 * 사업시행자 작성시 :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검토 후 국토부에 제출
협의 및 심의	관계부처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포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최종 계획(안) 확정	국토교통부 :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최종(안)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국토교통부 : 승인 후 광역자치단체 통보 광역자치단체장 : 시·군·구 및 사업시행자에 통보

(4) 지정 및 추진 현황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신발전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 전남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이 2008년 12월 지정되었으며, 이후 2014년 1월까지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경상북도 낙동강권, 충청북도, 전라북도 동부권,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신발전구역이 지정됨

[표 6]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현황(2014년 1월 현재)

지역	지정일 (사업기간)	지정 범위	투자계획 및 주요사업
전남 서남권	'08.12.17 ('08~'20)	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진도 등 6개 시·군 782㎢	• 14개 지구(3조 6,987억원) - 발전촉진지구 6개, 투자촉진지구 8개 * '12.5.31 변경고시
경북 백두대간권	'11.4.19 ('11~'20)	안동·영주·문경·상주·예천·봉화·울진 등 7개 시·군 586.5㎢	• 15개 지구(2조 4,755억원) - 발전촉진지구 14개, 투자촉진지구 1개
경북 낙동권	'11.4.19 ('11~'20)	안동·의성·군위·청송·영양·영덕 등 6개 시·군 470.1㎢	• 12개 지구(2조 2,945억원) - 발전촉진지구 11개, 투자촉진지구 1개
충북	'11.4.19 ('11~'20)	증평·보은·옥천·영동·괴산 등 5개 군 302.7㎢	• 25개 지구(1조 6,904억원) - 발전촉진지구 11개, 투자촉진지구 14개
전북 동부권	'11.4.19 ('11~'20)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등 6개 시·군 506.6㎢	• 26개 지구(1조 5,420억원) - 발전촉진지구 15개, 투자촉진지구 11개
경기	'12.10.31 ('12~'20)	파주·포천·동두천·양주·연천 등 5개 시·군 3.78㎢	• 5개 지구(5,649억원) - 발전촉진지구 2개, 투자촉진지구 3개
충남	'12.10.31 ('12~'20)	서천·부여·금산·청양·예산·홍성 등 5개 군 60.8㎢	• 12개 지구(1조 7,804억원) - 발전촉진지구 2개, 투자촉진지구 10개
경남	'14.1.6 ('14~'20)	의령·거창·산청·고성 등 4개 군 9.9㎢	• 5개 지구(2,140억원) - 발전촉진지구 1개, 투자촉진지구 4개

2) 개발촉진지구

(1)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

□ 도입배경

○ 1994년 지균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지역개발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로서 개발촉진지구 제도가 도입됨

□ 정책목표

○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구의 지방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2) 관련법령

○ 지균법 제9조 :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개발촉진지구를 지정

(3) 주요내용

□ 지정유형 및 요건

- ㅇ 낙후지역형 : 지역의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 지수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 종사자의 인구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시·군 지역
  ※ 지정 총면적은 광역시·도별 총면적의 1/5 이내로 제한
- ㅇ 균형개발형 : 지역균형개발법상의 광역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ㅇ 도농통합형 :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시 중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를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근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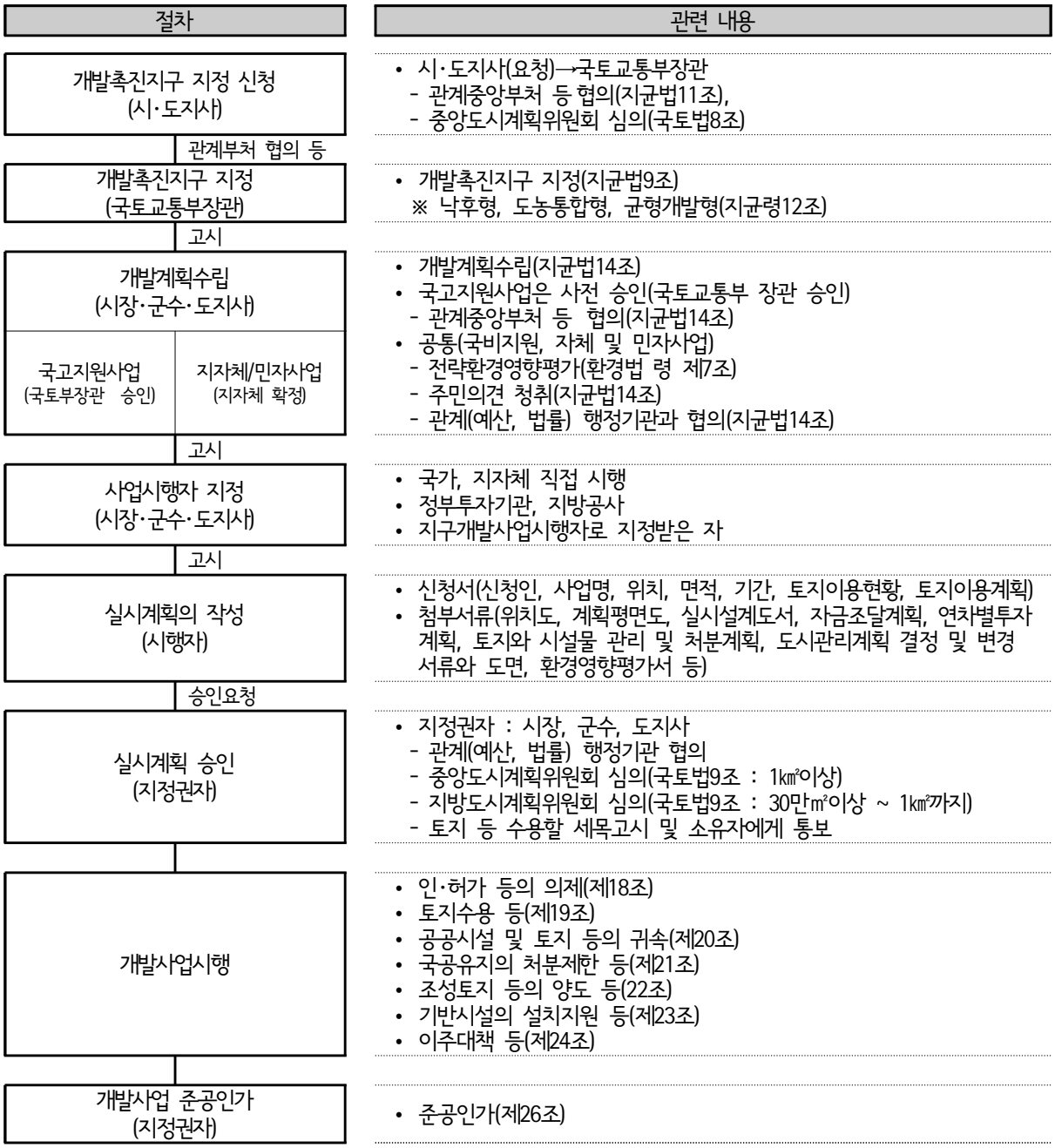
□ 주요 개발사업 유형

- ㅇ 관광휴양사업 : 리조트, 골프장, 스키장, 온천 등 소득기반 조성사업
- ㅇ 지역특화사업 : 화훼단지, 도예단지, 한우육성단지 등 소득기반 조성사업
- ㅇ 기반시설사업(국비 지원) : 도로 접근교통망 시설,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 지원사항

- ㅇ 재정지원 :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낙후지역형에 한하여 접근교통망, 관광휴양시설, 지역특화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상하수도 등) 등에 대해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국비를 지원(국토부는 지구당 500억 내외 지원)
- ㅇ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소득·법인세 4년간 50% 감면(중소기업에 한함)
- ㅇ 행정지원 및 절차간소화 :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전용 등 25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처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민간사업시행자가 대상토지의 2/3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확보 시) 등

[그림 4]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절차



(4) 지정 및 추진 현황

o 개발촉진지구는 2014년 1월 현재 낙후지역형 53개 지구와 도농통합형 2개 지구 등 총 5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 낙후지역형 : 수도권과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7개 도에 53개 지구
- 도농통합형 : 강릉(1998.12~), 춘천(2001.3~)

[표 7]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2014년 1월 현재)

구분	지구 시·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07~'09)	7차 ('09~'10)	8차 ('11년 지정)	'13~
계	53	7	7	6	6	7	6	8	4	
(7 道)	71	16	11	11	10	9	6	8	4	
강원	7 12	탄광지역 (태백·삼척 ·영월·정선)	영월·화천	평창·인제· 정선	양구·양양	횡성	고성	-	철원	
충북	5 5	보은	영동	-	-	단양, 괴산	-	증평	-	
충남	7 7	청양	홍성	태안	보령	-	서천/금산	-	-	부여
전북	8 9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	남원/김제	부안	
전남	9 14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장성	함평	고흥	무안
경북	11 17	소백산주변 (봉화·예천 ·문경)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동해연안 (울진·영덕)	영천/울릉	청도/군위 고령	성주	
경남	6 7	지리산주변 (하동·산청· 함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	거창	-	

주1) ▭ 안은 지구 기간만료로 지정이 해제된 지자체

주2) 홍천, 옥천, 예산, 정읍, 해남, 담양, 나주, 고성(경남), 창녕, 밀양 등 10개 시·군은 개발촉진지구 미지정 상황임

3) 특정지역

(1)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

□ 도입배경

- ㅇ 초기 특정지역 제도는 성장잠재력이 있고 개발효과가 큰 지역을 정부지원 하에 집중개발하여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풍부한 부존자원이 있으면서도 개발이 미진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제정하여 도입됨
- ㅇ 이후 1994년 지균법을 제정하여 광역권제도를 신설하고 개발촉진지구를 낙후지역 종합개발수단으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특정지역종합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됨
- ㅇ 그러나 광역권제도와 개발촉진지구로는 지자체의 다양하고 새로운 개발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 등이 대두되어 광역권제도와 개발촉진지구의 중간지역 개발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지역 제도가 재도입됨

□ 정책목표

○ 문화관광자원의 연계개발, 지역의 사양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기반 조성, 댐, 발전소, 재난지역 등 특수지역의 종합개발을 통해 지역 간의 균형개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2) 관련법령

○ 지균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시장·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음

-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쇠퇴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개발행위제한, 토지의 수용 및 사용 등은 개발촉진지구 규정을 준용

(3) 주요내용

○ 지정유형 : 문화·관광, 산업전환지대, 특수입지형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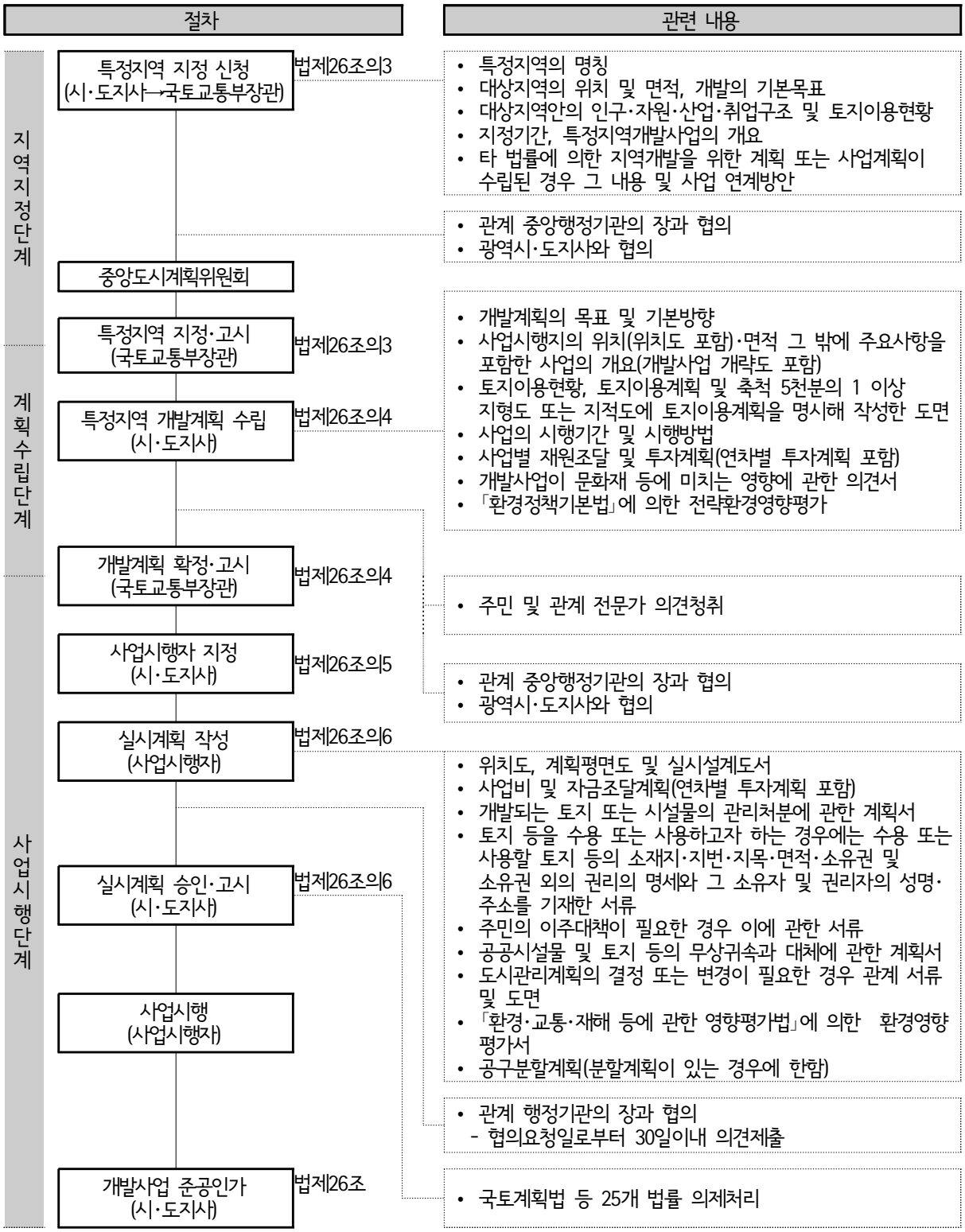
- 문화관광권형 : 역사·문화자원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주변지역 연계개발·정비
- 산업전환지대형 :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이 이전·쇠퇴하거나 지역의 부존자원고갈 등으로 지역경제기반 구축
- 특수입지형 : 자연재해·사업재해로부터 항구적 복구·정비 필요지역, 기타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한 개발

○ 공간범위 : 과도한 지정방지 및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도별 1개소 및 광역 지자체 면적의 30/100 이내로 지정

○ 산업전환지대형, 특수입지형 및 2개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지정가능하고 개발촉진지구와 중복지정이 가능

o 지원방식 : 개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국고지원(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실시계획 승인 시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등

[그림 5]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절차



(4) 지정 및 추진 현황

○ 지균법이 제정되어 특정지역 제도가 폐지된 1994년까지는 서울-인천 특정지역을 시작으로 12개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집중개발하였음

- 1994년 이전에 지정된 12개 특정지역 중 11개 특정지역은 개발이 완료되어 특정지역이 해제된 상황임
- 백제문화권(1993년 지정)은 특정지역이 해제되었지만 일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그리고 지균법을 개정하여 특정지역 제도를 재도입한 2002년 이후에는 8개 특정지역이 지정되었고, 향후 경기 북부 임진강 평화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임

[표 8] 특정지역 지정 현황(2014년 1월 현재)

명칭	지정일 (사업기간)	지정 범위	투자계획 및 주요사업
내포 문화권	2004.12.09 (2005~2014)	충남 서산·보령·홍성·예산·당진·태안· 서천 일원(955㎢)	• 총 60개 사업(1조 475억원) - 정신문화창달,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 시설확충, 기반시설확충 등
영산강 유역고대 문화권	2005.12.30 (2006~2015)	전남 나주·담양·화순·해남·영암·무안· 함평·장성 일원(809㎢)	• 총 42개 사업(1조 1,300억원) - 문화재정비, 문화유적 전승, 관광·휴양 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 등
동해안 문화권	2007.12.31 (2008~2017)	경북 포항·경주·영천·청도·군위·청송· 울릉·영덕·울진 일원(3,006㎢)	• 개발계획 미수립
해양농경 역사문화권	2009.12.21 (2009~2019)	전북 김제·정읍·부안·고창 일원(1,066㎢)	• 총 30개 사업(7,528억원) - 역사문화자원정비, 관광레저개발, 기반 시설 확충 등
중원 문화권	2009.12.23 (2009~2019)	충북 충주·제천·단양 일원(975.75㎢)	• 총 29개 사업(1조 7,274억원)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 관광자원 정비· 조성, 기반시설, 정주환경 등
동남내륙 문화권	2010.6.17 (2010~2019)	울산 울주, 경남 양산·밀양 일원(693.7㎢)	• 총 25개 사업(1조 536억원)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 관광자원 조성, 정주환경, 기반시설 설치 등
가야 문화권	2010.12.24 (2010~2019)	대구 달성, 경북 고령·성주 경남 거창·합천·의령·창녕군(853.2㎢)	• 총 33개 사업(8,260억원)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 관광자원 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
설악단오 문화권	2011.07.27 (2011~2020)	강원 강릉·속초·고성·양양·인제(536.9㎢)	• 총 18개 사업(1조 2,120억원)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 관광자원 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
백제 문화권	1993.06.11 (1994~2010)	충남 공주·논산·부여 전북 익산 일원(1,915㎢)	• 총 55개 사업(2조 9,482억원) -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시설, 도시환경, 교통시설, 계룡지역 개발 등

주) 백제문화권은 2010년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특정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일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지정 현황에 포함시킴

4) 지역종합개발지구

(1)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

□ 도입배경

○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는 활용실적이 미비한 종전의 복합단지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유통·교육·관광단지·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개별사업간 연계 및 관계사업에의 재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입됨

□ 정책목표

○ 공공기관 및 기업·대학의 지방이전시책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또는 산업·유통·교육·연구·문화·관광·주거·업무 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발전을 선도함

(2) 관련법령

○ 지균법 제38조의 2 :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 공공기관의 유치 등 지역의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3) 주요내용

□ 지정유형 및 요건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기업·대학의 지방이전시책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 산업·유통·교육·연구·문화·관광·주거·업무 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주요 개발사업 유형

○ 기반시설사업, 주거사업, 관광휴양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문화복지사업 등 다양

□ 지원사항

○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유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건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처분지원 등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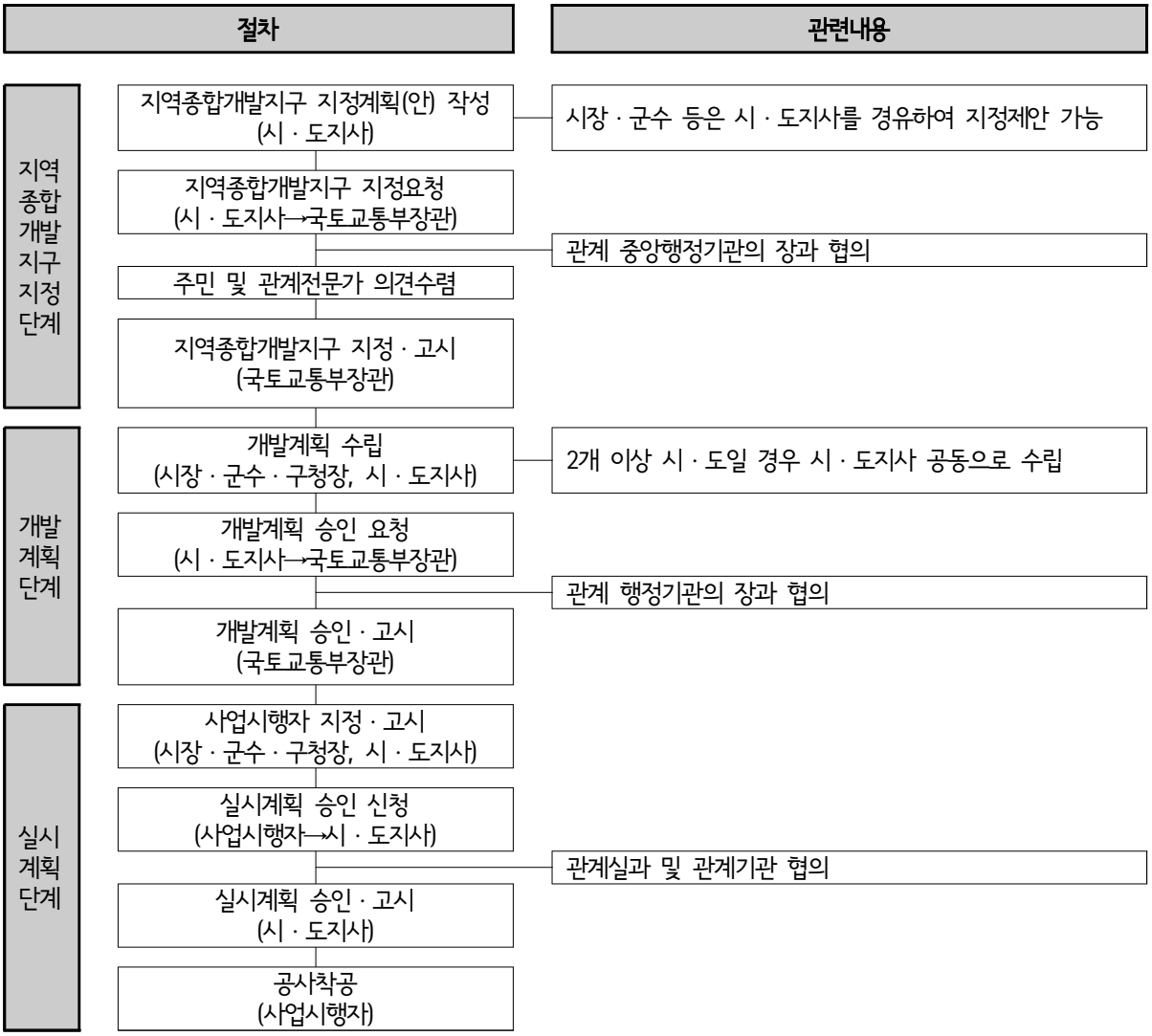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종전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의 매입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에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대책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4) 지정 및 추진 현황

○ 신경주역세권이 경주지역 부도심 육성을 목표로 2011년 9월 전국 최초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5월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됨

- 세부개발계획 승인 내용은 신경주역세권사업과 양성자 가속기 배후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천억원 이상임

[표 9]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절차



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개발구역

(1)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

○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을 선도하는 초광역 성장지대 육성 등을 목적으로 초국경지역을 포함하는 국내외 지역 간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됨

(2) 관련법령

○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3) 주요내용

□ 지정유형 및 요건

○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을 지정

- 해안권 개발구역 : 동해안·서해안·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
- 내륙권 개발구역 :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익성, 지속가능성, 지역여건 부합성, 실현가능성, 지역경제에의 기여 등을 요건으로 제시

- 개발사업이 해안권 및 내륙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 개발사업이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
-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 주요 개발사업 유형

○ 관광휴양부문 : 관광휴양 거점 구축 등

○ 지역산업부문 :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 등

○ 지역특화부문 :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 등

○ 기반시설부문(국비 지원) : 도로·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

□ 지원사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
- 기타 입주기업 자금지원과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이 가능

(4) 지정 및 추진 현황

- 2010년에 3개 해안권별(동해안권, 서해안권, 남해안권)로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4년 1월 현재 발전종합계획 수립 이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 계획 수립을 추진 중
  - 2013년 9월말 현재 3개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384개 사업 중 26개 사업(6.8%)만이 완료되었고, 85개 사업(22.1%)은 사업의 진척이 없음

[표 10]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추진현황(2013년 9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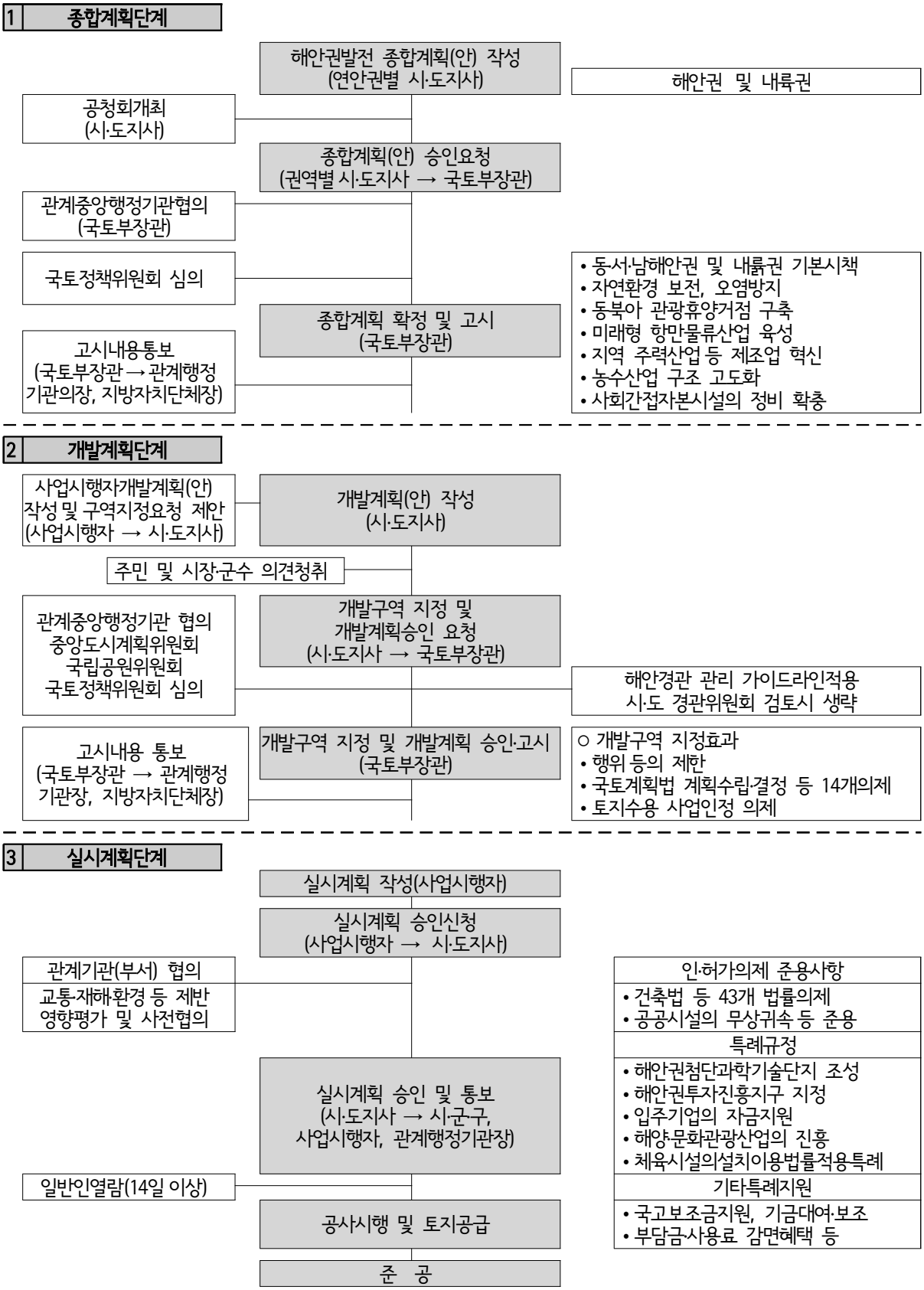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개)

구분	사업수	총 사업비				기투자액(13년 9월까지)				추진현황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미확정	조사	설계	착공	완료
동해안	119	247,763	99,044.0	36,878.0	111,841	55,707.8	35,334.4	5,152.9	15,220.5	31	20	17	48	3
서해안	99	252,568	77,757.3	33,077.7	141,733	32,098.3	5,016.0	2,543.0	24,539.3	26	34	8	28	3
남해안	166	242,512	69,784.0	31,863.0	140,865	45,298.0	8,430.0	8,363.0	28,505.0	28	49	15	54	20
합계	384	742,843	246,585.3	101,818.7	394,439	133,104.1	48,780.4	16,058.9	68,264.8	85	103	40	130	26

* 자료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3.12.17.)

- 3개 내륙권(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은 2013년 12월말 현재 발전종합계획 수립 중

[표 11]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절차



2. 사업유형별

-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실시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증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관광휴양사업, 산업단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는 관광휴양사업이 68.0%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촉진지구는 산업단지가 63.8%로 가장 많았음

[표 12] 신발전지역 사전검증 대상사업 사업유형별 사업수

지역	합계	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						
		소계	기반시설	관광휴양	지역특화	산업단지	주택공급	기타	소계	기반시설	관광휴양	지역특화	산업단지	주택공급	기타
합계	144	75	0	51	5	6	4	10	69	0	22	1	44	0	2
전남서남권	26	15	0	11	3	0	1	0	11	0	5	0	6	0	0
경기도	22	14	0	8	1	0	1	4	8	0	0	0	7	0	1
충남	28	6	0	4	0	1	0	1	22	0	10	0	11	0	1
강원	18	13	0	7	1	3	0	2	5	0	2	0	3	0	0
경남	9	5	0	2	0	1	0	2	4	0	3	1	0	0	0
인천	18	16	0	14	0	1	1	0	2	0	1	0	1	0	0
충북	23	6	0	5	0	0	1	1	17	0	1	0	16	0	0

* 자료 : 2012년과 2013년에 실시한 실현가능성 검증 대상사업을 재정리

- 특정지역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 대상사업은 3개 문화권의 59개 사업이었으며, 기반시설과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정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표 13] 특정지역 사전검증 대상사업 사업유형별 사업수

지역	합계	기반시설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	관광휴양
내포문화권	14	5	9	-
가야문화권	6	3	1	2
임진강평화문화권	39	13	15	11
합계	59	21	25	13

* 자료 : 2013년에 실시한 실현가능성 검증 대상사업을 재정리

-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의 대상사업은 9개 군 45개 사업이었으며, 기반시설사업이 24개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14] 개발촉진지구 사전검증 대상사업 사업유형별 사업수

지역	합계	기반시설	관광휴양	산업단지	지역특화	생활환경개선
군위군(변경)	2	1	1	-	-	-
청도군(변경)	3	3	-	-	-	-
거창군(변경)	1	1	-	-	-	-
진도군(변경)	1	1	-	-	-	-
부여군(신규)	11	5	4	-	2	-
예산군(신규)	13	6	5	-	-	2
금산군(변경)	6	2	-	2	2	-
남원시(변경)	2	2	-	-	-	-
장성군(변경)	6	3	1		1	1
합계	45	24	11	2	5	3

* 자료 : 2012년과 2013년에 실시한 실현가능성 검증 대상사업을 재정리

제3절 평가추진 현황

1. 지역개발제도별 평가추진 현황

o 본 연구의 평가대상 5개 지역개발사업(제도)와 관련하여 필수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지균법 및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국토부 자체평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연도별 지역발전사업평가가 있음

-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국비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됨

o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3.6.27 개정) 제6장에서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개발계획 중 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과 개발계획 집행결과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증대상 개발계획안 승인 요청시 개발계획 실현가능성 검증을 통해 단위사업 및 지구/지역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토부 자체적으로 단위사업 및 지구/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집행결과의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단위사업에는 완료사업도 포함됨

[표 15]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평가관련 규정

구분		내용
개발계획안의 실현가능성 검증 (사전평가)	근거법령	• 지균법 제14조 및 제26조의4
	검증대상	•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 •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 타 법령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중 검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증시기	• 지자체로부터 검증대상 개발계획안의 승인 요청시
	검증기준	[지역특화 및 문화관광분야] • 정책부합성 및 입지적합성 • 사업시행역량 •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 • 수요예측의 타당성 • 지역발전 기여도 [기반시설분야] • 사업의 공공성 • 사업의 적정성 • 모사업 진척도 및 연계성 • 타 사업과의 연계성 •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및 중복성
	검증방법	• 전문기관에 검증업무 위탁
	등급구분	• 적합, 조정, 부적합
	결과활용	• 개발계획 승인시 반영
개발계획 집행결과의 평가 (집행평가) ※해당연도 완료사업 포함	근거법령	• 지균법 제26조의2 및 제26조의7, 시행령 제30조 및 제30조의12
	평가대상	•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 •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개발계획 중 집행결과 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시기	• 매년 실시 • 지역종합개발지구 등은 필요시 평가
	평가기준	•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지역특성, 독창성, 지역여론 등) • 사업추진 실적(재원조달, 사업비 집행, 공정률 등) • 사업추진 성과(계획대비 입주 및 분양율, 이용객 등 수요, 사업효과 등) • 민자유치 노력도 및 유치실적 • 사업추진 노력(추진의지, 민원해소, 만회대책 등) • 사업추진체계와 추진방식의 효율성 • 규정준수 등(감사 지적, 법령 준수 등) •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평가계획에서 정한 사항
	평가방법	• 자체평가
	등급구분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결과활용	• 예산지원 및 편성시 지원규모, 지원시기 등 조정 및 삭감 • 개발사업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업제척, 사업규모 축소 등 개발계획 변경 권고 등

o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매년 광특회계를 통해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집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집행평가시 부처 자체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계정의 지역개발사업은 부처별로 광역위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특이사항 중심의 평가의견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1) 신발전지역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의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는 2012년 이전까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종합발전계획(안) 승인시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와 개발계획(안) 승인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가 사전평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 그러나 2012년부터 국토부에서 지역개발사업 사전검증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신규 또는 변경 신청되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의 단위사업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사전검증을 통해 7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의 단위사업들을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16] 7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내 단위사업 사전검증 결과(2012.03~2013.12)

구분	합계	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			
		소계	높음	낮음	부적합	소계	높음	낮음	부적합
합계	144	75 (100%)	20 (27%)	29 (38%)	26 (35%)	69 (100%)	37 (53%)	17 (25%)	15 (22%)
전라남도 서남권	26	15	6	7	2	11	8	3	-
경기도	22	14	2	-	12	8	4	2	2
충청남도	28	6	2	1	3	22	9	5	8
강원권	18	13	6	3	4	5	3	-	2
경상남도	9	5	1	3	1	4	4	-	-
충청북도	23	6	2	2	2	17	7	7	3*
인천광역시	18	16	1	13	2	2	2	-	-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대한 집행평가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4년 이후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지원법(지균법)」 제26조의2(집행평가) 및 지역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집행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2) 개발촉진지구

-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실시계획 승인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평가의 기능을 수행해 왔음
- 2012년부터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승인 이전에 국토부 자체적으로 외부 평가기관(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사전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표 17] 9개 개발촉진지구 단위사업 사전검증 결과(2012.03~2013.12)

구분	합계	적합	일부 적합	부적합
합계	45	38 (84.5%)	5 (11.1%)	2 (4.4%)
진도군(변경)	1	1	-	-
부여군(신규)	11	9	2	-
군위군(변경)	2	2 (1개 사업은 조건부 적합)	-	-
청도군(변경)	3	3	-	-
거창군(변경)	1	1	-	-
예산군(신규)	13	10	3	-
금산군(변경)	6	5 (3개 사업은 조건부 적합)	-	1
남원시(변경)	2	2	-	-
장성군(변경)	6	5 (1개 사업은 조건부 적합)	-	1 (변경 승인 전 개설)

- o 사업시행 이후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지원법(지균법)」 제26조의2(집행평가) 및 지역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국토부 자체적으로 국토부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 집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심사, 현지실사, 평가종합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구조조정 및 국비지원 연계,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등에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모니터링 차원의 집행평가 이후에는 단위사업에 의한 파급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o 국토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집행평가 이외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매년 광역특별회계 국비 지원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집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3) 특정지역

- o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특정지역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평가기능을 수행해 왔음
- o 2012년부터는 특정지역 개발사업 승인 이전에 국토부 자체적으로 외부 평가기관(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사전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표 18] 3개 특정지역 단위사업 사전검증 결과(2013년)

구분	합계	적합	일부 적합(조건부 적합)	부적합
합계	59	21(35%)	8(14%)	30(51%)
내포문화권	14	10	-	4
가야문화권	6	4	1	1
임진강평화문화권	39	7	7	25

○ 사업시행 이후에는 개발촉진지구와 마찬가지로「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지원법(지균법)」제26조의2(집행평가) 및 지역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국토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집행평가를 실시함

4) 지역종합개발지구

○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최근 신경주역세권이 지정되었으며, 기지정된 사례가 없어 평가는 시행되지 않았음

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개발구역

○ 2010년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된 3개 해안권의 경우, 사업추진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별도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 2013년 12월말 현재 발전종합계획 수립 이후 여건변화를 반영한 변경 계획이 수립을 위해 기존 384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자체평가가 이루어짐

2. 지역개발사업 및 평가결과의 문제점 및 시사점

1)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

(1) 사업내용의 문제점

□ 유사사업간 중복·분산 투자의 경향

○ 국토부, 산업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수의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별 연계가 부족하여 유사한 사업을 중복 또는 분산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도 혼란을 주고 있음

□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

- ㅇ 기반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생활환경 및 의료, 복지, 교육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ㅇ 즉, 기존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의료·복지수준 개선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와 관련된 사업은 소홀한 실정임
- ㅇ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은 민자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을 목표로 하는 관광휴양 및 산업시설 설치사업과 기반시설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ㅇ 투자실적을 보더라도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기반시설 부문은 높게 나타나지만, 지방비나 민자가 투자되는 지역특화·관광휴양 사업은 투자실적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지역실정에 적합한 차별화된 계획수립 및 지원 미흡

- ㅇ 지역개발사업의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다보니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들이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로건설 등으로 차별성이 부족함
- ㅇ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정부가 개발촉진지구별로 500여억원을 지원하나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해당 지역에 지원하고 있음
- ㅇ 지역주민들의 실정을 고려한 생활수준 향상 및 인구정착 등 낙후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2)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개발계획의 수립

- ㅇ 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등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 사업들은 주로 민자유치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ㅇ 그러나 광역적 차원의 검토나 사업 실현가능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지구가 지정되거나 사업의 착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의 실현가능성 또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관점에서 유사 개발사업 및 유사시설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개발수요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차별화 가능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대규모 면적을 대상 부지로 설정하거나 재원조달이 불가능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 착공 지연 또는 일부 시설만 운영됨으로써 지역활성화 효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o 또한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유치방안이나 수요확보 및 재원조달방법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투자의향만 나타내도 낙후지역 배려차원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무리하게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사업추진 지연 및 미추진

o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구체성이 미흡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민간투자 유치에 실패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수임

o 2012년 국토부에서 실시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2012.9, 국토부) 지역·지구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평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원제도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추진 실적 부진에도 지구 특성에 맞는 중간평가 없이 사업이 완료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o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등 2개 지역·지구의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총 1,055개 사업으로 매년 2,500억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3년 이상 경과한 사업 608개 중 27.3%(166개 사업)가 여전히 미추진 사업임

- 1,055개의 지역개발사업은 개발촉진지구 787개 사업과 특정지역 268개 사업이며, 3년 이상 경과한 사업은 608개이고 3년 미만 사업은 447개임
- 3년 이상 경과한 608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은 72.7%인 442개이며, 미추진 사업은 27.3%인 166개에 이름
- 미추진 사업 166개(개발촉진지구 128개, 특정지역 38개)에 대한 서면평가(사업추진도와 사업추진 노력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 결과는 우수 20건, 보통 91건, 미흡 55건으로 나타났으며, 추진이 미흡한 55개 사업(개발촉진지구 45개, 특정지역 10개)은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 부족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 제척을 요구

o 따라서 정기적인 평가·환류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추진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표 19]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2012년 6월 기준)

(단위 : 건)

구분	합계 (A+B+C)	3년 이상 경과사업			3년 미만 사업		
		소계(A)	추진 중	미추진	소계	국토부 국비지원(B)	기타(C)
합계	1,055	608	442	166	447	211	236
개발촉진사업	787	506	378	128	281	172	109
특정지역사업	268	102	64	38	166	39	127

주)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사업은 국토부 국비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타 부처 국비지원, 지방비 지원사업, 민자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자료 : 국토부 내부자료(2012.06)

2) 지역개발사업 평가의 문제점

(1) 평가제도의 문제점

□ 지역개발사업 평가·관리 시스템 미흡

o 각종 개별법에 따라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양산되고 있으나, 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발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국비지원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평가·관리 시스템이 미흡함

-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각 사업들의 추진 목표 및 방향 등이 최초 계획 의도에서 벗어나 추진되거나 시장 수요와 부합되지 않는 획일적인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개발사업의 지연, 민자유치 성과 미흡, 시대적 트랜드에 부합하지 못하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o 일부 사업은 정기적인 평가(집행평가 등)가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평가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실적 위주의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개별 지역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지역발전 효과를 갖는지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평가 또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지역·지구 특성에 부적합한 사업이 추진되어 지원제도의 효과 입증이 어렵고 사업의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한 사업이 다수 있음
- 잦은 사업계획 변경, 사업추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단계별 검증 또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기간 종료로 사업이 완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국토부 소관 지역개발사업 중 국비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며,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평가체계가 정교하지 못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지원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평가지원 정보시스템 부재

○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에는 평가업무가 주로 Off-line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사업추진의 목표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의 축적 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시 피평가자와 평가자간 혼선 등 평가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광역특별회계 지원 지역발전사업 DB와 온라인 평가지원시스템(REDIS 평가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평가의 용이성을 제고시키고 있음

(2) 평가제도 운영의 문제점

□ 평가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제도 미비

○ 제도화된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인하는 차원의 집행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

□ 평가의 실시 및 측정상의 문제

○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평가를 위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계량적인 평가지표의 적용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함

□ 평가의 지속성 부족

○ 국토부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집행평가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집행평가(지역발전사업 평가)는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평가인력 등의 부족으로 다수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3) 시사점

□ 전 주기에 걸친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 평가는 특정 단계의 평가만으로는 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전 주기에 걸친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토부에서 평가대상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평가단계별 평가자료가 축적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마련 필요

○ 평가가 단순히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평가결과를 예산과 연동시키거나 별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지역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제 및 개선사항의 모색, 후속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단계별 유기적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평가제도화 필요

○ 평가체계의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일회성이 그칠 수 있으므로 평가체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강제조항이 필요함

○ 그리고 평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적인 평가기관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연계성과 객관성을 높여나갈 수 있음

제3장 평가추진 사례

제1절 전단계 평가 사례

1. 일본 국토교통성의 공공사업평가

□ 개념 및 목적

○ 개별 공공사업별로 사전, 중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 사전/중간평가는 1998년부터 추진된 반면, 사후평가는 2003년부터 추가 도입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 유지보수, 재해복구사업을 제외한 국토교통성이 소관하는 모든 공공사업(도로, 하천, 해안, 항만, 공항, 철도, 하수도, 토지구획정리, 주택시가지 등)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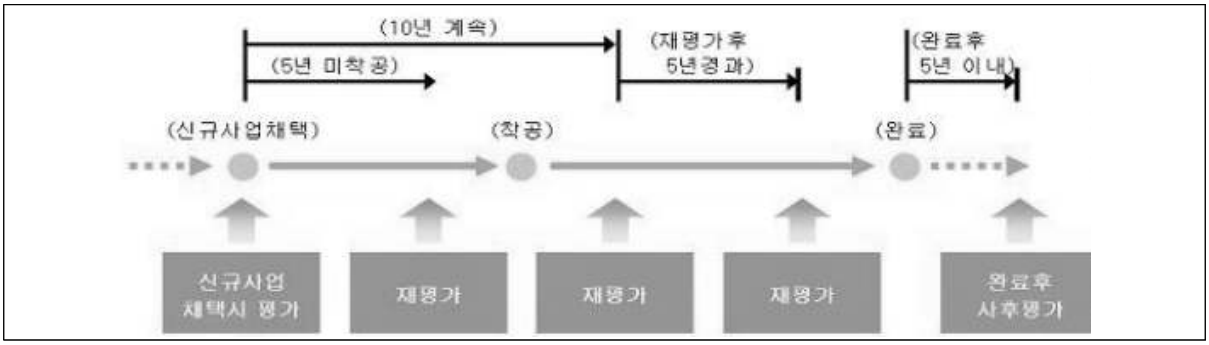
- 공공사업으로 건설하는 모든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은 국토교통성이 정하는 '공공사업평가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기술지침'(2008)에 의해 사업평가를 하도록 규정

○ 평가주체는 일차적으로 각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감사위원회·평가방법연구원회 등이 평가를 실시

□ 평가방법 및 항목

○ 평가는 사전, 중간, 사후의 평가시점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항목으로 운용되며, 원칙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하고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평가

[그림 6] 사업추진 단계에 따른 일본 국토교통성의 공공사업평가 유형



o 사전평가 : 국토교통성의 신규 공공사업에 대해 비용대비 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 등을 평가

- 2010년부터 계획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분석하여 정책목표를 명시하고, 대안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o 중간평가 : 사업채택 이후 5년간 미착공사업,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계속 중인 사업, 착공준비 및 실시계획 예산을 받고 5년이 경과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사업 계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평가 외에 사업수행 관련 사회·경제상의 변화나 사업 진척내용 및 향후 전망, 비용절감 및 대체방안의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평가

o 사후평가 : 사업완료 후 5년 이내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사업에 대해 평가하며, 정책목표와의 연계성, 성과 달성수준, 비용대비 성과,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 등에 대해 초점을 두고 평가

[표 20] 공공사업평가 주요 평가항목

평가구분	평가목적	주요 평가항목
신규사업 평가	신규사업 채택시 효과 분석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효율성 : 비용대비 효과 • 사업의 유효성 : 정책 목표 실현 기여도
기존사업 재평가	사업의 계속 진행이나 사업중지 여부를 결정	• 사업 진척도 • 사업 진척 전망 • 비용절감 및 대체안의 가능성
완료사업 사후평가	사업완료후의 효과, 영향 파악 및 평가방법 개선	• 정책목표와의 연계성 • 성과 미달 원인 • 성과의 달성도 • 비용 대비 성과

□ 평가결과의 활용

o 사업채택 이후 5년 동안 미착공사업, 10년간 계속 사업 등을 평가하는 중간사업 평가의 경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적인 진행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사업 중지 조치 가능

2. 프랑스 정책평가 및 계획계약평가

□ 정책평가 도입배경

- ㅇ 프랑스는 1990년대에 신공공관리론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부정책 평가에 중점을 두고, 공공정책평가에 관한 1990년 정부령(décret)에 의하여 정책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
- ㅇ 정책평가를 위해 부처간평가위원회(CIME), 평가과학위원회(CSE), 국가평가발전기금(FNDE), 기획청(CGP) 등을 설치
- ㅇ 1998년에는 중앙행정기관(회계감사원, 중앙조사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부처 소속 자체 감사실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었던 평가 업무를 통합
  - 기존의 평가업무를 담당하였던 평가과학위원회(CSE)와 부처간 평가위원회(CSE)를 폐지하고, 국가정책평가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évaluation: CNE)를 설치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평가 업무를 총괄
  - 최초로 정책평가의 개념 정의가 이루어졌고, 1993년에는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에 대한 평가를 거의 의무화(quasi-obligation) 하도록 제도화

□ 정책평가 대상과 체계

- ㅇ 정책평가는 정책사업별로 개별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정책사업은 2-3개 부처에 관련된 정부 특정과제를 중심으로 평가
  - 평가방식은 사전평가, 사후평가, 과정평가 모두를 적용
- ㅇ 기획청은 중앙부처로부터 평가대상과제를 받은 후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후 국정과제 평가목록이 선정되면 수상이 최종 평가계획을 기획청에 통보
- ㅇ 기획청은 민간자원자를 포함한 정책평가단을 구성하여 12개월 동안 평가
  - 평가기간은 원칙상 12개월이며, 최고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정책평가단 구성시에는 민간지원봉사자를 참여시켜 국민의 의견을 평가 결과에 반영
  - 실제로 평가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의회는 2008년 개정된 헌법 제24조에서 “의회는 공공정책을 평가한다”고 규정

o 프랑스 정책평가는 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연계성은 없고, 정책평가의 결과는 과정평가의 경우 정책을 지연, 철회하며, 사후평가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차후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제고하는 정보 축적

o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는 평가 기능을 통합하여 수상 직속의 국가정책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실무 평가단이 정책평가를 수행할 때 평가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 부여

□ 계획계약제도 도입 배경

o 프랑스의 국토 및 지역정책은 1982년 지방분권 실시 이전에는 중앙정부 차원 (DATAR)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

o 지방분권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특히 레지옹)가 지역발전정책 및 계획에 관련된 독자적 권한을 갖게 되면서 지자체의 협력 여부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계획계약제도를 도입

o 국가와 지역(레지옹)간 계획계약은 제1차 계획계약(1984-1988년), 제2차 계획계약(1989-1993년) 및 제3차 계획계약(1994-1999년)은 5년 단위로 체결되었고, 제4차 계획계약(2000-2006년)과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계획계약(2007-2013년)은 7년 단위로 체결

o 계획계약의 수립은 범부처 차원의 국토정책결정기구인 DATAR의 지침에 따라 국가의 대표인 레지옹 지사(préfet: 청장으로도 표기)와 지방자치단체(레지옹)의 대표인 레지옹 의회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완료

o 계약의 시행을 위해 계획계약 시행공동위원회(혹은 국가-레지옹 동수대표의 위원회) 설치

- 국가를 대표하는 레지옹지사와 레지옹을 대표하는 레지옹의회의장에 의하여 공동 주최되며, 위원회의 구성은 당사자들간의 상호 합의(국가 대표와 레지옹대표를 각기 절반씩)에 의하여 결정
- 계획계약 시행공동위원회는 계약사업의 시행을 조정하고, 계약사업의 기술적·재정적 조건은 당사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
- 공동위원회는 계약의 두 당사자에게 매년도 계약사업의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서를 이송
- 평가서에서는 사업시행의 재정적·물리적 측면을 기술하고, 가능한 한 계약사업의 경제적 영향도 언급

□ 계획계약에 대한 평가

o 계획계약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 차원과 레지옹 차원으로 구분 가능

- 중앙정부 차원의 경우 정부는 매년도 제2차 정기회기의 개최 때 이전의 사업시행기간 중에 행해진 사업전체를 평가하고, 계획계약의 집행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정부는 계획계약이 시행되는 제2차 년도부터는 계획계약의 성과에 대한 상세한 평가서를 작성

o 국가평가기관(Instance national d'évaluation: INE)은 중앙부처 및 DATAR의 대표로 구성되고, CGP의 대표가 주관

- 국가평가기관은 레지옹평가조정위원회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기술 및 방법론상의 의견 및 권고를 CGP와 평가예산관리자 및 최종 예산담당의 대표자에게 제안
- DATAR는 이러한 제안들과 함께 다른 평가기관들의 의견 및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차기 계획계약의 수립 지침과 시행과정에 반영하여 계획계약 제도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

o 국가평가위원회(Conseil national de l'évaluation: CNE)는 중앙부처의 요청에 따라 부처간 및 지역간 평가를 수행

- CGP는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 예산의 일부분을 평가 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 투자부분의 일부(6/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를 위해 배분

o 이 외에도 경제사회위원회(Conseil Economique et Social)와 DATAR가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의 시행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

o 레지옹 차원에서는 국토계획·발전레지옹협의회(CRADT)의 특별분과인 레지옹평가조정위원회(comité de pilotage de l'évaluation)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조정위원회는 지자체(레지옹의회)의 국장과 특별행정기관인 레지옹청(préfecture de la région)의 사무처장(secrétariat général aux affaires régionales: S.G.A.R)이 공동 주관하며, 위원은 두 대표를 포함하여 의회의원, 전문가로 구성

o 정부 주도 사업의 경우 공모에 의한 사전평가 후 계약체결

- 코뮌이나 레지옹은 스스로 수요를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국가전체적 관점에서 개개 지역 단위에 속박되지 않고 선별적 예산 지원 가능

제2절 사전평가 사례

1. 국토계획 평가

□ 개념 및 목적

○ 중장기·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검증체계 도입 필요성에 따라 2011년 5월 정부입법(국토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2년 5월부터 시행

-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를 평가함이 목적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 평가대상은 계획기간이 중장기면서 국토관리 등에 관한 미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29개 국토계획(국토부 소관 25개 계획, 타부처 소관 5개 계획)

- 기간상으로 5년 이상 중장기 계획, 공간상으로 국토 전역 또는 일정지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 정책계획, 내용상으로 전략적·지침적 성격이 강한 계획이라는 지침 하에 6개 종합·지역계획, 11개 기간시설 계획, 12개 부문계획 선정

[표 21] 국토계획평가 대상

구분	세부 유형
종합 및 지역계획	종합, 지역
기간시설계획	교통,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 댐 등
부문계획	주택, 농어촌, 산촌 및 산림, 하천 및 수자원, 연안 및 해양, 관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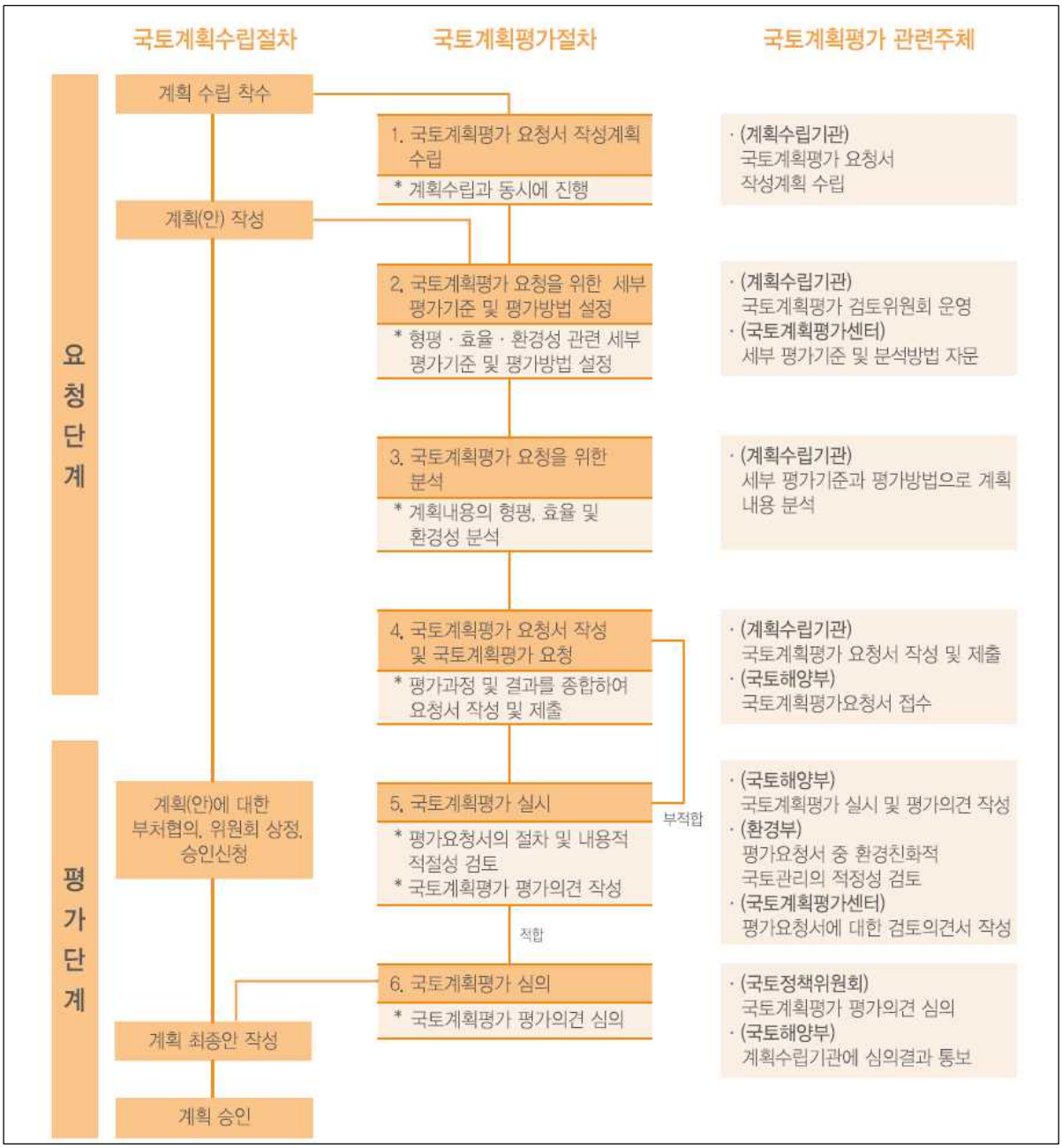
* 출처 : 국토교통부. 2012.8.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설명회 배포자료

○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계획내용을 스스로 점검 및 보완하는 차원으로 진행되며,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가 이를 지원

□ 평가방법 및 항목

○ 수립권자가 세부평가기준을 활용하여 매트릭스 또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분석표로 자체 평가결과(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토계획평가센터가 이를 검토하고 국토정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

[그림 7] 국토계획평가 절차



* 출처 : 국토교통부. 2012.8.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설명회 배포자료)

o 평가항목으로 평가대상 계획내용이 국토균형발전, 국토경쟁력 및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6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구체화시킨 세부평가기준을 활용

국토계획평가의 6개 평가기준 (시행령 제8조의 2)

① 지역경쟁력 기여도
② 지역간 균형발전 기여도
③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성 기여도
④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여도
⑤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기여도
⑥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o 세부평가기준은 국토계획평가의 업무처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어떠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결정할지(스코핑)에 대해서는 계획수립권자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계획의 내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평가방법은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별 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등 계량적 분석방법과 정성적 분석 모두 활용 가능

[표 22] '지역경쟁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예시(업무처리지침)

세부 평가기준	내용
특화산업 육성	•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조성 • 3차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 지역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 지역 특화자원 발굴 및 고부가가치화 • 지역 역사·문화·생태자원의 창조산업화, 융합관광자원화 • 도시·농촌·산림자원의 연계활용
자립적 경쟁기반 구축	•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 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 • KTX 역세권,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특화발전거점 개발

* 출처 : 국토교통부(2012).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표 23]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기준 관련 세부 평가기준 예시(업무처리지침)

세부 평가기준	범위
국토종합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과 정합성	• 대상계획의 내용이 국토종합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 • 대상계획의 내용이 국토종합계획의 추진전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 상위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부합하는지 여부 • 유관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부합하는지 여부
계획의 실현 가능성	• 계획을 실현할 법령, 제도, 행정조직 등 실행체계 구축 • 직간접적 규제 등 재원확보 방안 • 주민, 기업참여 등 거버넌스 구축

* 출처 : 국토교통부(2012).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평가결과의 활용

○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신설되는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계획수립권자에게 피드백하여 해당 계획을 보완·발전하는 데 활용

2.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 개념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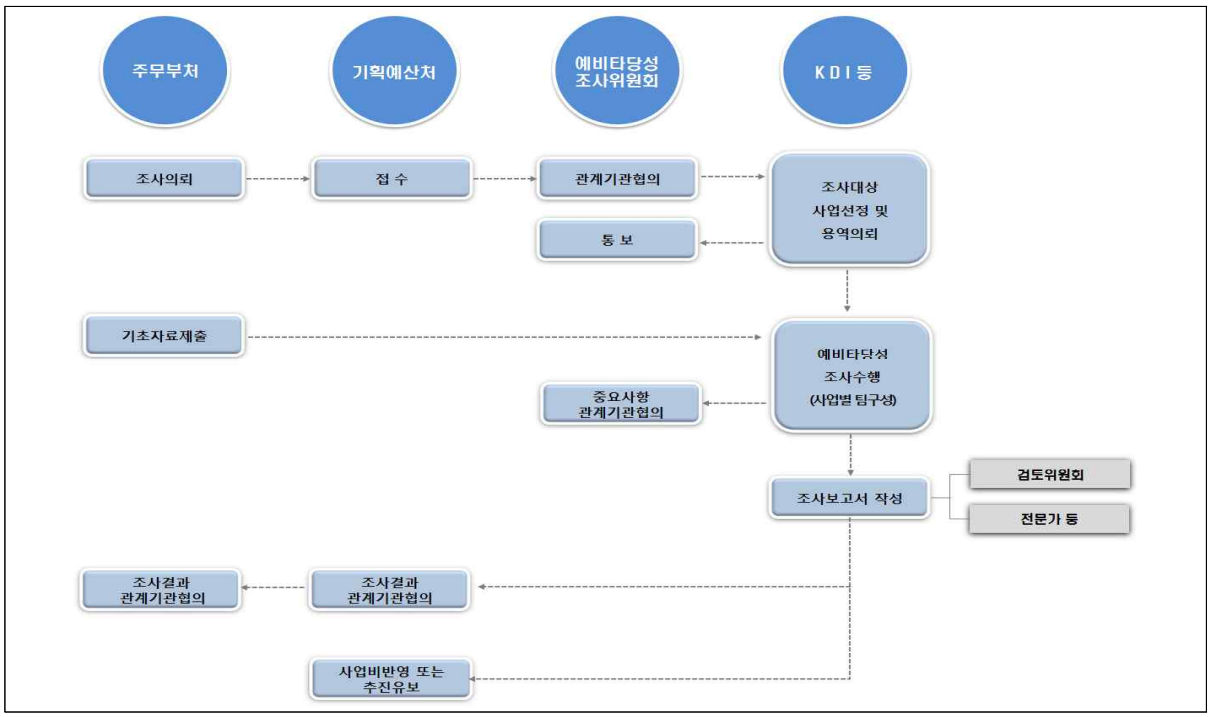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신규 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타당성조사가 기술적 타당성 검토에 초점을 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경제적·정책적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둠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사업(국가재정법 제 38조)이 대상

[그림 8]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절차



* 자료 : 기획재정부(2012).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바탕으로 재구성

○ 예비타당성조사는 '주무부처의 조사의뢰 -> 기획재정부 접수 ->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의 관계기관 협의 ->한국개발연구원 등 조사수행 -> 조사결과 반영' 절차를 통해 진행

○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 수행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원칙과 기준에 맞추어 과제가 관리될 수 있도록 개별 사업 특성에 맞추어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여 추진

□ 평가방법 및 항목

○ 평가는 각 분야별 표준지침상 기초자료 분석,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AHP기법을 활용한 종합 평가를 통해 추진되며,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활용하여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

- 수요추정 : 각종 분석모형과 직접조사로 해당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수요를 추정
- 경제적 타당성 평가 : 계량화된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B/C비율,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산정
- 재무적 타당성 평가 : 재정부담의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사업자체의 수익성 평가

○ **(정책적 분석)**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평가항목을 분석함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

○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간 불균형 심화 방지,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 **(AHP기법을 활용한 종합평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표 24]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항목

구분	평가요소	
기초자료 분석	• 사업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현황(인문, 지리, 경제 등) • 유사시설 사례분석	• 공학적 자료조사 및 분석 • 사업의 쟁점사항 파악
경제성 분석	• 수요의 추정 • 기술적 검토	• 편익, 비용, 비용편익 추정 • 민감도, 재무성 분석
정책적 분석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사업특수 평가항목	• 재원조달 가능성 •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 환경성 평가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분석	
종합평가(AHP)	• 사업추진 타당성 유무 • 투자우선순위 •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 투자시기 및 사업기간 • 기타 정책제언

* 주 : 기획재정부(2012).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바탕으로 재구성

□ 평가결과의 활용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해당 부처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높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3.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 개념 및 목적

○ 국고지원 없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

- 공공기관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2005년부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신규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1년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평가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 대상사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기타 특수한 사항으로 주무부처가 재정부와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

- 평가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평가

□ 평가방법 및 항목

○ 2012년 까지는 국내사업, 해외사업으로 구분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이 평가됨

[표 2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항목(현행, 2012년 기준)

국내사업	해외사업
• 공공성 40%, 수익성 60% - 공공성 40% : 경제성 20%, 정책성 20% - 수익성 60% : 재무성 40%, 기관의 재무안정성 20%	• 공공성 30%, 수익성 70% - 공공성 30% : 정책성 20%, 입지선정 10% - 수익성 70% : 재무성 50%, 기관의 재무안정성 10%, 해외사업 위험도 10%

* 자료 : 기획재정부(2012).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

○ 하지만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수익성 위주로 타당성을 평가하여, 비수익성 사업 중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사업의 경우 타당성이 불인정될 가능성이 발생함에 따라 2013년부터는 수익형, 비수익형으로 구분하여 사업특성에 맞도록 조정되어 적용

- 수익형과 비수익형 사업구분은 사업의 주된 목적(수익창출 여부 등), 정책목적 부합여부 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자문회의에서 결정

[표 26]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항목 개선안(2013년부터 적용 예정)

비수익형 국내 및 해외사업	수익형 국내 및 해외사업
• 공공성 70%, 수익성 30% -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 경제적 편익, 정책성 등 공공성 위주로 평가 실시	• 공공성 30%, 수익성 70% - 해외사업의 경우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국내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 비중을 10%p 상향

* 자료 : 기획재정부(2012).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현재 개편 중으로, 세부항목의 개선안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으나, 2012년까지 활용된 세부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이 수익성 지수분석결과(40%)와 비용편익분석의 결과(20%)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정책성을 평가하는 세부항목들 중 사업의 준비정도, 지역 낙후도, 이해 당사자의 사업 추진의지 등의 실현가능성 검증과 관련된 항목이 다수 포함

[표 27] 2012년 기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국내사업 세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공공성	경제성	• 비용/편익분석	
	정책성	필수평가 항목	•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 국가정책 및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 주무부처 등 이해 당사자의 사업추진의지 • 사업의 준비정도 • 환경성 검토 • 지역경제 발전효과 • 지역낙후도
		• 선택평가항목(개별 사업의 특수성)	
수익성	사업의 재무성	• 수익성 지수 분석	
	사업수행기관의 재무안전성	• 재원조달 가능성 • 부채비율(=부채/자본)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 차입금 의존율(=차입금/총자산)

* 자료 : 기획재정부(2012). 상게서

□ 평가결과의 활용

○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나타난 사업은 사업추진 중단조치

4. 교통시설 투자평가

□ 개념 및 목적

○ 교통시설 투자우선순위, 교통시설의 투자배분 등 교통시설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경제적·재무적 및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를 실시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 대상사업은 300억원 이상 교통시설 투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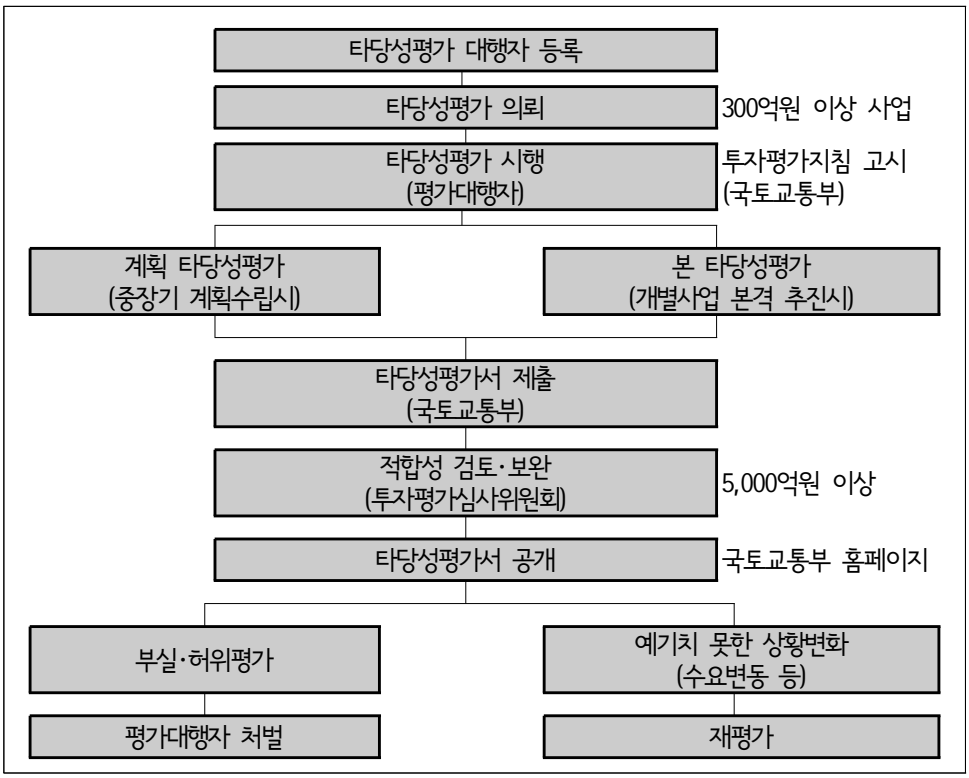
- 교통시설의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지역균형발전, 전략적 철도망 구축 등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평가 제외 가능

○ 타당성 평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평가대행자에게 대행 가능

□ 평가방법 및 항목

- o 타당성 평가 시기는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개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단계(이와 유사한 계획 또는 설계를 포함한다)에 해당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 o 투자평가에서 다루는 내용은 광의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위주로 하되, 네트워크 효과, 균형발전 등 정책적 타당성 분석도 포함
- o 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중장기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계획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사업 본격 추진 시에는 본 타당성 평가를 실시
  - 계획 타당성 평가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중장기 종합계획 및 수단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평가 실시
  - 본 타당성 평가 :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개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단계(이와 유사한 계획 또는 설계를 포함)에 해당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그림 9] 교통시설 투자평가 절차



* 자료 : 국토교통부(201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4차 개정.

○ 개별사업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사업 시행여부가 결정되지만, 종합사업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정책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함께 고려

- 종합사업의 타당성 평가(수단 내 및 수단 간 다양한 사업의 평가를 통한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정책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
- 개별사업의 경우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별도로 분리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나, 예외적으로 비용·편익 비율이 1이하인 경우에도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추진여부를 결정

[표 28] 교통시설 투자평가의 평가부문별 주요 평가항목

분류	대표적 평가지표	활용방식
경제적 타당성	• 비용편익비(B/C) • 순현재가치(NPV) • 내부수익율(IRR)	• 사업 시행여부 결정
정책적 고려	• 교통네트워크효과 • 교통안전성 및 국제기준 충족여부 • 환경영향 고려(전략환경평가 등 활용)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지역균형발전지표, 지역낙후도지수	• 개별사업의 경우, B/C가 1이하인 사업도 정책적 추진 필요성이 클 경우 추진 가능
재무적 타당성	• 재무적 내부수익율(FIRR) • 평균부채상환비율(DSCR)	• 민간유치 가능성 분석

* 자료 : 국토교통부(201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4차 개정.을 바탕으로 작성

○ 특히, 개별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편익비(Benefit/Cost를 말하며, 이하 “B/C”라 한다)가 1 이하인 사업 중에서도 그 추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정책적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함

□ 평가결과 활용

○ 교통시설 투자우선순위, 교통시설의 투자배분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며, 지자체의 경우 특정 교통시설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검증하거나 예산확보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업성의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 주로 활용됨

[표 29]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비교

구분	교통시설투자평가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근거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재정법
목적	•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 구축 등 국가교통정책 달성 도모 •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 교통시설투자 효율화	•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 도모
적용시기	• 중장기 계획 수립단계 • 본 타당성 평가 단계	• 예산 편성단계
평가대상	• 300억원 이상 교통시설 투자사업	•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
분석수준	• 교통계획모형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 전문적 상세 분석	• 예비적 타당성 분석
교통수요분석	• 국가교통DB 활용	• 국가교통DB 활용
평가방법	• 단일사업 : 경제적 타당성 평가위주로 하되 정책적 타당성 평가도 포함 • 수단내, 수단간 다수사업 : 투자우선순위 종합평가(경제성, 지역경제파급효과, 교통네트워크효과 등 포함)	• 단일사업 :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타당성 평가(AHP기법) • 수단내, 수단간 다수사업 : 미실시
평가기관	• 평가업무대행자 : 전문인력을 갖춘 엔지니어링 업체 및 교통연구기관 등	• 한국개발연구원(KDI)
해외사례	• 대부분 국가 시행	• 정부차원 사례없음 ※ World Bank에서 사용

* 자료 : 국토교통부(201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4차 개정). p.16.

5. 전략환경영향평가

□ 개념 및 목적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

- 각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 시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이나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
- 기존에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평가체계는 2012년 7월부터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보전목적 용도지역(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규모 개발사업(실시계획 및 시행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체계로 통합변경

[그림 10]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변경



* 자료 : 환경부(2012).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면 개편, 7.22부터 시행' 보도자료(2012.07.20)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이 평가대상이며, 대상계획도 기존 사전환경성 검토 93개 항목에서 101개 항목으로 확대

- 정책계획은 관광개발, 기본계획 등 지역적 범위가 넓고, 기본방향이나 지침적 성격이 강한 계획인 반면, 개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산업단지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계획에 해당

- 국토교통부 소관 48개 개발기본계획 중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의 지정, 특정지역의 지정, 특정지역 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지역종합 개발지구 개발계획 등이 포함

※ 개발기본계획 사업계획면적이 6만㎡ 미만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

○ 평가주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성검토위원, 관계 실·국·과,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담당함

□ 평가방법 및 항목

○ 평가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검토를 의뢰하여 시작되며,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에 대해 차별화된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 정책평가 항목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연계성·일관성, 적정성·지속성

- 개발기본계획 평가항목 :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표 30]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책부문 평가항목

정책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 환경정책,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공간계획의 적정성,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 환경용량의 지속성

[표 3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발기본계획부문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그림 1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발기본계획부문 평가절차

평가절차	관련 내용	
행정계획 입안 (관계 행정기관)	•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기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Scoping) (환경부장관, 계획수립 및 승인기관의 장 등)	•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협의회심의 생략 : 6만㎡ 미만(영 제8조) - 평가준비서 심의기간 : 30일(보완기간, 공휴일 제외) 이내	법 제8조, 제11조 영 제4조 영 제5조 영 제9조
스코핑결과 공개 주민의견 수렴	• 평가항목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14일 이상 공개	법 제11조 영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관계 행정기관)	•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서 초안 작성 -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반영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초안에 반영(개발기본계획)	법 제12조 영 제11조 영 제10조
공고·공람 주민 등 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관계 행정기관)	• 초안 제출 10일 이내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 공람기간 20~40일(공휴일 제외) - 공고·공람내용, 초안요약 :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 설명회 개최(초안의 공람기간 내) : 설명회 개최 7일전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 •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생략(법 제14조) - 타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법 제13조 절차 생략 가능 • 관계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30일	법 제12조 법 제13조 법 제14조 영 제12조 영 제13조 영 제15조
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14일 이상 게시	법 제13조 영 제1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관계 행정기관)	• 영 제21조제1항 내용 반영	법 제16조 영 제21조
협의 요청 (관계 행정기관→환경청)	• 개별법령에 따라 ①관계부처 협의 시, ②관계위원회 심의 전, ③계획의 승인 전에 요청	법 제16조
협의결과 통보 (환경청→관계 행정기관)	• 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부득이한 경우 40일) - 보완에 걸린시간 및 공휴일 제외	영 제25조

* 자료 : 환경부 내부자료(2012).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협의절차, 예정공정). p.3.

6. 기업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평가사례

□ 개념 및 목적

○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 전, 개발계획의 무분별한 남발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지구지정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평가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구와 개발계획이 평가대상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서에 대한 조사·분석과 평가자료의 구축 등은 조사·분석 전문기관(평가지원단)에 의뢰하여 수행하며, 평가는 별도의 평가단이 수행

○ 개발구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는 법적요건에 대한 심사 후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도시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

□ 평가방법 및 항목

○ 평가항목은 기업도시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할 공통평가기준과 기업도시 유형별 특성차이를 고려한 유형별 개별평가기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평가하며, 공통기준평가 600점, 개별기준평가 400점을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

○ 공통기준 평가항목은 ①국가균형 발전기여, ②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부합성, ③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성, ④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⑤기타 등 5가지로 구성

[표 32]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공통기준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국가균형 발전기여	• 지역경제 파급효과, 균형발전 필요성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 부합	• 자연 및 생태환경 보전 • 개략적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대책의 타당성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Ⅰ)	•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교통 접근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Ⅰ)	• 수요추정의 신뢰성 • 사업의 재무타당성 • 투자계획의 신뢰성 • 참여기업의 재무건전성 • 토지확보 용이성
기타 검토사항	• 정부재정 부담정도 • 안정적 지가관리 • 주민호응 및 지자체·기업체의 추진의지

* 출처 : 건설교통부(2005).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 및 시범사업선정, 평가기준 확정'(보도자료)

○ 공통기준 평가항목 중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평가항목은 수요추정의 신뢰성, 사업의 재무타당성, 투자계획의 신뢰성, 참여기업의 재무건전성, 토지확보 용이성 등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

[표 33]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관련 평가항목(공통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착안사항)
수요추정의 신뢰성	• 수요추정을 위한 가정, 지표, 추정방법의 정합성 • 수요추정 결과의 신뢰성 등
사업의 재무타당성	• 총사업비 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 재무성 분석방법 및 결과 등의 적정성 등
투자계획의 신뢰성	• 투자계획 및 투자자금 조달계획(외자포함)의 신뢰성 •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건설계획의 적정성 • 당해 지자체의 재정투자 여력 등
참여기업의 재무건전성	• 참여기업 신용 등급과 재무 상태 등
토지확보 용이성	• 자기소유토지 및 사용가능 국공유지 비율 • 용도지역·지구 등을 고려한 토지개발의 용이성 등

* 출처 : 건설교통부(2005). 상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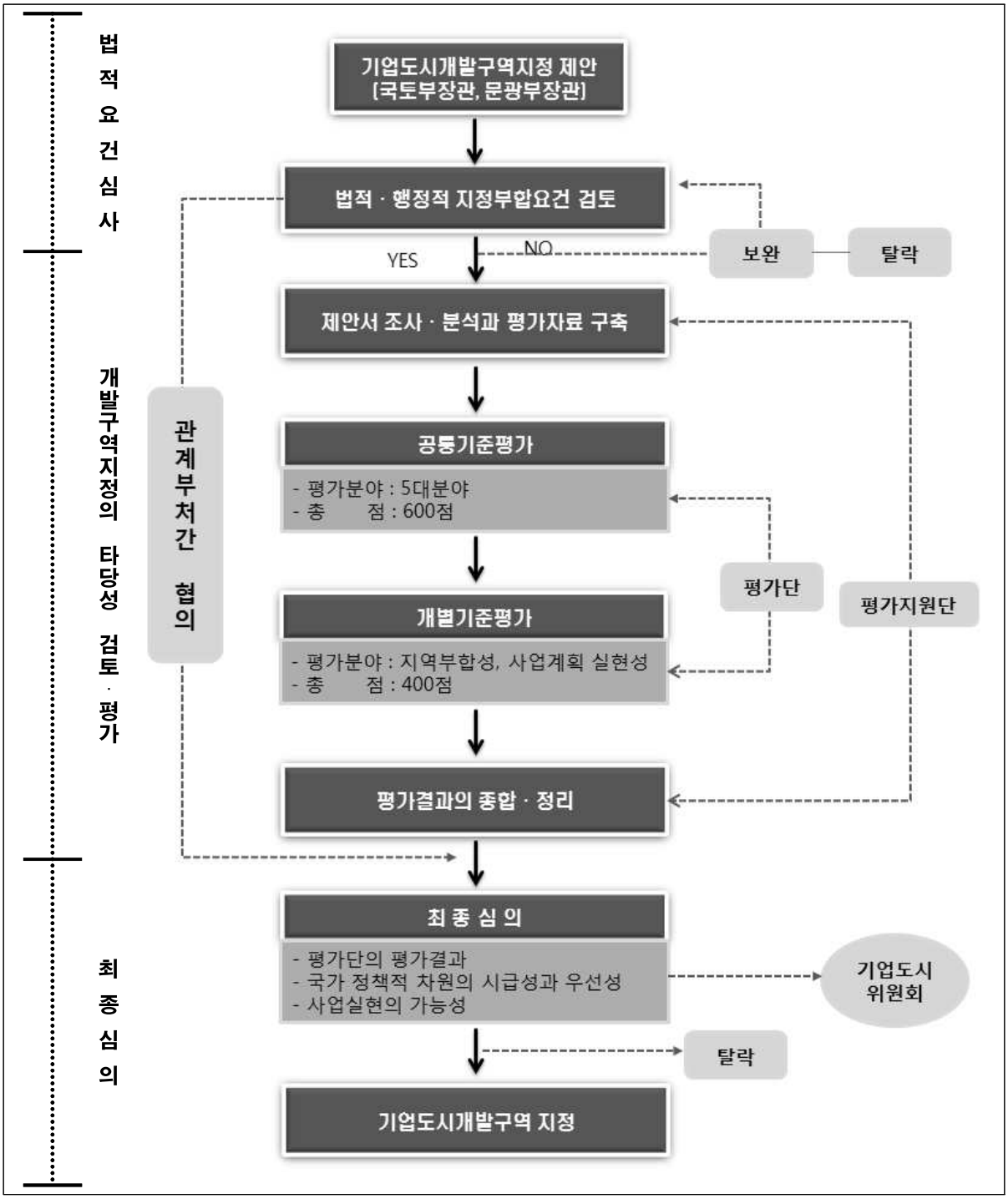
○ 공통기준 평가항목 이외에 기업도시의 유형(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져형)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평가기준이 적용됨

[표 34] 기업도시 유형별로 차별화되어 적용되는 개별 평가기준

유형	평가항목	평가내용(착안사항)
산업 교역형	수요추정의 신뢰성	• 수요추정을 위한 가정, 지표, 추정방법의 정합성 • 수요추정 결과의 신뢰성 등
	사업의 재무타당성	• 총사업비 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 재무성 분석방법 및 결과 등의 적정성 등
	투자계획의 신뢰성	• 투자계획 및 투자자금 조달계획(외자포함)의 신뢰성 •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건설계획의 적정성 • 당해 지자체의 재정투자 여력 등
	참여기업의 재무건전성	• 참여기업 신용 등급과 재무 상태 등
	토지확보 용이성	• 자기소유토지 및 사용가능 국공유지 비율 • 용도지역·지구 등을 고려한 토지개발의 용이성 등
지식 기반형	사업시행역량	• 직접 사용분 기능에 대한 참여기업의 경영실적과 개발 및 운영경험 등
	개발계획의 환경친화성	• 자연환경 보전, 신교통수단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 어메니티 확보 등
	지식기반시설 배치의 적정성	• 산학연 연계의 적절성 및 주변 산업클러스터와 연계 등
	계획상의 복합기능 적정성	• 지식기반시설 이외의 주거, 교육, 의료 등 복합기능의 적정 여부 등
	자족도시 발전 가능성	• 도시기능의 충족 여부 등 자족도시로의 발전 가능 여부 등
관광 레져형	사업시행역량	• 참여기업의 유사 개발사업 시행 및 운영 경험 등
	관광수요 창출가능성	• 창의적 관광개발 컨셉의 설정, 집객력 있는 관광레저시설의 도입 등 새로운 관광수요의 창출 가능 여부 등
	관광개발계획의 환경친화성	• 자연환경 보전, 신관광교통수단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 어메니티 확보 등
	관광레저시설의 창의성	• 관광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차별적인 관광레저시설의 도입 여부 등
	관광레저시설 배분의 적정성 및 연계성	• 특정 관광레저시설의 과다 도입 여부 및 관광레저 시설간 공간적, 기능적 연계성과 토지이용의 적정여부 등
	계획상의 복합기능 적정성	• 토지이용계획상 관광레저시설 이외의 주거, 교육, 의료 등 복합기능의 적정 여부 등
	자족도시 발전 가능성	• 도시기능의 충족 여부 등 자족도시로의 발전 가능 여부 등

* 출처 : 건설교통부(2005). 상게서.

[그림 12]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검토 및 평가절차



* 자료 : 건설교통부(2005). 상게서.를 바탕으로 작성

□ 평가결과의 활용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의 평가결과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초데이터로도 활용

7.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조정 사례

□ 개념 및 목적

○ 지역별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이 본격 수립됨에 따라 지역 간 종합발전구역의 형평성과 적정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종합발전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구역계와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을 검토·조정 실시(2010.12)

- 본 사례는 제도적인 기반에 따라 운용 중인 사례가 아닌, 대한국토·도시계학회의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한 사례임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계획부문)과 종합발전 구역(구역부문), 발전촉진지구(사업부문)의 3개 부문이 평가대상

○ 평가의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평가 추진

□ 평가방법 및 항목

○ 평가지표별 점수배점 방식을 통해 정량화된 점수로 산출되며, 계획부문, 구역부문,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 계획부문 평가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지침 준수 여부, 계획 목표와 추진전략, 실천과제의 적절성 여부, 시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여부 등을 평가
- 구역부문 평가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구역계 설정 합리성 및 탄력성,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지정신청 지자체 간의 구역면적 형평성 등을 평가
- 사업부문 평가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사업의 실현성 및 선도성, 개발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평가

[표 35]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조정사례의 부문별 주요 평가항목

분류	대표적 평가지표
계획부문	수립지침 반영여부, 전략수립 적절성, 의견수렴 및 반영도, 조직운영 등
구역부문	구역계 합리성, 구역계 탄력성, 지역간 형평성, 사업간 연계성
사업부문	사업 실현성, 사업 선도성, 사업 구체성, 사업 파급효과 등

* 출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내부자료

○ 특히, 사업부문 평가 중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입지의 적정성, 환경적 적합성, 사업의 특화성, 사업의 실현성 및 파급성, 정책적 부합성 등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

- 사업의 실현성 항목에 대해서 발전촉진지구는 토지확보정도, 예산계획의 실현성, 관련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반면, 투자촉진지구는 주로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정도, 사업협약 체결유무 등만을 간략히 평가

[표 36]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에 대한 평가원칙과 지표

구분	평가원칙	평가지표
발전촉진지구	수립지침 준수여부	지구지정 지침준수의 여부 및 적정성
	입지의 적정성	입지적 접근성, 기반시설 확보 정도
	계획의 합리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 수립여부
	환경적 적합성	사전환경성 검토결과, 환경규제지역 포함비율
	사업의 실현성	토지확보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정도, 예산계획의 실현성, 관련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의 특화성	지역특성을 감안한 사업계획 수립 여부, 광역지자체 전략산업과 부합여부
	사업의 파급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성, 주요 사업과의 연계추진 가능성
투자촉진지구	수립지침 준수여부	지구지정 지침준수의 여부 및 적정성
	정책적 부합성	사업목적의 정책적 적합성
	사업의 추진정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 가능성, 기반시설 확보정도
	사업의 실현성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정도, 사업협약 체결여부

* 출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내부자료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구계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계획내용의 변경이 가능

제3절 집행평가 사례

1. 지역개발사업 집행평가 규정(지역균형개발법 및 업무처리지침)

□ 개념 및 목적

○ 지균법 제26조의2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개발계획 등의 집행결과 평가를 규정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 광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계획과 단위사업

[표 37] 공공사업평가 주요 평가항목

평가구분	사전단계	집행단계	사후단계
광역개발계획	-	• 사업별 추진현황 및 투자 실적 • 개발된 토지 등의 분양실적 •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 여론 동향 •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 • 사업의 기간, 위치, 규모 변경 등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계획 (전체사업평가)	• 개발계획의 독창성, 지역 특성과 정합성 • 투입된 비용과 산출된 편익 분석	• 지구 전체사업의 추진현황, 지구개발사업의 추진공정의 적절성 • 사업비 집행실적, 재원조달 타당성 • 추진체계 및 추진방식의 효율성 • 사업 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효과 • 투입된 비용과 산출된 편익 분석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단위사업 (단위사업평가)	-	• 실시계획상 계획 대비 각 부문별 연차별 누계 실적 • 주민 호응도 • 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 계획수립당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완료 후 실제 수요/효과 비교분석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09.12), 「2009 지역개발사업 집행평가 연구」

□ 평가방법 및 항목

○ 광역개발계획의 경우 지균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사업별 추진현황 및 투자실적 등 6개 항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

o 개발촉지구와 특정지역 개발계획의 집행평가는 매년 이루어지며, 평가대상은 투자대상별(국가지원사업, 지방비 지원사업, 민자유치사업), 사업유형별(기반시설사업, 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o 개발촉지구와 특정지역 개발계획의 집행평가는 단위사업 평과와 전체사업 평가로 구분되며, 전체사업 평가는 단위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짐

- 단위사업 평가항목 : 실시계획상 계획대비 각 부문별 연차별·누계 실적, 주민의 호응도, 계획수립 당시 예측한 수요·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 실제 수요·효과의 비교·분석,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와 영향 등을 분석
- 전체사업 평가항목 : 지구전체 사업추진 현황, 재원조달의 타당성(국비, 지방비, 민자로 구분), 투입된 비용과 산출된 편익의 분석, 사업추진체계와 추진방식의 효율성, 개발계획의 독창성과 지역특성과의 적합성, 그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o 단위사업 평가결과는 완료, 정상추진, 촉진필요, 폐지로 구분

- 완료 : 사업이 완료된 경우
- 정상추진 : 사업시행자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촉진필요 : 사업시행자가 없으나, 적극적인 사업자유치 노력과 사업시행자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폐지 : 사업시행자도 없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없는 경우

□ 평가결과의 활용

o 국토부 장관은 개발계획의 집행결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지구에 대해 지구 지정 해제, 개발계획 변경, 예산지원 삭감 등으로 조치할 수 있음

2.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

□ 개념 및 목적

o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 간 생산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사업의 책임성, 효율성 및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 2011년 평가는 2010년 광특회계로 지원된 부문별-광역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지역계정, 광역계정 및 제주계정의 3개 계정 사업에 대해 평가

- 균특법상 평가대상은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으로 지역발전 시행계획에 담긴 모든 사업(일반회계, 광특회계, 기금, 지방비, 민자)이나, 중복평가 방지와 평가기간 등을 고려해 광특회계에 한정하여 평가를 추진

○ 지역계정은 포괄보조사업 및 내역사업을 단위로, 광역계정은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패키지형 사업)을 단위로 평가

- 2011년에 지역계정은 지자체별 19+5개 포괄보조사업(19개 시·도자율편성사업과 4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에 대해 평가)과 해당사업의 내역사업을 평가하였으며, 광역계정은 교과부 '지방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경부 '지역전략산업진흥' 등 30개 내역사업을 평가

○ 평가주체는 광역위원회, 소관부처, 지역위원회이며, 광역위의 자체평가, 부처의 자체평가, 지역위의 종합평가 순으로 단계적으로 평가가 진행

□ 평가방법 및 항목

○ 평가는 지역위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지자체 의견청취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사업군내 5단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강제적으로 부여

- 지역계정은 부처 자체평가단계에서, 광역계정은 지역위 종합평가 단계에서 등급부여

○ 약 100인으로 구성된 지역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을 활용하고, 전문평가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를 지정하여 평가를 지원

[표 38]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단계별 평가주체와 방식

구분	광역위	부처	지역위
광역계정	평가의견*	평가의견	종합의견 및 등급부여
지역계정	평가의견	평가의견 및 등급부여	종합의견 및 등급부여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에 한정

[표 39] 부처의 평가방식 예 : 시·도자율편성사업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16개 시도						
		서울	…	…	…	…	…	제주
포괄보조사업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내역사업	1)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S	A	C	D	…	…	B
	2)공립박물관 건립		…	…		…		…
	3)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		…				
	4)문예회관 건립	…	…		…			
	5)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	…	…
	…	D	C	B	S	…	…	A

*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2011), 2011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2010년도 추진실적 평가.

○ 평가항목은 내역사업과 포괄보조사업 모두 사업기획, 사업집행, 사업성과의 세 가지 부문이며, 세부 평가지표는 광특계정과 지역계정에 따라 차별화

-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추진과정의 효율성
-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사업의 파급효과

[표 40] 광특회계 지역개발사업평가의 평가 틀

평가항목	평가지표	착안사항	가중치	
			신규	계속
사업기획	사업추진의 타당성	•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목표의 적정성	40	20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성과목표의 구체성		
사업집행	사업추진 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 운영의 적절성	40	40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	• 사업추진 내용·프로세스의 적합성 • 모니터링 및 피드백의 적절성		
사업성과	목표 달성도	• 당해연도 목표의 달성도	20	40
	지역발전 기여도 및 파급효과	• 지역특성화 발전기반 창출 효과 •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조정사항	(광역계정)	• 성과 계량지표	5	
		• 우수사례, 신뢰성, 중복성 등	±3	
	(지역계정)	• 연계성, 우수사례, 신뢰성, 중복성, 책임성 등	±5	

*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2011). 2011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2010년도 추진실적 평가.

[표 41] 지역계정 내역사업의 평가기준(2011년)

평가요소	평가항목	내역사업 평가지표(지역·제주계정)	가중치		
			신규	계속	종료
사업 기획	사업계획의 타당성	• 지역발전시행계획,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되어 있는가? • 지역자원, 지역역량, 생활여건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였는가? • 계획을 수립·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지역발전협의회, NGO, NPO 등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는가? • 사업목표가 해당 포괄보조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며,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설정은 적정한가?	40	20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지역발전위원회 종합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투자예산을 증액·감액하였는가? • 투자 우선순위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는가? • 지역내 다른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통합되어 있는가? • 사업추진일정과 투자예산의 확보·집행계획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가?			
사업 집행	추진체계의 적절성	• 지자체, 주민, 지역발전협의회, NGO, NPO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추진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호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가? • 지역간, 사업간, 지자체의 부서간 등 협의·조정·통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40	40	40
	추진과정의 효율성	•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적시 환류를 통해 성과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제도, 시스템 등)를 구축·운영하였는가? • 환류를 통해 문제를 사전예방 또는 해결하여 실적이 개선되었거나, 차년도 개선계획 등을 마련하였는가?			
사업 성과	사업목표의 달성도	• 2010년도 사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20	40	60
	사업의 파급효과	• 사업목표 달성을 통해 해당 포괄보조사업의 목표달성과 지역활력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목표의 실현에 기여하였는가? - 지역활력증진 : 생활·정주여건 개선 → 삶의 질 향상 → 지역활력증진 -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자원 산업화, 경쟁력 강화 → 소득원 창출·확산 → 지역경제활성화			

*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2011). 2011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2010년도 추진실적 평가.

[표 42] 광역계정 내역사업의 평가기준(2011년)

평가 요소	평가항목	내역사업 평가지표(광역·제주계정)	가중치		
			신규	계속	종료
사업 기획	사업추진의 타당성	•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이 지역발전시행계획 등 상위 계획과 부합하는가? • 사업목표의 적정성 : 사업의 최종목표가 명확하고 사업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40	20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며,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의 적정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종목표·연차별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사업 집행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는 사업의 기획·집행·모니터링·피드백을 위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이 명확한가? • 사업추진체계 운영의 적절성 : 사업추진체계는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40	40	40
	추진과정의 효율성	• 성과관리체계의 적절성 : 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시 환류를 통해 성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제도, 시스템)를 구축·운영하였는가?			
사업 성과	사업목적의 달성도	• 당해연도 목표의 달성도 : 2010년도 사업의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10	30	50
	사업의 파급효과	• 지역경제 및 산업기여도 : 사업의 목표 달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등 정책목표의 실현에 기여하였는가? *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자원 산업화, 경쟁력 강화→소득원 창출·확산→지역경제활성화			
	성과 계량지표	• 성과계량지표 선정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성과계량지표 달성도 및 산출과정의 적정성	10	10	10

*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2011). 상게서

□ 평가결과의 활용

○ 지역발전 사업의 평가 결과는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최대한 활용

- 원칙적으로 부진사업은 전년대비 10%이상 예산을 삭감하고,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평가결과 공유를 통한 여타 평가체계와 중복 방지 및 평가결과 상이 예방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역개발사업 집행평가 사례(2009)

□ 개념 및 목적

○ 지역균형법에 의거하여 2007년부터 매년 지역개발사업(광역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집행평가를 실시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 광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계획과 단위사업

□ 평가방법 및 항목

○ 광역개발계획의 경우, 현황파악 차원에서 조사표를 별도로 개발하여 사업개요,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

○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사업의 경우 신규·변경·집행사업과 완료사업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평가 실시

-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진행의 적절성과 추진과정의 효과성,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의 직접효과, 추진과정의 효과성을 평가

[표 43] 2009년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단위사업 평가항목(신규, 변경, 집행사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지표
공정진행의 적절성 (39.5)	공정진행의 안정성(24.1)	• 당해년 국비예산집행액/전체실시계획예산 • 당해년 지방비예산집행액/전체실시계획예산 • (1-이월예산율[2)])
	사업공정진척도[1)](15.4)	• 전체예산 대비 누적 집행액(실시계획기준)
추진과정의 효과성 (60.5)	사업건설과정효과(29.2)	• 단위사업 및 관련시설 건설과정의 고용자수
	주민호응도(31.3)	• 단위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도 설문 점수

주1) 사업공정진척도 : 실시계획 목표연도 대비 사업진행정도

주2) 이월예산율 : 당해연도 국비지원액 대비 불용이월예산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09). 「지역개발사업 집행평가 연구」. 최종보고회 자료.

[표 44] 2009년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단위사업 평가항목(완료사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지표
사업집행의 직접효과 (59.3)	사업건설과정효과 (16.4)	• 단위사업 관련 시설 건설과정의 고용자 수
	사업운영효과 (42.9)	• 유형별로 구분하여 운영효과를 평가 • 기반시설 : 수혜가구수, 교통시간 단축정도 • 관광휴양사업 : 관광휴양지 방문객수, 관광휴양지 고용자수 및 매출액 • 지역특화사업 : 사업장 매출액, 사업장 고용자수
추진과정의 효과성 (60.5)	지역사회 파급효과 (25.8)	• 사업추진 전·후 1인당 지방세수 증가액 • 법인세 증가액, 사업체수 증가
	주민호응도 (31.3)	• 단위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도 설문 점수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09). 「지역개발사업 집행평가 연구」. 최종보고회 자료.

4.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 개념 및 목적

○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평가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특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 부진 특구에 대해 특구계획변경 권고 등 특구 간 경쟁을 통해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고 특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47조의2 제3항,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의거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 일부 신규특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특구(2012년도 평가의 경우 147개 지역특구)

○ 지자체에서 운영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 지역특구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통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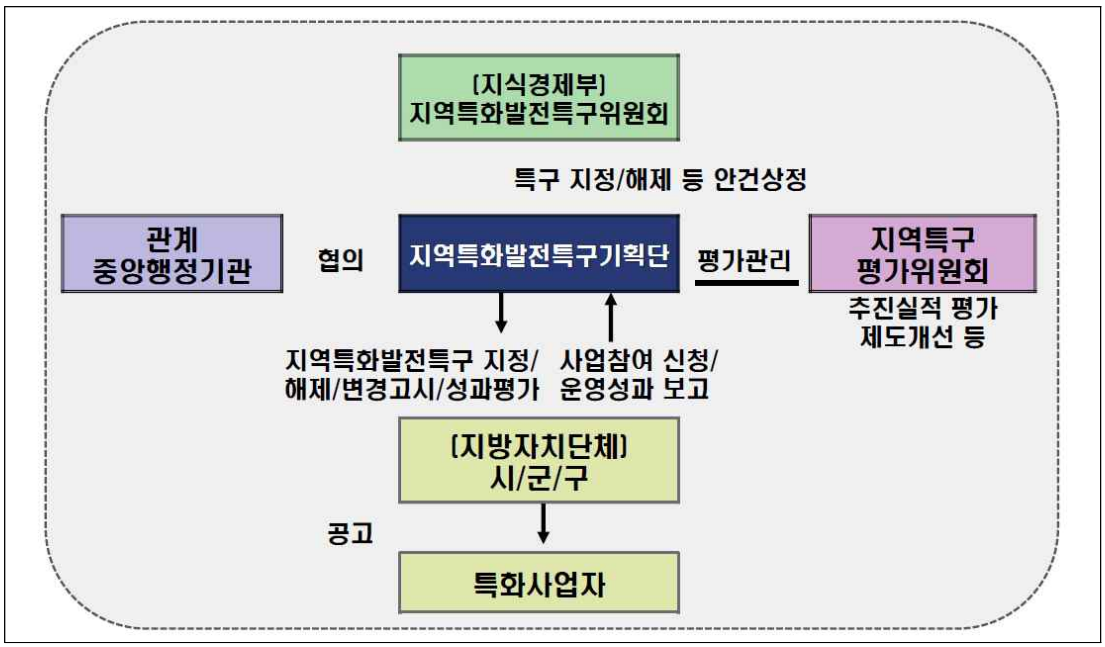
- 각종 성과평가에 대한 관리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기획단에서 담당

[표 45]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추진절차

절차	관련 내용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 지자체 운영성과보고서 평가 - 현지실사 대상 특구 선별
1차 현지실사	• 평가위원회 - 서면평가위원 현지실사
평가조정회의	• 평가위원회 -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결과 차이 조정 - 우수특구 후보선정, 부진특구 확정
2차 현지실사	• 지역특구 민간위원 - 우수특구 후보 현지실사
지역특구 종합평가	• 지역특구 민간위원 - 지역특구 종합평가 - 우수특구 순위 및 포상금액 조정
지역특구위원회 상정	• 지역특구 평가결과 고시 - 지역특구 종합평가 결과 - 지역특구위원회 보고, 관보게재
지역특구 합동연찬회	• 우수특구 포상금 지급

* 출처 : 이경미(2012), 지역특구 운영성과-보고서 작성 요령.

[그림 13]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추진체계



* 출처 : 이경미(2012), 상게서.

□ 평가방법 및 항목

- o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항목은 크게 추진전략, 운영실적, 사업성과, 자율지표로 구성되며, 정성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 정량적 평가지표 활용하도록 설정
- o 평가항목은 선발, 후발 특구에 대한 평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개발특구와 운영특구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
  - 개발특구 : 인프라구축 등 특구개발 위주의 특구지정 2년 미만 특구로, 추진전략 40점, 운영실적 40점, 사업성과 20점으로 구성
  - 운영특구 : 구체적 성과를 시현하는 사업운영 위주의 2년 이상 특구로, 추진전략 20점, 운영실적 40점, 사업성과 40점으로 구성
- o 특구별 고유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성과 평가항목에 공통지표 이외에 특구성격에 따라 관광, 교육, 유통, 산업, 향토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평가지표 운용
- o 지역별 특성 반영을 위해 지자체 자율지표를 설정하고 지자체장의 자체평가도 포함
  - 지자체 자율지표는 의료특구의 경우 의료복지 관련 프로그램 개설 수, 지역총생산액 대비 의료복지산업 부가가치 창출비율, 관광특구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민간자본 투자유치 실적, 지역총생산액 대비 관광레져산업 부가가치 비중 등의 형태로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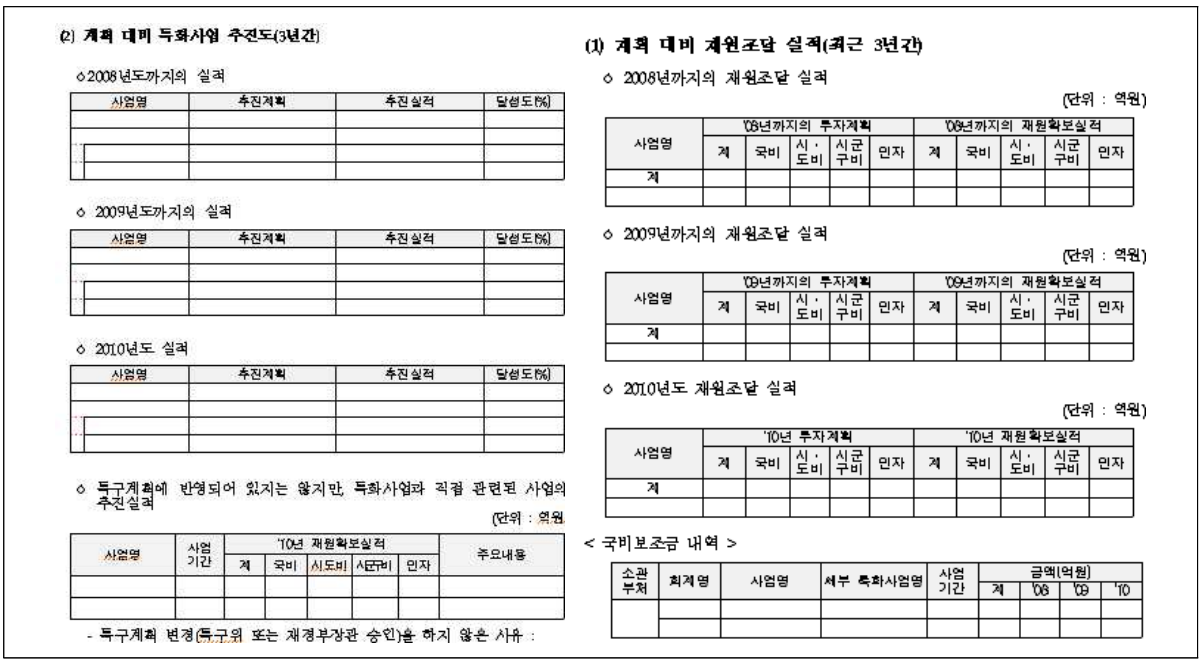
[표 46] 2012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지표	개발특구	운영특구
추진전략		추진체계의 적정성	특구운영방침의 지역경제계획 반영	10	5
		조직역량	특구추진 담당조직 및 상근직원 유무	10	5
		외부조직과의 전략적 파트너쉽 형성	주민, 외부조직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운영전략	10	5
		지자체장의 특구추진의지 반영	특구관련 회의, 행사 등 참석 횟수	10	5
운영실적		특화사업 추진도	당초 계획대비 평가년도 특화사업 추진실적	10	10
			당초 계획대비 평가년도 특화사업 재원조달실적	10	10
		규제특례 활용실적	적용 특례수 대비 활용 특례수	10	10
		마케팅 능력 강화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적절한 홍보실적	10	10
사업성과	공통	지역경제효과	특화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 수	10	20
			특화사업 관련 유지, 신설기업	5	10
	유형별	의료 : 특구설정목표 완수도	특화사업 관련 매출액 및 증가율	2.5	5
			의료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자수 및 증가율	2.5	5
		관광 : 지역내 파급효과	유료관광객 관광시설이용 수입	2.5	5
			계획대비 관광객 유치목표 달성도	2.5	5
		교육 : 지역주민의 수혜정도	지자체 예산 중 교육특구 예산 비중	2.5	5
			교육프로그램 등 시설 이용자 수	2.5	5
		유통 : 유통시설 현대화정도	특화사업 관련 유통거래액 및 증가율	2.5	5
			특구계획 외 추가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실적	2.5	5
		산업 : 특화사업 고도화수준	특화사업 관련 매출액 및 증가율	2.5	5
			특허권, 상표권 등 특허청 등록건수	2.5	5
		향토 : 브랜드 인지 상승도	특화사업 관련 농가, 기업 등 매출액 및 증가율	2.5	5
			축제 방문객 및 소득액 증가율	2.5	5
지역특성 반영		지자체 자율설정 지표 등		±5	±5

* 출처 : 이경미(2012), 상게서.

○ '운영실적' 평가항목은 '계획대비 특화사업 추진도'와 '계획대비 재원조달 실적'으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최근 3년간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정상적으로 확보 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추진 정도가 계획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

[그림 14]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항목 중 '운영실적' 평가항목의 상세



(2) 계획 대비 특화사업 추진도(3년간)

◇ 2008년도까지의 실적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도(%)

◇ 2009년도까지의 실적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도(%)

◇ 2010년도 실적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도(%)

◇ 특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10년 재원확보실적					주요내용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 특구계획 변경(특구위 또는 재경부장관 승인)을 하지 않은 사유 :

(1) 계획 대비 재원조달 실적(최근 3년간)

◇ 2008년까지의 재원조달 실적

(단위 : 억원)

사업명	'08년까지의 투자계획					'08년까지의 재원확보실적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계										

◇ 2009년까지의 재원조달 실적

(단위 : 억원)

사업명	'09년까지의 투자계획					'09년까지의 재원확보실적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계										

◇ 2010년도 재원조달 실적

(단위 : 억원)

사업명	'10년 투자계획					'10년 재원확보실적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계										

< 국비보조금 내역 >

소관부처	회계명	사업명	세부 특화사업명	사업기간	금액(억원)			
					계	'08	'09	'10

* 출처 : 이경미(2012), 상게서.

□ 평가결과의 활용

○ 우수특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 부진특구에 대해 특구계획변경 권고 등

5. 성과목표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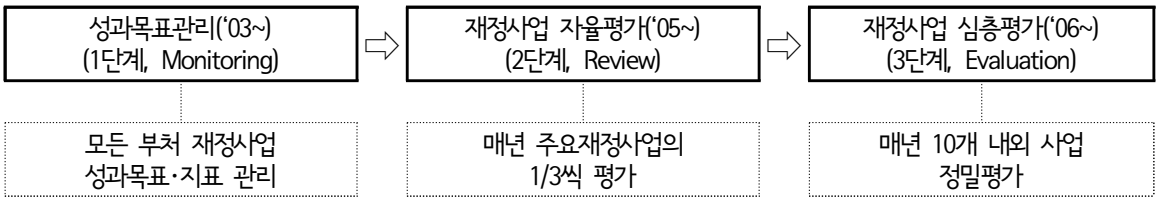
□ 개념 및 목적

○ 정부 재정자금 투입 시 제시한 목표와 재정지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점에서의 성과를 비교하여 다음 재정자금 투입을 결정할 때 반영하는 제도(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근거)

○ 예산 편성·집행과정에서의 각 부처의 자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종 성과에 대한 책임도 담보하기 위해 도입

성과목표관리제도의 개념 및 단계

성과목표관리제도는 모든 부처 재정사업의 성과를 지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역할에 해당되며, 이후에 살펴볼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전체 사업의 1/3의 사업에 대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는 차원,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외부평가전문가의 심층 분석을 통한 대안제시가 목적으로 성격상 차이가 있음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 성과관리제도 시행지침(기획예산처)에 따라 선정된 26개 부처(청)의 성과관리 대상사업이 대상이며, 대상사업의 소관부처가 평가를 담당

□ 평가방법 및 항목

○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의 구조 하에서 해당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

○ 성과지표의 유형은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등으로 구성

- 성과지표는 예산편성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와 과거의 성과, 유사사업의 성과 등과 비교가 가능하며, 가급적 정량화된 지표를 활용하여 단순하고 적은 수의 지표로 중요한 내용이 모두 평가될 수 있도록 설정

□ 평가결과의 활용

○ 매년 소관부처가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는 국회의 결산 및 예산심의시 자료 등으로 활용

6. 재정사업자율평가

□ 개념 및 목적

○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점검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근거)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 각 부처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중 매년 1/3을 선정하여, 선정된 성과목표에 포함된 관리과제를 모두 평가(경상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평가방법 및 항목

○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평가항목과 평가지침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재정사업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형식으로 작성한 후 그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

○ 평가지표는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달성·환류 등 4단계에 대한 10개의 공통지표와 유형별 1~2개의 특성지표로 구성되며,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5단계로 등급화하여 결과를 산출

□ 평가결과의 활용

○ 재정운용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환류하며, 부처별 담당자의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

○ 평가결과 '우수'이상 등급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 '미흡'이하 등급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개선이 없는 경우 차기 평가 도래 연도까지 10% 이상 삭감

[표 47] 201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공통질문 항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
계획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0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0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0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0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0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10.0
		3-3.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5.0
성과달성 및 사업 평가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0
		4-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10.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0

* 출처 : 기획재정부(2012).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7. 재정사업심층평가

□ 개념 및 목적

○ 재정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개별사업들의 운영성과를 깊이 있게 분석·평가하기 위해서 실시

○ 각 사업군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재원배분,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출함이 목적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국회·언론 등 외부기관 지적,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평가 추진
- 특히, 지속적인 예산 증가, 유사 및 중복사업, 지출의 효율화 필요성,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활용 등 평가가 시급한 사업군을 중심으로 진행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 재정투자의 비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소관부처별 재정지원 사업군이 평가 대상

○ 평가의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으로 수행하며, 기획재정부, 관련부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 등으로 심층평가 추진단 구성

□ 평가방법 및 항목

○ 투자된 재원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효용성, 지속가능성을 평가

- 적절성(relevance) : 사업의 목표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와 부합하고 있는가를 파악
- 효율성(efficiency) : 투입이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 및 중간결과로 전환 되었는가를 파악
- 효과성(effectiveness) : 사업의 결과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파악
- 효용성(utility) : 사업의 결과 실제로 사업의 수요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를 판단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사업 완료 시 긍정적 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

8. 일본 지방자치단체 지역투자사업평가 사례 : 사무사업평가

□ 개념 및 목적

○ 일본의 경우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사업의 효율성 및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사무사업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사업을 평가

- 1996년 미에현(三重縣)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개발·적용

○ 평가에 의해 사업을 매년도 지속적으로 점검·갱신하는 차원에서 매 평가시점에서 전면적(제로베이스에서)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우선순위 재선정 등 적극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함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 사업평가는 '사무사업 평가표'라는 양식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매 평가마다 현재의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해당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

- 사무사업 평가표는 사무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파악하는 부분, 해당사업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파악한 뒤 타당성 등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사업 추진의 개선방안을 기획하는 부분으로 구성

○ 사업평가절차는 일차적으로 지자체의 전체 투자사업에 대해 각 소관부서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사무사업 평가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사무사업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사무사업 검토위원회는 사무사업 평가표에 대해 타당성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설치

○ 이와 같은 평가방식은 기존의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검토, 일부 사업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사업검토 등의 한계를 넘어 외부자인 민간의 전문가와 지방의원이 참여한 투명한 평가체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평가방법 및 항목

○ 사업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무사업 평가표는 일반적으로 필요성, 긴급성, 효과성, 공평성, 대체성, 효율성, 계획성, 재원성의 8개 평가기준을 적용

- 8개 평가기준에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화시키는 방식을 활용

[표 48]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평가사업표 평가항목 예시

기준	평가항목	배점(예)
필요성	• 주민생활에 불가결한 것인가? • 사업목적의 달성도는 어떤가? • 자치단체의 역할로서 종료 혹은 축소해야 할 사업은 아닌가? • 과도한 규제, 인허가 등에 의해 민간단체의 자주성이나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가? • 국가, 다른 행정계층, 민간이 동종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가 실시할 필요성이 약한 사업은 아닌가? • 사회경제적, 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저하되고 있지 않는가? • 장래세대의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가? • 타 자치단체의 해당사업에 대한 수준과 비교해서 어떤가?	20점 (각 2.5점)
긴급성	• 사업 연기시 주민서비스 수준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가? • 사업의 시행이 시의적절한가? • 사업을 미루거나 폐지하면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 사회경제환경변화, 국가/타 자치단체의 동향을 살펴본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10점 (각 2.5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예)
효과성	• 사업이 대상자의 감소, 사업실적저하에 의해 효과가 저하되고 있지 않는가? • 경비에 비해 효과는 있는가? • 사업목적이 불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가? • 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것보다 주민의 자주적인 활동이나 간접적, 유도적인 수단에 의하여 추진하는 편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 타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보다 높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15점 (각 2.5점)
공평성	• 사업서비스 수준이 다른 행정서비스와 비교하여 균형적이지 못한가? • 서비스공급에 있어 대상자간 불공평 혹은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였나? • 서비스수준과 수익자부담의 관계, 민간의 동종서비스가격과의 균형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 해당 자치단체 전체에 관계되는 사업인가?	10점 (각 2.5점)
대체성	• 사업의 성격상 국가가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가? 혹은 타자치단체와 공동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가? • 다른 행정계층이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은 아닌가? • 기존의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는가?	7.5점 (각 2.5점)
효율성	•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는가? • 권한의 이양 또는 집중에 의한 간소, 효율화를 기할 수 없는가? • 사업의 목적, 기능, 대상 등이 중복 또는 유사하지 않는가? • 기존사업 등을 이용 또는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 운영방법의 개선에 의해 효율화를 기할 수 없는가?	12.5점 (각 2.5점)
계획성	• 목적이 타당한가? • 시대적 상황변화에 적응하고 있는가? •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적당한가? • 재원 및 사업비 배분은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 정부정책 및 종합계획과 부합하는가? • 각종절차를 합리적으로 거쳤는가?	15점 (각 2.5점)
재원성	• 보조금 및 각종 지원금과 자주재원의 비율(재원부담 정도)은 어느정도인가? • 지방채사업의 경우 지방채 발행규모는 적정한가? • 부채부담이 과중하지 않는가? • 계속해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인가?	10점 (각 2.5점)

* 출처 : 이창균 외(2006), 지방투자사업의 자율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가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연계되어 이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지속추진 여부가 결정됨

9. 영국의 지역발전사업 성과평가 사례

□ 개념 및 목적

○ 영국의 경우, 지역별로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이라는 전담기구를 두어 지역경제발전 관련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2], 이러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존재

2) 1999년 설립된 지역개발청(RDA)은 2012년까지 런던개발청을 제외한 8개의 지역개발청(RDA)이 폐지되고,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로 일부 기능이 이전되는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발생하였으나, 개별 지역발전사업 측면에서 과거 RDA의 성과평가체계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유효한 시사점 제공 가능

- RDA의 예산배정(총액)은 RDA와 관련한 6개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13개 프로그램을 단일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총액을 통상산업부[3]의 배정기준에 따라 RDA에 차등적으로 배정하는 포괄보조금 형태(Single Pot)로 운영되며, 이를 활용하여 RDA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구조

o RDA에 배정되는 포괄보조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RDA는 중앙정부와 합의된 지역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년 단위의 사업운영계획(Corporate Plan)을 수립하게 되는데, 평가는 성과협약차원에서 사업운영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

- 단,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발생한 효과 및 성과들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는 성격에서 사업평가가 실시

□ 대상사업 및 평가주체

o RDA에서 지역경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사업운영계획(Corporate Plan)에 따라 운영하는 전체 지역발전사업이 평가대상으로 일종의 성과협약 차원에서 평가가 진행

- 사업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운영계획(Corporate Plan)은 RDA가 3년마다 지역발전의 사업계획과 목표를 담은 계획임

o 사업의 평가는 통상산업부의 사업 모니터링·평가지침을 바탕으로 각 RDA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해당 지역의 Government Office(GO)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상산업부가 평가하여 예산에 피드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평가방법 및 항목

o RDA가 정부와 합의된 지역발전 목표는 ①일자리 창출 및 지원, ②창업 및 기업투자, ③기업지원, ④도시 및 근린재생, ⑤노동력 교육 및 훈련 등이며, 이러한 목표는 성격에 따라 Tier 1, 2, 3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

- Tier 1은 목표(Objectives), Tier 2는 지역적 결과물(Regional outcome), Tier 3는 마일스톤으로 핵심적인 성과(milestone)에 해당

o Tier 1 목표는 ①지역의 경제발전과 균형발전 장려, ②통합적 재생 프로그램 집행을 통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려, ③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 알맞은 기술 개발을 통한 실업자의 취업지원, ④기업활동, 혁신, 생산성, 경쟁력 제고로 구성

3)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2007년 중반에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으로 개편

o Tier 2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과(sustainable economic performance), 재생, 도시, 농촌, 물리적 개발, 고용, 기술, 생산성, 기업활동, 투자, 혁신 등 11개 분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목표치가 담겨있지는 않음

o Tier 3는 RDA가 자체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성과목표로, 회계연도별로 중앙정부와 합의하에 구체적인 목표치를 담도록 되어있음

[표 49] RDA 성과평가의 사업목표에 따른 평가항목

평가 구분	목표 및 내용	주요 평가항목
Tier 1 Target	• 지역의 경제성장 및 지역의 균형성장 • 지역재생·재건 사업을 통한 사회통합 및 지속 가능한 발전	•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위한 업무기술의 증진 정도 • 진취성, 혁신성,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정도
Tier 2 Target	• 지역 내 사업을 통한 성장전략 (고용증진, 생산성 향상 등)달성	• 경제성과, 재생, 도시, 농촌, 물리적 인프라, 고용, 숙련기능, 생산성, 기업, 투자, 혁신
Tier 3 Target	• RDA가 사업을 통해 Tier 2 Target을 달성 함으로써 나타난 성과(output)	• 고용기회, 기존 산업용지, 교육과 숙련기능, 기업의 성과, 전략적인 부가가치

o 사업에 관한 평가는 Tier 1, 2, 3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데, Tier 2의 경우 연단위로 목표 달성에 대한 RDA의 기여도 보고서를, Tier 3의 경우 분기별로 목표 대비 실적 보고서를 GO를 거쳐 통상산업부로 제출하여 평가

- Tier 1 target은 모든 RDA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목표', Tier 2 target은 RDA가 지역의 파트너와 함께 달성해야하는 '결과물', Tier 3 target은 RDA가 사업을 통해 Tier 2 Target을 달성하여 나타난 '성과'에 해당
- GO는 제출받은 실적 보고서와 RDA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상산업부에 제출하며, 통상산업부는 GO의 평가보고서와 RDA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RDA의 지역발전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여 피드백 제공

[표 50] 구체적인 수치를 설정해야 하는 Tier 3 목표

항목	내용
일자리 창출	창출되거나 유지된 일자리 수
취업지원	취업지원을 받은 사람 수
기업창출	창업후 1년뒤 성장을 보인 신규 기업수, 지역에 유치된 기업 수
기업지원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
재생	공공 및 민간 재생사업에 의해 유도된 인프라 투자금액(브라운필드 복원, 재개발 포함)
기술(skills)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받은 인원 수(기초적 스킬, Level 2의 숙련도 구분)

* 출처 : 변필성, 김광익(2008), '영국 잉글랜드 RDA에 대한 포괄적 예산지원과 지역발전정책의 분권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 11권1호」, 한국경제지리학회.

10.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 도입배경 및 목적

- o GPRA(정부 성과 측정법 :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시행을 통해 산출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성과정보가 각 연방정부기관의 프로그램 관리나 예산결정 및 자원배분에 잘 활용되지 못함
  - 또한 GPRA 시행을 통해 만들어진 각 정부기관의 성과지표(Performance Measures)들이 아직 잘 정의가 되어있지 않아 모호하며, 의미 없는 지표들이 너무 많고 예산결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됨(OMB, 2001;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03)
- o 부시행정부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2년부터 PART가 관리예산처(OMB)에 의해 도입됨
  - PART는 연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비교 평가하기 위한 Tool로, 일련의 질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실증자료에 기초한 판단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평가를 강조하는 제도임
  - 5년 동안 연방정부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점검을 마친다는 계획 아래 매년 200여개의 프로그램을 점검함
- o PART는 예산과 사업성과를 연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사업의 성과 평가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획득하고, 사업성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상사업

- o 사업성과측정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공사업(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 평가방법 및 주요평가항목

- o PART 평가는 크게 ⅰ) 사업목적 및 설계(Program Purpose and Design), ⅱ)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 ⅲ) 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ⅳ) 사업평가(Program Results/Accountability)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지고, 각 부문은 다시 여러 개의 질문항목들로 구성

[표 51] PART의 평가부문과 평가내용

평가부문	평가내용	가중치
Ⅰ. 목적 및 설계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다른 사업과 중복성이 없게 잘 설계되었는가를 평가	20%
Ⅱ. 전략계획	각 사업의 연간 또는 장기목표가 타당한가, 또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	10%
Ⅲ. 사업관리	각 부처들의 사업성과 개선 노력, 재무관리, 사업 진행상황 점검 등 사업관리 노력과 정도를 평가	20%
Ⅳ. 사업평가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성과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	50%

자료: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Performance and Managements : Budget of the United States FY 2004」, 2003.

- PART 점수는 각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에 따라 다르게 주어짐
  - 평가부문 Ⅰ, Ⅱ, Ⅲ은 예/아니요로 답하도록 해야 하는 질문항목으로 되어 있고, 평가부문 Ⅳ는 (yes, large extent, small extent, and no)의 4가지 답변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성과가 중간 단계일 경우 점수 체계에 따라 부분 점수가 주어짐
- 각 평가부문별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은 부문별로 0에서 100까지 점수로 산정이 되는데, 이 때 질문항목간의 가중치(합계가 100임)는 동일하게 부여함
- 이렇게 산정된 부문별 점수는 부문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종합점수(0~100점)가 산출되며, 이에 따라 각 사업의 PART 평가결과는 크게 5개 등급(Effective, Moderately Effective, Adequate, Results Not Demonstrated, Ineffective)으로 구분됨
  - 수용할 만한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성과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Results Not Demonstrated (RND)"로 평가됨
- 각 PART 질문은 답변과 함께 답변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과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하도록 요구함
  - 답변이 막연한 생각이나 주관적 가치 또는 보편성에 의존하지 않고 명확한 증거에 근거를 둠으로써 PART 결과는 공공의 정밀한 조사와 검토에 이용 가능
- PART는 평가대상이 되는 연방정부의 공공사업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
  - 만약 한 사업이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혼합 PART(a hybrid PART)평가를 실시함. 혼합 PART 평가에서는 관련 분야의 질문에 모두 답하도록 되어 있고, 질문의 가중치 또한 조정됨

o PART의 각 부문별 질문항목은 7가지 사업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들과 각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항목들로 이루어짐

[표 52] PART의 재정사업 분류

사업종류	내용
1. 연방정부 직접지출사업 (direct federal programs)	• 주로 연방정부에 의해 직접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
2. 국고보조사업 (competitive grant programs)	• 경쟁적 사업선정을 통해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지방정부·민간기관·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3. 법정지출사업 (block/formula grant programs)	• 법에 의해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지방정부·민간기관·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4. 정책사업 (regulatory based programs)	• 정책이나 법의 제정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5. 자산관리 및 취득사업 (capital assets/service acquisition programs)	• 자산이나 서비스의 취득사업
6. 신용사업 (credit programs)	• 대출·신용보증·직접융자를 통해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7. 연구개발사업 (research/development programs)	• 지식의 창출과 응용에 초점을 두는 사업

제4절 성과평가

o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사업들은 대부분 집행 실적보고와 사업완료 후 성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예산투입에 따른 산출 위주의 집행평가에 가깝고 궁극적 효과 등을 규명하는 사후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 이는 단위사업 종료시 집행실적 위주의 평가는 가능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영향평가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임

o 해외사례들에서도 단위사업 및 개발계획의 종료시점에서 집행평가와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평가제도는 구축이 되어 있지만, 상기와 같은 한계로 인해 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한 성과평가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o 성과평가 사례와 관련해서는 전단계 평가사례인 일본 국토교통성 공공사업평가에서의 성과평가와 EU의 LEADER+ 정책 중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이하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의 핵심성과지표를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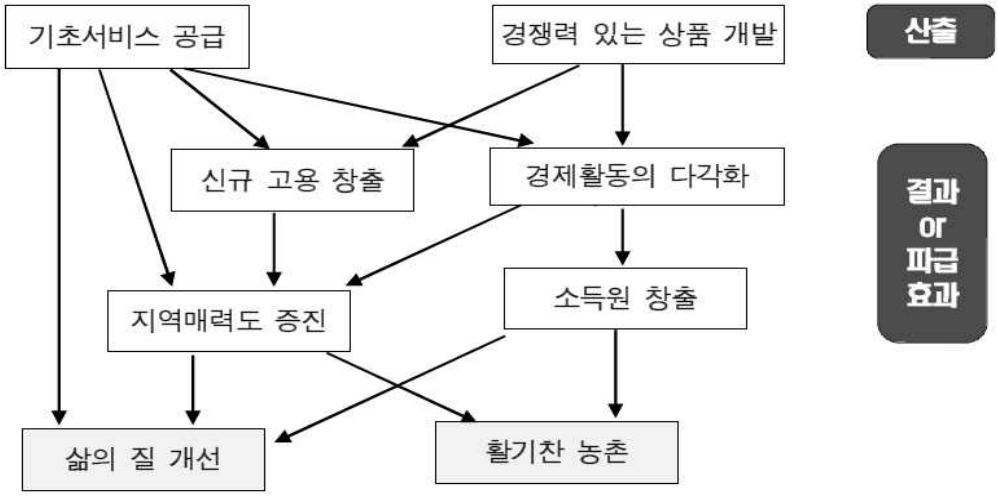
1. 일본 국토교통성 공공사업평가의 성과평과

- 일본 국토교통성 등에서는 1998년도부터 공공사업(프로젝트)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신규사업 채택 시 평가, 재평가, 사후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사후평가는 사업 완료 후에 사업의 효과,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개선 조치, 동종 사업의 계획·조사의 본질적 방법 등을 재검토하는 것임
- 사후평가 대상사업으로는 사업 완료 후 일정기간(5년 이내)이 경과한 사업,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후평가의 실시 주체가 재차 사후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 등임
- 사후평가의 주안점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의 산정 기초가 된 요인(비용, 시설의 이용 상황, 사업기간 등), 사업의 효과의 발현 상황, 사업 실시에 의한 환경의 변화,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 향후 사후평가의 필요성, 개선 조치의 필요성, 동종 사업의 계획·조사방법이나 사업평가 수법의 재검토의 필요성 등임
- 사후평가결과는 「사업평가감시위원회」에 의한(사후평가의 객관성,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사후평가 결과는 필요시 재차 사후평가 및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동종사업의 계획·조사의 방법이나 사업평가 수법의 재검토에 반영하는 데 활용됨

2. EU LEADER+ 정책,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의 핵심성과지표

-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은 낙후된 농촌 지역에 기초서비스를 확충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관광 혹은 특산품) 개발에 재원을 투입하여 궁극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 프로그램임
- 즉, 기초서비스 공급과 상품개발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고용창출, 농촌경제의 다각화, 소득원 창출 등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 개선과 농촌의 활력 증진을 달성하려는 정책개입 논리를 바탕에 두고 추진되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정책논리에 따라 기대되는 산출, 결과,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 분석을 실시함

[그림 15] LEADER+ 정책,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의 정책개입 논리와 기대 효과



[표 53] LEADER+ 정책,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정책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소득증대	주민 소득 중 당해 프로그램에 의해 유발된 소득의 비중	>X %
서비스 개선	신규 혹은 개선된 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해당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진 주민의 비율	>X %
인구증가	인구 증가 규모	주변 비 사업지역과 비교
	연령별 인구구조	
	사업지구와 연고 없는 전입인구 수	
관광	관광객 수	
지역경제 성장	총 사업체에 대한 신규 사업체 비율	
	개발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신규 사업체 비율	
특산물 개발	특산물 종류별 매출액	과거 또는 유사 특산물의 매출액과 비교
고용 증대	분야별 신규 일자리(관광/ 특산물 생산 관련/ 공공서비스)	-
	신규 취업자 중 30세 미만 연령층의 비율	-
	신규 취업자 중 여성 비율	-

제5절 시사점

1. 전 단계평가 사례의 시사점

□ 사업추진 단계별 체계적 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

○ 전 주기 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사업계획부터 사업완료 이후까지 각 단계별 평가를 고려한 평가시스템 및 평가모델의 정립이 필요함

○ 일본 국토교통성 공공사업평가, 프랑스 정책평가 및 계획계약평가에서는 평가시점별로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과정평가(집행평가) 중심의 평가가 근거법령 및 행정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전평가와 파급효과 파악을 위한 사후평가는 부처별 판단에 의해 필요시 이루어지고 있음

□ 충분한 평가기간 보장이 필요

○ 프랑스 정책평가 및 계획계약평가에서는 원칙상 12개월의 평가기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필요시 18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함

○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사업 평가사례들은 사업추진일정 및 행정절차, 예산배분 및 집행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이로 인해 피평가기관 및 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심층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함

-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경우에는 2개월 동안 집행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자체평가, 부처 자체평가, 평가위원회에서의 종합평가가 이루어짐

2. 사전평가 사례의 시사점

□ 사전평가시 무리한 정량평가 지양

○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가 가능하지만, 사업초기단계의 사전평가에서는 정량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

- 국토계획평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조정 사례, 기업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평가사례 등도 정성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량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계획 수립권자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있음

o 또한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이 대부분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

□ 정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o 해외의 사례들에서는 대부분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정성평가 위주의 사전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o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시 피평가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충분한 평가위원 확보 및 민간 전문가의 평가단 참여 등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하고 있음

□ 전 주기 평가를 고려한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 유도

o 계획수립 단계의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성과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포괄적인 사업목적이 기대효과로 제시되고 있음

o 그러나 집행평가와 성과평가시의 평가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평가 단계부터 최소한의 객관적인 성과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

3. 집행평가 사례의 시사점

□ 주기적 평가를 통한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

o 국내외 사례들에서 집행평가는 대부분 연단위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여부 판단, 개선방안 도출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집행평가 결과는 사업의 추진여부, 예산지원 규모의 조정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매년 실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 다수의 사업과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국내사례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들에서도 지역개발사업의 유형별로 적합한 평가지표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 PART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사업 및 프로그램이 방대하여 체크리스트(설문지)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성과목표관리제도에서도 정량화된 소수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다수의 사업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4. 성과평가 사례의 시사점

□ 영향평가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

○ 대부분의 사례에서 단위사업 또는 사업기간 종료시 예산집행 실적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의 경쟁력 또는 삶의 질 등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산출 및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 국토교통성 공공사업평가의 성과평과에서는 사업종료 이후 5년이 경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EU LEADER+ 정책의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에서도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있음

[표 54] 지역개발사업 평가사례별 시사점

평가단계	평가사례	시사점 및 특이사항
전단계평가	일본 국토교통성 공공사업평가	• 기획(Plan)-시행(Do)-평가(See)의 제도화된 평가시스템을 확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 • 부처의 자체적인 자율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자율평가에 따른 전문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존재
	프랑스 정책평가 및 계획계약평가	• 충분한 평가기간의 확보 : 원칙상 12개월 • 국가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의 독립성과 자율성 부여
사전평가	국토계획 평가	• 지자체 자체평가와 국토계획평가센터의 평가 병행 •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해 계획수립권자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 정량평가시 경제적 · 재무적 타당성 평가 위주 • 총사업비 500억 미만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단계	평가사례	시사점 및 특이사항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 평가항목이 수익성 중심
	교통시설 투자평가	• 경제적 · 재무적 타당성 평가 중심 • 투자우선순위, 투자배분의 판단근거로 활용
	전략환경영향평가	•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에서 필수적으로 활용 • 입지적 타당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일관성 중심의 평가
	기업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평가사례	• 기업도시 유형별 평가항목의 차별화 • 지정 제안서에 대한 조사 · 분석을 토대로 평가 • 지정 제안서에 제시된 수요추정과 투자계획에 대한 신뢰성 평가 이외의는 대부분 정성적 평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조정 사례	•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평가제도가 아님(전문기관 연구용역으로 수행) • 정성적 평가지표 중심
집행평가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	•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법정평가 • 별도의 기관에서 평가업무 총괄 • 지역개발사업 DB와 온라인 평가지원시스템 도입 • 완료사업을 포함하여 집행실적을 평가 • 지자체의 실적보고서에 대한 부처의 검증과정 미흡(지자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에 대해 부처에서 특이사항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는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역개발사업 집행평가	• 예산집행 실적 중심의 평가 • 주민만족도 조사 병행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 특구별 성격을 고려한 차별화된 평가지표 마련
	성과목표관리제도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토대로 평가 • 정량화된 소수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사업간 비교가 가능
	재정사업자율평가	• 다양한 재정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평가지표 제시 미흡(대상사업을 7개 유형으로 구분)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평가 • 평가항목의 내용 및 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 빈번히 표출
	재정사업심층평가	• 문제점이 노출된 이슈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평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지역투자사업평가	• 모니터링 차원에서 추진 • 매 평가시 현재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해당사업 재검토 • 지자체 자체평가와 상급기관 평가 병행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평가로 정성적 평가 중심
	영국의 지역발전사업 성과평가	• 사업운영계획의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평가 • 지역(Area)을 3개 유형(Tier)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차별화 • 예산지원 선정 단계부터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전주기 평가의 성격을 포함
	미국의 PART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평가(평가대상 사업 및 프로그램이 방대하여 설문지 활용) • 체크리스트(설문지)를 토대로 계량적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와 실적치를 비교
성과평가	일본 국토교통성 공공사업평가의 성과평과	• 사업완료 후 일정기간(5년 이내) 경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 일정기간 이후 사업의 효과, 개선조치의 필요성 등을 평가
	EU LEADER+ 정책,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 정책논리에 따라 기대되는 산출, 결과,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

제4장 평가체계 구축 방안

제1절 기본방향

1. 평가의 목적

□ 지역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확보

○ 지역개발사업을 사업시행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실현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지역개발사업을 선별함으로써 개발계획의 승인 이후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집행 도모

○ 지역개발사업 평가는 지역개발계획 또는 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단위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성과의 효과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

- 집행예산 대비 성과를 체계적·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수 있음
- 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하여 가시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평가결과를 사업의 재조정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과 연동시켜 별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수정·보완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사업추진역량 제고

○ 해당 계획과 사업이 추진된 배경이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지자체로 하여금 평가를 고려한 계획수립을 유도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계획 및 사업이 당초 계획하였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책임성을 갖게 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음

□ 지역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축적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별 현황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의 축적이 가능함

- 지자체 이외의 평가자(국토부, 평가기관 등)는 계획을 수립한 해당 지자체 및 실무자들에 비해 현장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 평가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현황 등 현장지식을 축적할 수 있음
-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을 초기부터 관리함으로써 추진방식이나 내용의 조정·개선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음

○ 수시로 이루어지던 평가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 및 추진정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됨

-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필요시 사업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분석과정을 통해 향후 수립되는 유사사업들에서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식 및 대안 제시가 가능함

□ 지역개발사업의 컨설팅 기능 강화

○ 지역개발사업 평가가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예산 지원의 근거로만 활용하기 보다는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부담없이 계획에 대해 컨설팅 받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행방법, 재원확보 방안, 주민참여 등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 한편 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와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면 개발계획을 담당하는 지자체도 계획 수립 시 실현가능한 사업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음

□ 지역개발사업 관련 제도개선의 토대 마련

○ 지역개발사업 평가를 통해 표출된 지역개발사업의 제도적 문제점과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o 단기적으로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신규 지역개발사업의 발굴 및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음

o 또한 장기적으로는 후속 지역개발정책 또는 지역개발제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여 바람직한 지역정책 과제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임

2. 평가의 기본방향 및 평가지표 선정

1) 평가의 기본방향

o 지역개발사업의 사전평가 강화

- 현행의 집행평가 위주에서 지역개발사업 착수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평가를 강화
- 개촉지구 및 특정지역 등 종합개발계획, 단위 지구 및 개별사업 등 모든 계획 및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관리
- 민간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국비지원(기반시설, 문화재 보수, 관광단지 조성 등)사업 등을 모두 평가대상으로 함

o 낙후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시스템 구축

- 기반시설(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보다는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요유발효과 분석에 중점을 두는 평가요소를 발굴하고 과잉 계획·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 실현가능성 있는 개발계획 승인, 적정 사업규모 및 예산지원 시스템 구축

o 지역개발사업의 컨설팅을 위한 평가체계

- 평가가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보다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

2) 평가지표 선정

(1) 평가지표 선정의 기본방향

o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타당한 방법은 없으며, 평가대상과 지표 설정 목적, 시대적 부합성(시대적 이슈) 등을 고려하여 평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o 기존 평가사례들에서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 취지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표선정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

o 일반적인 지표선정 기준은 적합성, 타당성, 단순성, 용이성, 지속성, 융통성, 종합성, 민감성, 신뢰성, 통제가능성, 중요성, 객관성 등임

[표 55] 지역개발사업 평가지표의 선정기준 기존 사례

구분	평가지표 선정기준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5)	측정가능성	• 계량화가 가능한지 • 정기적 측정이 가능한지
	객관성	• 정부공식통계에 의해 지표산정이 가능한지 • 지표산출 공식이 객관적인지
	이해용이성	• 지표가 제공하는 정보가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이 높아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지
	명확성	• 지표 값 및 그 추이가 균형발전의 진전 차원에서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대표성	• 균형발전의 이슈 및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지 •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지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연구 (농업기반공사, 2005)	대표성	• 정책의 이슈와 관련이 높을 것
	용이성	• 지표의 의미 및 지표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유용성	• 적절한 시간과 비용수준에서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신뢰성	• 반복 측정에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함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3)	정책적 적합성/대표성	• 정책의 이슈와 관련이 높을 것
	타당성	• 지표 작성이 신뢰할 만한 방법론에 의한 과학적 타당성이 있을 것
	단순성/용이성	• 지표의 의미 및 지표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지속성	•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고 주기적으로 자료갱신이 가능하여야 함
	유용성	• 적절한 시간과 비용수준에서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종합성	• 실용적 측면에서 총체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민감성	• 크고 작은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신뢰성	• 반복 측정에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함
관광개발계획 지표 개발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측정가능성	•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들을 선정하여 측정가능하게 함
	상대적 중요성	• 지표들간의 상대적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평가의 우선순위 또는 비중을 달리해야 함
	종합성 및 충분성	• 측정대상부문의 주요한 요소들이 평가될 수 있도록 지표의 내용이나 항목이 분명해야 하며 중복되거나 상반된 방향으로 적응되지 않도록 선정에 유의함
	비교가능성	• 다양한 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

* 자료 : 권용우(2008), 지역개발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지표를 이용한 파급효과 분석, 국토교통부

o 본 연구에서는 사전평가 시에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에 평가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집행평가시에는 각각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집행 여부에 평가의 초점을 두고 있음

○ 또한 평가대상 사업들은 대부분 낙후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로 객관적 지표를 통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는 다양한 제약사항(수요 부족, 열악한 접근성,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존재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지표 선정을 위해 기존 지표선정 기준들을 고려하되, 평가의 기본방향과 2012년 지역개발사업 시범검증 경험을 토대로 자료확보의 용이성, 객관성, 신뢰성, 이해용이성, 대표성을 평가지표 선정기준으로 설정함

[표 56] 평가지표 선정기준 및 내용

선정기준	내용
자료확보의 용이성	• 현실적으로 수집가능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 평가지표 선정 • 자료확보 비용 부담이 적고, 피평가자의 평가업무 부담이 가급적 적은 평가지표 선정
객관성	•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지표 선정 • 질적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되도록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가 가능한 평가지표 선정
신뢰성	•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서도 비교적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평가지표 선정
이해용이성	• 지표가 제공하는 정보가 일반 대중이 접하더라도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이 높은 평가지표 선정 • 평가자 또는 계획수립 관련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이해가 어렵지 않은 평가지표 선정
대표성	• 지역개발의 이슈 및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평가지표 선정 • 해당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평가지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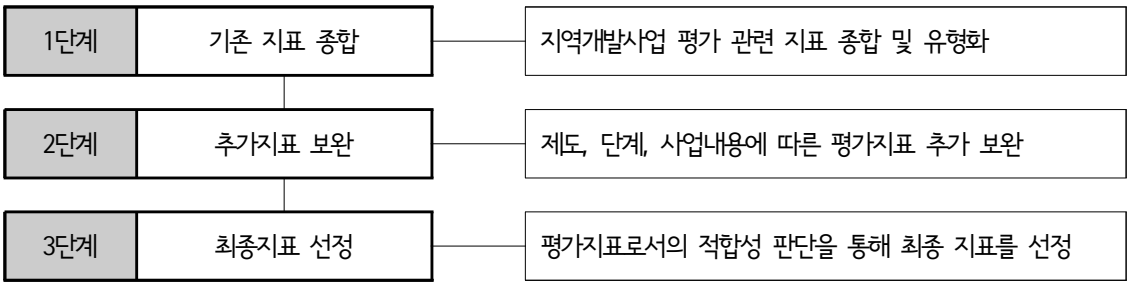
(2) 지표의 선정과정

○ 지역개발사업 평가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국내외 평가사례에서 제시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였음

○ 또한 국내외 평가사례 및 연구사례에서 제시한 지표들과 함께 전문가 자문, 지역개발사업 시범평가(2012년)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음

○ 상기의 과정을 통해 활용가능한 평가지표를 파악하고 평가지표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단계, 평가대상 제도, 사업내용에 적합한 평가지표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음

[그림 16] 지역개발사업 평가지표 선정과정



3. 평가대상 지역개발사업 관련 기존 평가와의 비교

○ 본 연구의 평가대상 지역개발사업 관련 기존 평가로는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시범검증(2012년)과 지역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이 있음

[표 57] 평가대상 지역개발사업 관련 기존 평가와의 비교

구분	본 연구의 평가(안)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시범검증(2012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자체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 근거	• 지균법 제14조, 제26조의4 •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지균법 제14조, 제26조의4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의 2	• 지균법 제26조의2 •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 국가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평가 목적	• 계획단계에서의 사업 실현가능성 제고 • 추진과정에서의 효율적·효과적 집행 도모 • 지자체 지역개발사업 추진역량 제고 및 지원(컨설팅)	• 계획단계에서의 사업 실현가능성 제고	• 광특회계 개변을 반영한 평가체계 효율화 • 지역 간 생산적 경쟁촉진 • 지역발전사업의 책임성, 효율성, 참여도 제고	• 효율적 사업관리 • 목표 및 성과달성 여부 모니터링	• 기획재정부 재정운용에의 활용
평가 대상	• 신발전지역 • 개발촉진지구 • 특정지역 • 지역종합개발지구 • 해안권 및 내륙권	• 신발전지역 • 개발촉진지구 • 특정지역	• 광특회계(지역계정, 광역계정, 제주계정) 지원 사업	•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도서개발사업 중 국토부 지원사업	• 각 부처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 중 매년 1/3을 선정하여, 선정된 성과목표내 관리과제 평가
평가 주체	자체평가(국토부)	• 자체평가(국토부) ※전문기관 위탁	• 지역발전위원회 • 광역위원회 • 소관부처 ※평가전문기관 지정	• 지자체 • 국토부	• 소관부처
평가 단계	• 전 주기 평가	• 사전평가	• 집행평가(당해 년도 완료사업 포함)	• 집행평가(당해 년도 완료사업 포함)	• 집행평가
결과 활용	• 사업 제척·변경 • 개선사항 도출 및 정책대안 제시 • 상위조직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 • 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 보완) 등	• 사업 제척·변경 • 개선사항 도출 및 정책대안 제시 • 상위조직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	•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 컨설팅 및 모니터링	• 사업지속여부 결정 • 인센티브 부여 • 제도개선 등	•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환류

o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안)은 평가단계(시점)의 측면에서 기존 사례들에 비해 사전평가가 보다 강화됨

- 특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승인 이후 국비지원 단계에서 별도의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게 됨

o 또한 사전평가 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평가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기존 사례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표 58] 평가대상 지역개발사업 관련 기존 평가와의 차이점 및 유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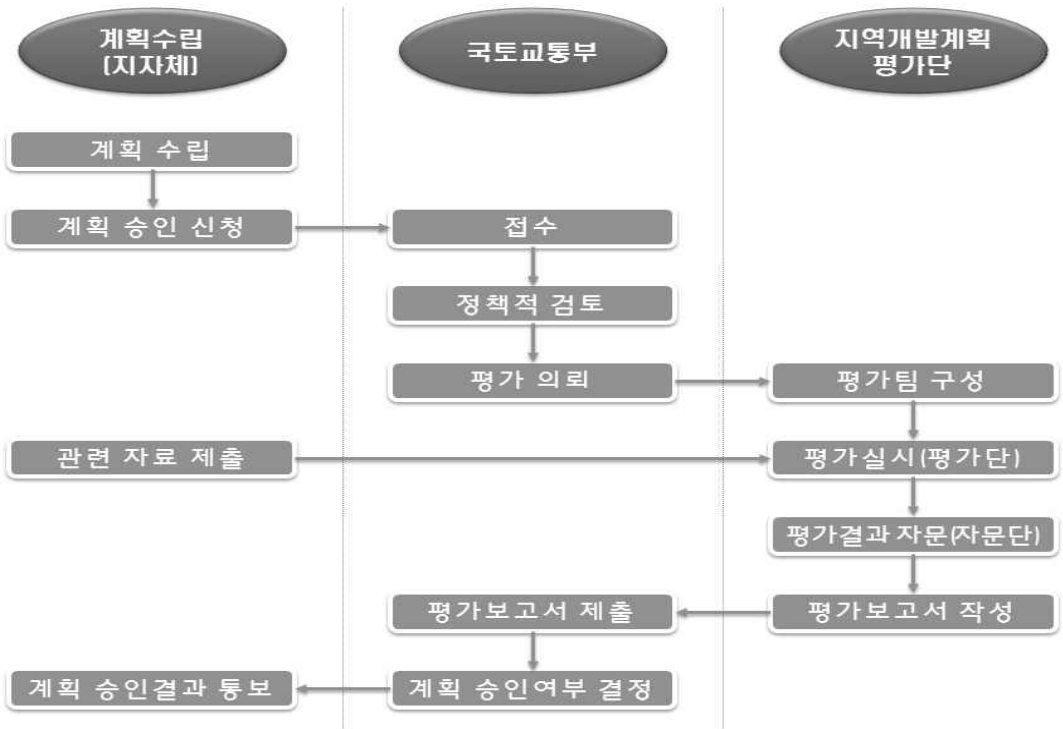
구분	차이점 및 유사점
평가근거	• 지균법 제14조, 제26조의4,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평가근거로 하고 있음
평가목적	• 계획단계의 실현가능성 평가(사전평가)가 기존 사례에 비해 확대됨 •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 모니터링 차원을 탈피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의 역량강화와 컨설팅 기능이 강조됨
평가대상	•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 시범검증(2012년)과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자체평가의 평가대상에 비해 평가대상 지역개발제도의 범위가 확대됨 •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는 평가대상이 유사함 •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는 평가대상을 부처 자율적으로 선정함
평가주체	•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함 •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시 KEIT에서 평가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방법과 유사함
평가단계	• 기존 사례에 비해 사전평가가 강조됨 - 특히, 기반시설사업의 사전평가시에는 개발계획 승인단계와 실시계획 수립 이후 국비지원 요청 단계에서 2차례의 사전평가가 이루어짐 - 또한 국비지원 요청 단계시 사전평가에서는 정량적 평가지표를 강화함 • 집행평가시에는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 자체평가시 활용되는 평가지표를 가급적 활용하여, 피평가기관(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결과활용	•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제척, 변경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과개발, 미추진, 행 · 재정적 비효율 등을 방지하고자 함 • 평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따라 컨설팅 기능을 확대할 계획임 -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경우에도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대안 제시 등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평가지표	• 기존 사례들의 평가지표들을 종합화 한 후, 평가지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지표를 선정 • 개발사업 사전평가 지표는 시범검증을 토대로 선정되어 실효성이 높음 • 집행평가 지표는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자체평가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피평가자의 평가지표 이해도와 평가자의 평가용이성이 높음

제2절 평가 절차 및 조직

1. 평가절차

- 지역개발사업 평가절차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전문평가기관 등의 주체에 따라 평가요청 단계, 평가실시 단계, 평가완료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 평가요청 단계는 우선 지자체에서 관련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국토부는 정책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함
  - 종합개발계획, 지구지정 개발계획, 기반시설 실시계획 등 승인 요청 및 국비지원 요청하는 계획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의뢰함
  - 또한 사업의 집행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사업 완료 후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집행평가 및 성과평가를 국토부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함
- 평가실시 단계는 국토부의 평가의뢰를 받은 전문평가기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구성한 인력풀을 활용하여 평가단과 자문단을 각각 위촉하여 평가를 실시함
- 평가완료 단계는 최종적으로 작성된 평가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에서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계획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평가 완료

[그림 17] 관련 주체별 지역개발사업 평가절차



2. 평가업무 관리조직

○ 지역개발사업의 평가는 지역개발계획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담당하는 방안, 시·도가 담당하는 방안,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방안 등이 있음

- 국토부가 평가하는 방안 : 국토부가 별도의 평가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하고 평가기관이 국토부와 시·도 및 시·군의 협조를 받아 평가를 시행
- 시·도가 평가하는 방안 : 시·도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시·군의 협조를 받아 평가를 시행하고 국토부에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방안
- 국토부와 지자체 공동평가 방안 : 시·도가 표준화된 지표에 따라 1차 자체평가를 시행한 이후, 국토부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2차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

[표 59] 지역개발사업 평가업무 담당 방안 비교

대안	장점	단점
국토교통부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방안	• 균형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며 신뢰성 확보가 용이 •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등 책임있는 후속 조치가 가능 • 전문 평가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가 가능 • 전문 평가기관의 장기적 운용시 검증업무의 지속성 확보가 가능	•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 • 평가업무의 집중시 국토부와 위탁 평가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 위탁 시 예산확보 필요
시·도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방안	• 지역의 구체적 요구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가 가능 • 민간 사업시행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가 가능	• 시·도내 지역개발사업 평가 시 편향적 평가 가능성이 높음 • 평가 소요비용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음 • 평가 건수가 작아 평가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동평가 방안	• 정책적 목표 실현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동평가 결과 공유를 통해 검증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정착기반 구축이 가능	• 평가에 참여하는 주체가 많아 평가 추진상의 지연 및 비효율 가능성이 존재 • 평가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움

○ 상기의 세 가지 방안 중 평가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검증체계의 효율성 및 평가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국토부가 평가 주체로서 별도의 평가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됨

- 시·도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은 평가결과가 편향적일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평가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존재하며, 평가대상 계획의 건수가 많지 않아 평가조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움

- 국토부와 지자체 공동평가 방안은 평가업무가 이원화되어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평가에 참여하는 주체가 많아 평가절차가 중복되어 평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o 우선 국토부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여 시행하더라도 시·도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방안과 국토부와 지자체 공동평가 방안이 지닌 장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력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o 국토부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으로는 국토연구원의 국토계획평가센터에 '지역개발계획 평가단(가칭)'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국토기본법 제19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설치된 국토계획평가센터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내에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국토연구원은 도시, 지역, 경제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연구인력과 연구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사업 검증에 적합함

제3절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o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는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사전평가와 집행평가로 구성됨

o 사전평가는 '실현가능성 검증'과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를 실시

- 기반시설사업은 개발계획 및 지구 승인 신청시와 신규사업예산 신청시 2차례에 걸쳐 사전평가를 실시

o 집행평가는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와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 평가'를 실시

- 국토부의 국비지원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집행결과 평가를 실시
-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국토부 국비지원 기반시설사업 포함)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집행결과를 평가한 후 종합하여 전체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

o 사전평가는 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하고, 집행평가는 지지체 자체평가 실시 이후 국토부에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

[표 60]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요

구분	사전평가		집행평가	
	실현가능성 검증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 평가
중점 평가	입지 적합성 및 계획 충실성 등	모사업의 진척도 및 사업의 적절성 등	집행실적 및 착수 사업 비중	집행실적 및 사업 관리역량
평가 대상	개발계획 및 지구에 포함된 모든 사업 - (모사업) 관광단지조성, 유적지 정비 - (기반시설) 경관도로, 연계도로, 진입도로 등	총사업비 100억 이상 500억 미만 기반시설사업 (예타 대상사업은 평가 면제)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	국토부 소관 국비지원 사업
평가 시기	개발계획 및 지구 승인(변경) 신청시	신규사업예산 의견제출 전 (2~5월)	당해연도 집행완료 후 (3~7월)	당해연도 집행완료 후 (3~7월)
평가 주기	개발계획 및 지구 승인(변경) 신청시	신규사업예산 신청시	매년 (단, 개발계획 승인 2년 후부터 시행)	매년
평가 활용	사업 제척 및 조정	사업 착수시기 연기 및 규모 조정	사업 조정 등	사업 조정 및 컨설팅 제공
평가 주체	국토부 (국토연 위탁)	국토부 (국토연 위탁)	지자체·국토부 (지자체 자체평가 → 서면심사·현지실사 →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통보)	

1. 실현가능성 검증

□ 검증대상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안, 특정지역 개발계획안,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개발계획안 등에 포함된 모든 단위사업

□ 검증방법 및 절차

○ (검증기준) 사업유형별, 사업시행자별로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병행

- 평가항목당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결과의 변별력 및 객관성·신뢰성을 확보

[표 61] 개발계획안 실현가능성 검증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시행자별 적용여부			평가내용
			지자체	민간 등	지자체·민간 공동	
기본평가*	입지적합성	입지적합성	○	○	○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상 제약 및 개발부적합지를 파악하여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판단
	정책목적에의 부합성	정책부합성	○	○	○	평가대상 사업의 근거법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 및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
모사업 (개발사업)	계획 충실성	사업의 구체성	○	○	○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사업의 필요성,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사업대상지, 핵심집객시설,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 등)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	○	○	○	관계 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판단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	○	○	○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였는지를 판단
	사업추진 가능성	토지 확보 용이성	○	○	○	사업대상지의 토지 확보 용이성과 지자체의 토지 확보 노력을 파악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을 판단
		관계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	-	-	사업대상지에서 국토부 또는 타 부처에 의해 개발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지를 파악하여 개발계획 추진 여건이 성숙하였는지,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개발효과의 제고가 가능한지 등을 판단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	○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와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	○	○	사업시행자의 투자의향 및 사업추진의 적극성을 판단
	수요확보 가능성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	○	○	개발계획 완료시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지를 판단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	○	○	지역 내 유사시설의 개발·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수요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
	사업적정성	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	○	○	사업규모(사업면적, 시설규모 등)에 비해 개발계획상 사업비가 과도하거나 세부 산정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한지 여부를 판단
		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	○	-	○	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 중 기투자 및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실적이 있는지를 파악
		지방비 확보 가능성	○	-	○	개발계획상 지방비 투자계획 중 지방비 기투자 및 확보 실적이 있는지를 파악
		재원조달 현실성	-	○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시행자별 적용여부			평가내용
			지자체	민간 등	지자체 민간 공동	
기반시설 사업	사업공공성	기반시설사업의 필요성	○	○	○	모사업과의 연계성 및 모사업 활성화에의 기여 정도, 주민 생활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판단
	연결성 및 중복성	타 기반시설과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	○	○	○	지역 내 주요 도로에의 연결 및 접근성 향상 가능성을 판단
		인접한 유사 기반시설과의 중복성	○	○	○	유사 기반시설의 인접으로 인한 기능 중복성을 판단

* 기본 평가는 배점 없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하나라도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사업을 제척

- ㅇ (검증단계) 사업추진 필수요건을 우선적으로 진단하는 PASS/FAIL 방식
  - 개발사업 추진 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필수요건을 진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본평가를 실시
  - 기본평가 결과 모두 적합인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유형별, 사업시행자별로 보다 구체화된 평가지표를 적용
- ㅇ (검증시기) 상반기 중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자체로부터 개발계획 및 지구 승인 신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검증을 수행

[표 62] 개발계획안 실현가능성 검증시기 및 일정

검증절차	비고
ㅇ평가단 구성(검증업무 위탁 전문기관 지정)	국토부
ㅇ개발계획안 승인 신청	지자체→국토부
ㅇ개발계획안 평가 요청	국토부→평가단
ㅇ검증계획 지자체 통보 ㅇ검증자료 요청	평가단→지자체
ㅇ지자체 검증자료 작성 및 제출	지자체→평가단
ㅇ현지실사 실시 ㅇ검증결과 정리	평가단
ㅇ검증결과 보고	평가단→국토부
ㅇ지자체의 이의 및 조정 신청 (부적합 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 소명)	지자체→국토부·평가단
ㅇ실현가능성 검증 결과보고서 제출	평가단→국토부
ㅇ검증결과 통보	국토부→지자체

o (검증주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현가능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시 국토·도시·지역개발 등에 관한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검증업무를 위탁

□ 결과활용

o 검증결과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안을 조정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2.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 평가대상

o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안, 특정지역 개발계획안,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개발계획안 등에 포함된 국비지원(국토부 소관) 기반시설사업(단위사업)

o 다만, 총사업비 100억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반시설사업에 한정

- 2012년 실시한 개발촉진지구 시범검증 시 도로사업은 100억원 미만이 대부분이었고, 진입도로 성격의 사업인 경우에는 평가의 실익이 의문시될 정도로 규모가 작은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음
- 지역개발사업의 국고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연구목적과 평가의 기본방향을 고려할 때 사전평가의 실익이 부족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적용되는 기반시설사업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임

[표 63] 2012년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시범검증 기반시설사업 사업비 규모

사업비 규모별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100억 이상	8(40%)	5(100%)
100억 미만~50억 이상	4(20%)	-
50억 미만~30억 이상	3(15%)	-
30억 미만~20억 이상	1(5%)	-
20억 미만~10억 이상	2(10%)	-
10억 미만	2(10%)	-
합계	20개(100%)	5개(100%)

주) 2012년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25개 기반시설사업에 대해 시범검증을 실시함. 그러나 특정지역 기반시설 5개 사업과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4개 사업은 일반적인 도로사업 이외에 주차장, 트레킹코스, 지전거도로 등의 사업이 주 내용이었음

□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기준) 사업유형별, 사업시행자별로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병행

[표 64]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시행자별 적용여부			평가내용
			지자체	민간 등	지자체·민간 공동	
모사업 (1단계)	모사업의 진척 정도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	○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와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	○	○	사업시행자의 투자의향 및 사업추진의 적극성을 판단
		토지 확보 용이성	○	○	○	사업대상지의 토지 확보 용이성과 지자체의 토지확보 노력을 파악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을 판단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	-	○	사업대상지에서 국토부 또는 타 부처에 의해 개발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지를 파악하여 개발계획 추진 여건이 성숙하였는지,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개발효과의 제고가 가능한지 등을 판단
	재원조달 가능성	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	○	-	○	개발계획상 국비와 지방비 투자계획 중 기투자 및 관련 부처 등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실적이 있는지를 파악
		재정건전성	○	-	-	지자체가 개발계획상 사업비를 감당할 능력이 존재하는지 판단
		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	-	○	○	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상 사업비를 감당할 능력이 존재하는지 판단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	-	○	○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상 사업비를 감당할 능력이 존재하는지 판단
기반시설 사업* (2단계)	사업적절성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	○	○	○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을 판단 - 단순연계도로 : 원단위법 - 네트워크도로 : 유발교통량 추정
		시설규모의 적절성	○	○	○	유발교통수요 대비 계획상 시설규모의 적절성을 판단
		국고지원 비용 적절성	○	○	○	도로시설 규모별 국고지원기준에 의한 국고지원 비용의 적절성을 판단

* 2단계 평가의 경우, 배점 없이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 등을 조정

o (평가단계) 모사업과 연계된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모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도로사업의 착수 시기 및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단계적 평가를 시행

※ 모사업이 완료되거나 모사업이 없는 기반시설 사업은 2단계 평가만 실시

- (1단계) 모사업의 진척도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우선 평가
- (2단계) 모사업의 추진에 따른 예상교통수요 추정을 통해 도로 사업의 필요성 및 국고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

o (평가시기) 지자체 신규사업 요청시 기반시설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시행(3~5월)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고지원 여부를 검토

- 평가를 위한 절대적 시간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국고지원 신청을 3개월 정도 조기 시행토록 일정 조정(2월까지 신청)

※ 일반 국고지원 사업과 별도로 평가대상 사업은 조기에 예산 신청

[표 65]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시기 및 일정

시기	평가절차	비고
2월	ㅇ신규 기반시설 사업 예산 신청	지자체→국토부
	ㅇ평가계획 지자체 통보 및 평가단 구성	국토부→지자체
3월~4월	ㅇ평가대상 확정	국토부
	ㅇ평가수행	평가단
	ㅇ평가완료 및 평가결과 제출	평가단
5월	ㅇ평가결과 확정	평가단→국토부
	ㅇ평가결과 지자체 통보	국토부→지자체
	ㅇ지자체의 이의 및 조정 신청	지자체→국토부
	ㅇ평가결과 최종 확정 및 통보	국토부→지자체

※ 평가일정,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자료 작성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가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평가계획에서 제시

o (평가주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국토연구원)에서 시행

- 지자체의 예산확보 곤란 등으로 간접검증 보다는 직접검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
- 간접검증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도로시설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전문평가가관이 수요추정방법의 타당성, 도로시설 규모의 적절성, 도로사업 비용의 적절성 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여 판단
- 직접검증은 전문평가기관에서 수요 추정, 도로시설 규모, 도로시설 예산 등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판단

- 간접검증의 경우 지자체가 국비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지자체가 자체 비용으로 선 수립한 후 평가용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 투자한 실시계획 수립 비용을 나중에 국비로 보전할 수가 없음

[표 66] 교통수요 평가주체 대안간 평가방법 및 장단점

구분		대안1 : 직접 검증	대안2 : 간접 검증
주요내용	개요	평가전문기관의 직접검증 (단 부문별 전문가 아웃소싱을 통한 검증수행)	피평가자(지자체)가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실시계획수준)에 대한 검토를 통한 간접검증
	교통수요 검토	전통적 4단계 수요추정 방법을 활용하여 추정	지자체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정, 기초자료, 분석방법 등 절차준수 여부 검토
	적정차로수 검토	도로용량편람의 차로분석방법의해 산출된 차로수와 비교	지자체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로수를 도로용량편람상의 차로수와 비교 평가
기타		결과적 신뢰성 검토(결과 지향)	절차적 정당성 및 합리성 검토(과정 지향)
장점		제3의 기관 평가로 인한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담보	비교적 신속한 검토가 가능해 효율적(저비용, 시간절감 등)인 추진 가능
단점		검토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비용(시간, 인력, 예산 등)발생	결과 자체의 엄밀한 평가가 다소 미흡하여 피평가자의 낙관적 평가 경향을 완벽히 제어하지 못함

□ 결과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사업 예산 승인 또는 사업 조정 의견 제출

※ 특정지역 등 시·도 포괄보조금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승인 및 조정

- (예산 승인) 평가 통과시 지자체 예산요구안 승인
- (사업 조정) 모사업의 진척도가 부진한 경우 사업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사업규모가 적정수준보다 과다한 경우 규모를 축소

□ 예비타당성 조사와의 차이점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사업의 규모와 근거법, 평가의 수준, 평가내용 및 방법 등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차이가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는 수요, 편익, 비용을 추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별도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한 후 종합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평가기간과 평가비용, 평가대상지역(낙후지역) 등의 제약사항이 존재하므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행하는 수요 및 사업비만을 추정함

[표 67]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내용 비교

분석내용	수요	사업비	경제적 타당성(B/C)	정책적 분석	종합화(AHP)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	○	-	-	○
예비타당성 조사	○	○	○	○	○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평가내용이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낮은 수준임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평가의 기본방향과 평가기간, 평가비용, 평가대상지역(낙후지역) 등 평가의 현실적 제약사항을 고려한 최소한의 평가임

[표 68]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수준 비교

구분		예비타당성 조사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비고(평가수준 등)
모사업의 실현가능성		• 관련계획부문(해당도로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계획 반영의 범위)에 대한 검토시, 평가시점까지 실시계획이 승인된 관련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	• 실시계획 승인 전 사업시행자선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 해당 기반시설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관련계획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낮은 수준의 관련계획들도 검토	본 연구〉예비타당성 조사
도로수요의 충분성	수요 측면	• 전통적 4단계 수요추정 방법을 적용	• 예비타당성 조사와 수요추정방법은 거의 유사 •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단위법 등의 개략적인 수요추정을 일부 병행 •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의 평가만 하므로 수요와 사업비 측면만 고려하고 B/C는 산정하지 않음	본 연구〈예비타당성 조사
	시설규모 측면	• 제안된 기반시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 검토 • B/C에 따른 사업성만 판정하고 대안 검토 및 제시는 없음	• 수요에 대응한 적정한 규모(차로수)와 제안된 규모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 • 필요시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	관점상이
국고지원 적절성		• 예비타당성 조사 일반지침에 의한 사업비 산출	• 예비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	본 연구≒예비타당성 조사

○ 지역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제외사업 기준을 적용하여 예타를 면제하는 대신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2항 10호에 의한 예타 대상 제외 사업이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

-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 중 제3장 제12조의 예타 면제사업 요건에 의하면,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10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o 또한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시에도 국비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의 수준을 달리할 필요도 있음

- 국비지원사업비가 10억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의 1단계(모사업 추진가능성)만 적용하고, 2단계는 생략하여 평가를 간소화할 필요도 있음

※ 2012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반시설(도로) 19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비지원 10억 미만이었음

3.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

□ 평가대상

o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개발계획 등에 포함된 모든 단위사업

o 다만, 평가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 승인 후 2년이 경과한 개발계획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지구 개발계획 또는 단위사업별로 평가시기 조정은 가능

□ 평가방법 및 절차

o (평가기준) 예산 집행 실적 및 착수사업 비중을 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결과는 개발계획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신호등 점검방식을 활용

[표 69]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시행자별 적용여부			평가내용
			지자체	민간 등	지자체 민간 공동	
계획 추진도	예산 대비 집행액	총예산현액 대비 총집행액	○	○	○	총예산현액 대비 총집행액(사업공정률)을 산출하여 계획추진 정도를 평가
	목표 사업 대비 착수 사업 비중	목표 착수사업 대비 실제 착수 사업 비중	○	○	○	목표 착수사업 대비 실제 착수사업 비중을 산출하여 계획추진 정도를 평가

[표 70] 신호등 점검체계 등급기준

등급	점수	평가 기준
🟢	90점 이상	• 사업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
🟡	90점 미만~70점 이상	• 사업의 상당수가 다소 지연
🔴	70점 미만	• 사업의 상당수가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극히 부진

○ (평가단계) 자율적인 내부통제 유도를 위해 일차적으로 지자체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국토부가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재검토

○ (평가시기) 당해연도 집행완료 후 익년 2월부터 평가관련 일정을 진행하여 상반기 중으로 완료

[표 71]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시기 및 일정

시기	평가절차	비고
2월	ㅇ평가계획 수립	국토부
	ㅇ평가계획 지자체 통보	국토부→지자체
3월	ㅇ지자체 자체평가 수행	지자체
	ㅇ자체평가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지자체→국토부
4월	ㅇ서면심사 완료 ㅇ현지실사 실시	국토부(평가위원회)
	ㅇ평가결과 확정 및 지자체 통보	국토부→지자체
5월	ㅇ지자체의 이의 및 조정 신청 (부진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 소명)	지자체→국토부(평가위원회)
	ㅇ평가결과 최종 확정 및 통보	국토부→지자체

※ 평가일정,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자료 작성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가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평가계획에서 제시

○ (평가주체) 평가단계에 따라 지자체와 국토부가 평가를 시행

□ 결과활용

○ (결과 공개) 점검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원활한 집행을 독려

○ (개발계획 변경) 3년 이상 장기 미착수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여 개발계획의 적정한 집행을 유도

4.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 평가

□ 평가대상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안, 특정지역 개발계획안,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개발계획안 등에 포함된 국비지원(국토부 소관) 기반시설사업(단위사업)

□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기준) 예산집행률, 사업관리 역량 등을 평가

[표 72]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재정조달 및 집행실적	예산집행률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예산집행률)을 평가
	사업공정률	계획 대비 공정진행정도	계획 대비 공정진행 정도(사업공정률)를 평가
	지방비 확보율*	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	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지방비 확보율)을 평가
	민간투자액 확보율**	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	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민간투자액 확보율)을 평가
사업관리 역량	추진조직 및 관리 역량	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 여부 및 운영 역량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구축 및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
		자체 점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량	주기적 점검시스템 운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판단
	갈등대처 역량	민원 등 대응, 조치여부	민원 등 대응, 조치 여부를 파악하여 지자체의 갈등대처 역량을 판단
		문제사업에 대한 해결노력 여부	문제사업에 대한 해결노력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갈등대처 역량을 판단
		부진시 만회노력	부진사업에 대한 만회 노력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갈등대처 역량을 판단

* 민간투자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민간투자액 확보율의 배점을 지방비 확보율에 합산(지방비 확보율 배점을 20점으로 배정)

** 지방비 투입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율의 배점을 민간투자액 확보율에 합산(민간투자액 확보율 배점을 20점으로 배정)

○ (평가단계) 지자체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국토부가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재검토

- 평가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컨설팅 지원단에서 컨설팅을 제공

※ 컨설팅 지원단은 교통시설, 법령예산, 정책갈등 등 분야별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평가시기) 당해연도 집행완료 후 익년 2월부터 평가관련 일정을 진행

[표 73]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 평가시기 및 일정

시기	평가절차	비고
2월	○평가계획 수립	국토부
	○평가계획 지자체 통보	국토부→지자체
3월	○지자체 자체평가 수행	지자체
	○자체평가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지자체→국토부
4월	○서면심사 완료 ○현지실사 실시	국토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및 지자체 통보	국토부→지자체
5월	○지자체의 이의 및 조정 신청 (부진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 소명)	지자체→국토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종 확정 및 통보	국토부→지자체
5월~7월	○컨설팅 지원단 구성 및 컨설팅 진행	컨설팅 지원단

※ 평가일정,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자료 작성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가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평가계획에서 제시

○ (평가주체) 평가단계에 따라 지자체와 국토부가 평가를 시행

□ 결과활용

○ (예산 차등 지원)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인센티브 예산(개촉지구의 경우 '14년도 예산안 대비 5% 규모) 차등 지원

○ (컨설팅 제공) 평가결과 최하위 30% 이내 사업을 대상으로 부진 상황 극복을 위한 솔루션 제안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공유 및 홍보) 우수 노하우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홍보 실시

제5장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제1절 제도개선

□ 평가 전문기관 상시 운용체계 구축 및 지원시스템 마련

- ㅇ 국비지원 기반시설사업 및 개발계획에 대한 집행결과의 평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행정적 목적에서 예산집행률 및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므로 평가 전문기관이 평가업무를 담당할 필요는 없음
- ㅇ 그러나 실현가능성 검증과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평가수요 대응 및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 전문기관을 상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상기의 두가지 평가는 지자체가 개발계획(안) 승인 및 국비 지원 신청 전에 수시로 국토부에 평가를 요청하게 되므로, 이러한 지자체의 평가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평가 전문기관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2012년과 2013년에 이루어진 시범검증의 경우 전문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용역 형식으로 추진되다보니 지자체의 평가요청 시점과 용역계약 시점의 차이로 인해 평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그리고 평가 전문기관의 상시운용을 통해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ㅇ 또한 평가 전문기관이 상시적으로 평가인력을 운용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국토부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12년과 2013년의 시범검증은 용역 형식으로 매년 1억원 가량이 평가업무에 소요되었으나, 평가인력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해서는 극히 부족한 실정임
  - 평가인력의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가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지자체의 평가수요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음

□ 개발계획(안)의 내용 충실화 유도

o 각 지역개발제도별로 근거법 및 시행령, 업무처리지침 등에서 개발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일정 수준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술하고 있음

o 이러한 상황에서는 평가를 위한 자료를 개발계획(안) 또는 사업조서 등에서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지자체 및 평가기관의 평가업무도 가중됨

- 평가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지자체에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으며, 평가일정은 그만큼 지체됨
-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작성한 개발계획(안)은 구체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평가기관이 요청한 평가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안)을 재수립하는 정도의 부담을 느끼게 됨

o 따라서 업무처리지침 수준에서라도 추후 평가를 염두에 두고 개발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개발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평가기관과 지자체는 추가적으로 요청하거나 작성하여야 할 평가자료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임
- 또한 긴급하게 작성된 평가자료의 경우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지만, 이러한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개발계획 변경의 용이성 제고

o 최초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지자체에서는 다소 실현가능성이 미흡한 사업이라도 최대한 많이 발굴하여 개발계획(안)에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있음

o 결과적으로 지자체는 과 계획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토부 및 평가기관은 과 계획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자체 실무자는 개발계획(안) 승인 과정에서 상당수의 사업이 제척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실현가능성이 미흡한 사업이더라도 최대한 많이 발굴하여 신청하는 것이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그리고 국토부 및 평가기관은 지자체에서도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척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평가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o 따라서 최초 개발계획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추후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사업들이 있다면 지자체가 큰 부담 없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수립 역량 제고

□ 컨설팅 기능의 강화

o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임

o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지원를 하고자 하더라도, 개발계획(안)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였음

o 따라서 국토부 및 평가기관에서는 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개발제도의 틀 내에서 개발계획(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자체 요청시 지속적으로 컨설팅할 필요가 있음

o 이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실무자들의 지역개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역량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정례적인 평가설명회 개최

o 2012년과 2013년의 시범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담당공무원의 변경 등으로 인해 지자체 실무자들의 지역개발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음

o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평가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개발제도 및 지역개발정책의 변화, 지역개발사업 평가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부록 1] 실현가능성 검증 평가표 및 작성서식

【단위사업별 평가결과표】

평가분야	사업시행자 (지자체/민간 등)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가유형 (정성/정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기본평가	지자체, 민간 등	입지적합성	입지적합성	적합/부적합					정성
		정책목적에의 부합성	정책부합성	적합/부적합					정성
		평가결과		적합/부적합					-
모사업 (개발사업)	지자체	계획 충실성 (25)	사업의 구체성	10	9	8	7	6	정성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	10	9	8	7	6	정량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	5	4.5	4	3.5	3	정량
		사업추진 가능성 (25)	토지 확보 용이성	15	13.5	12	10.5	9	정량
			관계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10	9	8	7	6	정성
		수요확보 가능성 (20)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10	9	8	7	6	정성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10	9	8	7	6	정성
		사업적정성 (30)	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10	9	8	7	6	정성
			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	10	9.5	7	6.5	6	정량
			지방비 확보 가능성	10	9.5	7	6.5	6	정량
		평가결과(배점 합계)		총____점					-
	민간 등	계획 충실성 (25)	사업의 구체성	10	9	8	7	6	정성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	10	9	8	7	6	정량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	5	4.5	4	3.5	3	정량
		사업추진 가능성 (30)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10	-	8	-	6	정성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10	9	8	7	6	정성
			토지 확보 용이성	10	9	8	7	6	정량
		수요확보 가능성 (20)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10	9	8	7	6	정성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10	9	8	7	6	정성
		사업적정성 (25)	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10	9	8	7	6	정성
			재원조달 현실성	15	13.5	12	10.5	9	정성
		평가결과(배점 합계)		총____점					-
	지자체· 민간 공동	계획 충실성 (25)	사업의 구체성	10	9	8	7	6	정성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	10	9	8	7	6	정량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	5	4.5	4	3.5	3	정량
		사업추진 가능성 (30)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10	-	8	-	6	정성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10	9	8	7	6	정성
			토지 확보 용이성	10	9	8	7	6	정량
		수요확보 가능성 (20)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10	9	8	7	6	정성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10	9	8	7	6	정성
		사업적정성 (25)	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5	4.5	4	3.5	3	정성
			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1]	5	4.75	3.5	3.25	3	정량
			지방비 확보 가능성[2]	5	4.75	3.5	3.25	3	정량
			재원조달 현실성	10	9	8	7	6	정성
		평가결과(배점 합계)		총____점					-
기반시설 사업	지자체, 민간 등	사업공공성(40)	기반시설사업의 필요성	40	36	32	28	24	정성
		연결성 및 중복성 (60)	타 기반시설과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	20	18	16	14	12	정성
			인접한 유사 기반시설과의 중복성	40	36	32	28	24	정성
		평가결과(배점 합계)		총____점					-

주1) 개발계획상 투자계획에 국비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 가능성' 평가지표에 배점을 합산('지방비 확보 가능성' 평가지표의 총배점을 10점으로 배정)

주2) 개발계획상 투자계획에 지방비가 없을 경우에는 '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 평가지표에 배점을 합산('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 평가지표의 총배점을 10점으로 배정)

1. 기본평가지표

1) 입지적합성 : 입지적합성

<table>
<tr><td>지표</td><td colspan="2">입지적합성</td><td>배점</td><td>적합/부적합</td></tr>
<tr><td>개념</td><td colspan="4">•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상 제약 및 개발부적합지를 파악하여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4">• 사업대상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하천법」 등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지역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검토
- 개발이 부적합한 용도지역·지구와 농업진흥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공적 규제 지역의 편입 여부를 파악
• 사업대상지 및 연접 지역에 환경평가제도, 환경 관련 법령 등에 의한 환경규제지역과 기타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등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검토
- 습지보호지역, 환경등급 1등급 내지 2등급지, 중요 식생군락지, 희귀동물 서식지, 녹지자연도 8등급지, 생태자연도 1등급지, 토지적성평가 A등급지, 경사도 30° 이상 등의 지역 편입 여부를 파악
• 기타 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는 지역의 편입 여부를 파악</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4">• 사업대상지에 편입된 토지이용상 제약 지역과 개발부적합지 편입내역을 최대한 상세히 작성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에 편입된 토지이용상 제약 지역과 개발부적합지 여부를 도면으로 표시
• 증빙자료 : ①토지이용상 제약 지역과 개발부적합지 편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제출
[토지이용상 제약 지역 및 개발부적합지 편입내역]
<table>
<tr><th colspan="2">규제내역</th><th>편입 면적(㎡)</th><th>편입 비율(%)</th><th>조치계획</th></tr>
<tr><td colspan="2">농업진흥구역</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상수원보호구역</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문화재보호구역</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기타 주민반대 예상 지역</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합계</td><td>중복지역* 포함</td><td></td><td></td><td></td></tr>
<tr><td>중복지역 제외</td><td></td><td></td><td></td></tr>
</table>
* 중복지역은 규제내역별 중복되는 면적을 말함</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4">• ‘적합’, ‘일부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
- 일부 적합 : 사업대상지에 토지이용상 제약 지역 및 개발부적합지가 편입되어 있더라도 지자체의 조치계획을 통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경우의 평가등급
[입지적합성 평가표]
<table>
<tr><th>평가등급*</th><th>평가사유와 국토부 및 지자체 추가 검토사항 등</th></tr>
<tr><td></td><td></td></tr>
</table>
* 적합(수용), 일부 적합(조정), 부적합(제척) 중 택1</td></tr>
</table>

2) 정책목적에의 부합성 : 정책부합성

<table>
<tr><td>지표</td><td>정책부합성</td><td>배점</td><td>적합/부적합</td></tr>
<tr><td>개념</td><td colspan="3">• 평가대상 사업의 근거법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 및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목적과 권역·구역·지역·지구 등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 낙후지역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개발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
• 관련법에 따라 사업추진의 실익이 없거나 어려운 경우를 검토
- 타 법에 의해 추진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지를 검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 기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부적합 사업(예 : 소비성 서비스업, 분양목적의 주택개발사업, 민간의 골프장 사업, 특정대상 이용시설(기업 전용 연수원 등) 조성사업 등)인지를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세부 사업내역을 검토하여 정책목적에의 부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
- 특히, 세부 사업내역 중 사업추진의 실익이 없거나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부적합한 시설 등은 검토의견에서 조정 방안을 제시
[정책목적에의 부합 여부 지자체 검토의견]
<table><tr><td>부합여부 (부합/미부합)</td><td>해당 지자체 검토의견*</td></tr><tr><td></td><td></td></tr></table>* 10줄 이내로 작성('부합'으로 평가한 후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을 시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 가능)</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적합', '일부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
- 일부 적합 : 세부 사업내역에 대한 일부 조정을 통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경우의 평가등급
[정책부합성 평가표]
<table><tr><td>평가등급*</td><td>평가사유와 국토부 및 지자체 추가 검토사항 등</td></tr><tr><td></td><td></td></tr></table>* 적합(수용), 일부 적합(조정), 부적합(제척) 중 택1</td></tr>
</table>

2. 모사업(개발사업) 평가지표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1) 계획 충실성

(1) 사업의 구체성

<table>
<tr><td>지표</td><td>사업의 구체성</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3">• 개발계획에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사업의 필요성,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사업대상지, 핵심집객시설,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 등)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able>

중점 검토 사항

- 지역 여건 및 현황에의 적합성, 사업대상지 확정 여부, 핵심집객시설 존재 여부,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 여부,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 지역 여건 및 현황에의 적합성 : 접근성 등 지역 여건 및 현황을 고려할 때, 부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 및 현황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평가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매우 부적합한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검토
  - 사업대상지 확정 : 사업대상지 확정 여부(위치, 면적 등)
  - 핵심집객시설 존재 여부 : 핵심집객시설이 개발계획에 제시되어 있고, 핵심집객시설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의 개발계획이 유기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 핵심집객시설은 관광지로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 관광지를 방문한 이용객들로 하여금 체류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관광지 내 다른 시설의 방문횟수 증가나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로서 파급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설임(호텔, 콘도미니엄, 위락시설, 관광자원 등)
  -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 여부 : 일정 수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여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파악)
  - 기타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등

지자체 제출 서식

- 중점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자체 검토의견을 작성
- 특히, 대부분의 개발계획에서 제시되지 않는 운영방안 및 계획,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

[사업의 구체성에 대한 지자체 검토의견]

구분	해당 지자체 검토의견
구체성 여부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로 기술) • 지역여건 및 현황에의 적합성 • 대상지 확정 여부 • 핵심 집객시설 존재여부 등

※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을 시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 가능)

[사업 완료 후 운영계획]

운영방안 및 계획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로 기술) • 운영방안 및 계획 수립 여부, 수익창출 관련 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술

※ 운영방안 및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특별히 기재할 사항이 없을 경우,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로 기술) • 상위계획 및 타 계획에의 포함 여부,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사업명, 면적, 시설 등) 등을 중심으로 기술 • 상위계획 및 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위계획 및 타 계획의 사업들과 연계효과(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

※ 특별히 기재할 사항이 없을 경우,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

평가 등급

- 개발계획에서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
- 단순 구상단계의 개발계획(페이퍼 플랜)으로 사업기간 내 사업추진이 매우 불확실한 경우에는 '다소 부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

[사업의 구체성 평가표]

구분	적정	다소 적정	보통	다소 부적정	부적정
기준	지역 여건 및 현황에의 적합성, 사업대상지 확정 여부, 핵심집객시설 존재 여부,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 여부,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배점	10	9	8	7	6
평가사유					

(2)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

<table>
<tr><td>지표</td><td>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3">• 관계 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비율=(반영 건수/관계 기관 협의의견 건수)×100</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지구(구역) 등 지정 신청시 제출한 개발계획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의견을 검토
• 관계 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계획 및 반영 여부를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지구(구역) 등 지정 신청시 제출한 개발계획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의견을 정리
• 정리된 협의의견 건별로 조치계획과 반영 여부를 작성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table>
<tr><th>연번</th><th>관계 기관(부처)</th><th>협의의견</th><th>조치계획</th><th>반영 여부*</th></tr>
<tr><td>1</td><td>환경부</td><td></td><td></td><td></td></tr>
<tr><td>2</td><td>국방부</td><td></td><td></td><td></td></tr>
<tr><td>3</td><td>산림청</td><td></td><td></td><td></td></tr>
<tr><td>4</td><td>⋮</td><td></td><td></td><td></td></tr>
</table>
* 반영 여부는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으로 구분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건수]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반영 (a)</th><th rowspan="2">일부 반영 (b)</th><th colspan="2">미반영</th><th rowspan="2">기타 (e)</th><th rowspan="2">합계 (f=a+b+c+d+e)</th><th rowspan="2">반영률 {(a+b)/f}×100</th></tr>
<tr><th>추후 반영(c)</th><th>반영 불가능(d)</th></tr>
<tr><td>건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평가대상</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협의의견의 경중 및 조치계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
- 배점 조정시에는 평가사유에 조정사유를 기재
• 관계 기관 협의의견이 없는 경우(협의 건수가 없는 경우)에는 탁월로 배점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기준 (반영율)</td><td>90% 이상</td><td>80% 이상</td><td>70% 이상</td><td>60% 이상</td><td>60% 미만</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3)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td><td>배점</td><td>5</td></tr>
<tr><td>개념</td><td colspan="5">•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지자체가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는지를 검토
- 주민 의견수렴 횟수, 주민설명회 관련 자료,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지자체가 실시한 주민 의견수렴 노력을 의견수렴 실적,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최대한 상세히 기재
• 증빙자료 : ①주민의견 수렴 노력 관련 자료(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관련 자료, 설문조사 결과 등) 제출
[주민의견 수렴 노력]
<table>
<tr><th rowspan="2">시기
(년월일)</th><th rowspan="2">의견수렴
대상 지역</th><th colspan="4">참석자수</th><th rowspan="2">주요의견</th><th rowspan="2">조치사항</th></tr>
<tr><th>합계</th><th>지자체</th><th>지역주민</th><th>기타</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주민 의견수렴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참석자수와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 등 의견수렴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사유 기재 후 배점 조정이 가능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기준</td><td>4회 이상</td><td>3회</td><td>2회</td><td>1회</td><td>미실시</td></tr>
<tr><td>배점</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사업추진 가능성

(1) 토지 확보 용이성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토지 확보 용이성</td><td>배점</td><td>15</td></tr>
<tr><td>개념</td><td colspan="5">• 사업대상지의 토지 확보 용이성과 지자체의 토지확보 노력을 파악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토지 확보율={(국공유지 면적+사용동의서 확보 사유지 면적)/사업대상지 면적}×100</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사업대상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국공유지 면적 및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사유지 면적이 사업대상지에서 차지하는 비율(토지 확보율)을 검토
- 국공유지 면적 : 지자체 소유지 및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 면적
- 사용동의서 확보 사유지 면적 :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사업대상지 면적
• 개발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최근 매입한 사업대상지를 파악하여 지자체의 토지 확보 노력을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사업대상지의 토지소유 현황과 토지 확보 노력을 중심으로 작성
• 개발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매입한 토지는 국공유지로 집계되어 기존의 국공유지와 구분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
• 증빙자료 : ①사업대상지 토지소유 현황(표) 및 도면, ②지자체가 개발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와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토지의 현황(표) 및 도면을 제출
[토지 확보율]
(단위 : ㎡, %, 필지, 명)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합계 (a)</td><td colspan="4">국공유지</td><td colspan="3">사유지</td><td rowspan="2">기타</td><td rowspan="2">토지 확보율 {(b+c)/a}×100</td></tr>
<tr><td>소계 (b)</td><td>시·군유지</td><td>도유지</td><td>국유지</td><td>소계</td><td>사용동의서 확보(c)</td><td>사용동의서 미확보</td></tr>
<tr><td>면적</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평가대상</td></tr>
<tr><td>필지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소유자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토지 확보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유지의 소유자수 및 필지수가 많아 토지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평가사유를 기재한 후 배점 조정이 가능
[토지 확보의 용이성 평가표]
<table>
<tr><td>구분</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부진</td></tr>
<tr><td>기준</td><td>20% 이상</td><td>15% 이상</td><td>10% 이상</td><td>5% 이상</td><td>5% 미만</td></tr>
<tr><td>배점</td><td>15</td><td>13.5</td><td>12</td><td>10.5</td><td>9</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
</td></tr>
</table>

(2) 관계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지표	관계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배점	10
개념	• 사업대상지에서 국토부 또는 타 부처에 의해 개발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지를 파악하여 개발계획 추진 여건이 성숙하였는지,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개발효과의 제고가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중점 검토 사항	•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관련 부처로부터 국비지원이 이루어졌거나(기 투입되었거나)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국비지원과 매칭하여 투입되었거나 투입 예정인 지방비도 검토 • 관련 부처의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거나 확보된 상황은 아니지만, 국비지원 확보 가능성이 높은지를 검토 • 국토부 또는 타 부처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지자체 제출 서식	•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와 국비 및 지방비 등 사업비 집행 실적을 작성 - 공간적 범위 : 사업대상지에서 이루어진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으로 개발계획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기재 - 시간적 범위 : 현재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상 사업을 기재 • **증빙자료** : ①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계획 등), ②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 의한 국비 및 지방비 등 사업비 집행 실적이 포함된 추진 현황 자료, ③기타 자료제출 서식에서 설명이 필요한 보완자료 등을 제출		
평가 등급	•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와 사업비 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및 사업비 집행 실적]

관련 부처	관련부처 종합계획명	관련 부처 종합계획상 사업명	계획사업비 및 집행실적								관련 부처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 주요 사업내역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평가표]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기준	반영, 집행실적 있음	반영	미반영, 사업계획 수립 중	미반영, 협의 중	미반영
배점	10	9	8	7	6
평가사유					

3) 수요확보 가능성

(1)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5">• 개발계획 완료시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개발계획상 제시된 이용객 및 입주수요 목표와 수요추정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
• 지역의 방문객(이용객) 및 입주수요 추이를 파악하고 상위 중장기 수요·공급 계획(광역단위에서의 수급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 관광부문 사업의 경우 : 광역단위에서의 집객시설(호텔, 콘도미니엄 등) 수요 예측 자료(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해당 지역(시설)의 방문객수 추정 자료 등)를 최대한 활용하되, 수요 예측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년도의 방문객(이용객) 추이 등의 자료를 활용
- 산업단지의 경우 : 광역단위에서의 산업단지 수요 추정 자료(국토부의 산업입지 수급계획 자료)와 산업단지 개발현황(입주 및 분양 현황, 투자의향서 제출기업의 부지 수요 규모 등)을 참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관광부문 개발계획은 목표 이용객(방문객) 및 입주수요, 추정방법 및 과정을 제시하고, 이용객(방문객) 확보 가능성에 대한 지자체 검토의견을 작성
• 산업단지부문 개발계획은 입주대상 업종의 범위를 기재하고, 관련 중장기 수요·공급 계획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의견을 작성
- 분양 중 또는 조성완료 산업단지 : 평가시점에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을 검토
• 증빙자료 : ①관광부문 개발계획은 사업대상지에 위치하는 주요 관광자원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용객(방문객) 현황 자료, ②분양 중 또는 조성완료 산업단지는 평가시점에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 자료를 제출
[이용객 및 입주수요 추정]
• 별도서식 없음(3쪽 이내로 작성)
• 관광부문 개발계획 : 목표 이용객(방문객) 및 입주수요, 수요추정방법을 제시하고 이용객(방문객) 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 산업단지부문 개발계획 : 입주대상 업체의 범위를 기재하고, 관련 중장기 수요·공급 계획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관광부문 개발계획은 이용객 및 입주수요 추정 방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사업대상지에 위치하는 주요 관광자원의 이용객(방문객) 추이를 고려
• 산업단지부문 개발계획은 광역단위에서의 산업단지 수요 추정 자료(국토부의 산업입지 수급계획 자료)와 산업단지 개발현황(입주 및 분양 현황, 투자의향서 제출기업의 부지 수요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평가표]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 rowspan="2">관광부문</td><td>기준 : 이용객 및 입주수요 추정 방법의 적절성</td><td>매우 적절</td><td>적절</td><td>보통</td><td>미흡</td><td>부적절</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 colspan="2">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산업단지 부문</td><td>기준 : 중장기 수요·공급 계획과의 부합성</td><td>매우 부합</td><td>부합</td><td>어느 정도 부합</td><td>초과</td><td>매우 초과</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 colspan="2">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table>
<tr><td>지표</td><td>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3">• 지역 내 유사시설의 개발·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수요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지역 내 개발사업간 중복성 여부를 파악하여 개발계획 완료 이후의 원활한 수요확보 가능성을 검토
- 광역 및 시군 차원에서 개발계획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개발사업이 존재하거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
•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광역적 차원에서의 개발현황을 파악하여 입주수요 확보가능을 검토
- 사업대상지가 위치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에 사업내용이 유사한 단지가 기 입지하거나 개발·계획 중인지 여부와 이들 단지의 미분양율, 미입주율, 운영 상황 등을 파악
-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평가지표와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평가지표는 광역적 차원의 실제 개발현황(분양 및 입주 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이용객 및 입주수요 확보시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 내 유사사업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 지역 내에 계획·개발·운영 중인 동일 또는 유사 개발사업이 없거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
• 증빙자료 : 유사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①관광부문 개발계획은 유사 개발사업의 운영현황(연도별(최근 5년) 이용객 및 방문객, 사업규모(사업대상지 면적, 객실 수 등) 등) 자료, ②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개발계획은 해당 시·군 전체의 단지별 개발현황(분양율, 입주율, 이용객 등) 자료를 제출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로 작성)
• 유사시설 존재 유무
• 존재 시 분양현황, 시설이용현황 등</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유사 개발사업 존재 여부 및 개발현황, 경쟁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유사 개발사업이 작더라도, 유사 개발사업의 운영현황이 어려운 경우(지속적 적자 및 적자폭의 확대 등)에는 낮은 등급으로 평가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다소 긍정적</th><th>긍정적</th><th>보통</th><th>부정적</th><th>다소 부정적</th></tr>
<tr><td>기준</td><td colspan="5">유사 개발사업 존재 여부 및 개발현황, 경쟁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4) 사업적정성

(1) 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5">• 사업규모(사업면적, 시설규모 등)에 비해 개발계획상 사업비가 과도하거나 세부 산정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유사 개발규모의 사업들과 비교시 개발계획상 사업비가 과도한지 여부를 검토
• 개발계획상 세부 산정내역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별도서식은 없으며, 개발계획 내 사업비 산정내역 또는 증빙자료로 대체
• 증빙자료 : ①개발계획 상 총사업비 산정내역보다 구체적인 자료 또는 사업비 산정시 참고한 유사 개발사업 사업비 자료 있을 경우 제출</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산정내역의 구체성, 유사 개발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비의 적정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table>
<tr><td>구분</td><td>적정</td><td>다소 적정</td><td>보통</td><td>다소 부적정</td><td>부적정</td></tr>
<tr><td>기준</td><td colspan="5">산정내역의 구체성, 유사개발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비의 적정성을 정성적으로 평가</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5">• 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 중 기투자 및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실적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 대비 기투자되었거나 관련 부처로부터 확보한 예산액의 비율을 검토
- 개발계획상 사업비 이외에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집행한 국비는 '관계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평가지표에서 검토하므로 주의</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 중 평가시점까지 기투자된 국비의 누계를 기재
• 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 중 관련 부처로부터 확보한 평가시점 이후의 예산을 기재
• 증빙자료 : 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 중 ①기투자 사업비 내역, ②관련 부처 예산 확보 증빙자료(공문서 등)를 제출
[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
(단위 ; 천원, %)
<table>
<tr><td rowspan="2">관련 부처
(지원 부처)</td><td rowspan="2">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a)</td><td colspan="2">기투자 국비 누계</td><td colspan="2">관련 부처 예산확보</td><td>국비 확보율</td></tr>
<tr><td>집행액(b)</td><td>집행기간</td><td>예산확보액(c)</td><td>투자예정 기간</td><td>{(b+c)/a)×100</td></tr>
<tr><td>문화재청</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농림축산식품부</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td><td></td><td></td><td></td><td>평가대상</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지자체가 작성한 국비 확보율을 기준으로 평가
• 다만, 관련 부처 계획에 반영되어 있거나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을 경우에도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
- 대부분의 개발계획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국비 확보를 목적으로 종합발전계획 등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
[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 평가표]
<table>
<tr><td colspan="2">구분</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부진</td></tr>
<tr><td rowspan="2">국비 기투자</td><td>기준</td><td>기투자</td><td>기투지</td><td>기투자 없음</td><td>기투자 없음</td><td>기투자 없음</td></tr>
<tr><td>배점</td><td>5</td><td>5</td><td>3</td><td>3</td><td>3</td></tr>
<tr><td rowspan="2">국비확보율</td><td>기준</td><td>90% 이상</td><td>70% 이상</td><td>50% 이상</td><td>관련부처 계획 반영</td><td>관련 부처 협의중</td></tr>
<tr><td>배점</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r>
<tr><td colspan="2">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3) 지방비 확보 가능성

<table>
<tr><td>지표</td><td colspan="2">지방비 확보 가능성</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4">• 개발계획상 지방비 투자계획 중 지방비 기투자 및 확보 실적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4">• 개발계획상 지방비 투자계획 대비 지방비 기투자 및 확보 예산액의 비율을 검토
- 개발계획상 사업비 이외에 투입된 지방비는 '관계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평가지표에서 검토하므로 주의
-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4">• 개발계획상 지방비 투자계획 중 평가시점까지 기투자된 지방비의 누계를 기재
• 개발계획상 지방비 투자계획 중 평가시점 이후 확보된 지방비 예산을 기재
• 증빙자료 : 개발계획상 지방비 투자계획 중 ①기투자 사업비 내역, ②지방비 예산 확보 증빙자료(공문서 등)를 제출
[지방비 확보율]
(단위 ; 천원, %)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지방비 투자계획 (a)</td><td colspan="2">기투자 지방비 누계</td><td colspan="3">지방비 확보</td><td rowspan="2">지방비 확보율 {(b+c)/a}×100</td></tr>
<tr><td>집행액 (b)</td><td>집행기간</td><td>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td><td>예산 확보액(c)</td><td>투자예정 기간</td></tr>
<tr><td>내역</td><td></td><td></td><td></td><td></td><td></td><td></td><td>평가대상</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4">• 지자체가 작성한 지방비 확보율을 기준으로 평가
• 다만, 확보한 지방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사유 기재 후 배점 조정이 가능
[지방비 확보 가능성 평가표]
<table>
<tr><td colspan="2">구분</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부진</td></tr>
<tr><td rowspan="2">기투자</td><td>기준</td><td>기투자</td><td>기투자</td><td>기투자 없음</td><td>기투자 없음</td><td>기투자 없음</td></tr>
<tr><td>배점</td><td>5</td><td>5</td><td>3</td><td>3</td><td>3</td></tr>
<tr><td rowspan="2">확보율</td><td>기준</td><td>80% 이상</td><td>60% 이상</td><td>40% 이상</td><td>20% 이상</td><td>20% 미만</td></tr>
<tr><td>배점</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r>
<tr><td colspan="2">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사업시행자가 민간 등인 경우

1) 계획 충실성

(1) 사업의 구체성

<table>
<tr><td>지표</td><td>사업의 구체성</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3">• 개발계획에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사업의 필요성,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사업대상지, 핵심집객시설,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 등)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able>

중점 검토 사항

- 지역 여건 및 현황에의 적합성, 사업대상지 확정 여부, 핵심집객시설 존재 여부,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 여부,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 지역 여건 및 현황에의 적합성 : 접근성 등 지역 여건 및 현황을 고려할 때, 부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 및 현황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평가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매우 부적합한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검토
  - 사업대상지 확정 : 사업대상지 확정 여부(위치, 면적 등)
  - 핵심집객시설 존재 여부 : 핵심집객시설이 개발계획에 제시되어 있고, 핵심집객시설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의 개발계획이 유기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 핵심집객시설은 관광지로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 관광지를 방문한 이용객들로 하여금 체류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관광지 내 다른 시설의 방문횟수 증가나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로서 파급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설임(호텔, 콘도미니엄, 위락시설, 관광자원 등)
  -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 여부 : 일정 수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여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파악)
  - 기타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등

지자체 제출 서식

- 중점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자체 검토의견을 작성
- 특히, 대부분의 개발계획에서 제시되지 않는 운영방안 및 계획,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

[사업의 구체성에 대한 지자체 검토의견]

구분	해당 지자체 검토의견
구체성 여부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로 기술) • 지역여건 및 현황에의 적합성 • 대상지 확정 여부 • 핵심집객시설 존재 여부

※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을 시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 가능)

[사업 완료 후 운영계획]

운영방안 및 계획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로 기술) • 운영방안 및 계획 수립 여부, 수익창출 관련 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술

※ 운영방안 및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특별히 기재할 사항이 없을 경우,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로 기술) • 상위계획 및 타 계획에의 포함 여부,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사업명, 면적, 시설 등) 등을 중심으로 기술 • 상위계획 및 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위계획 및 타 계획의 사업들과 연계효과(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

※ 특별히 기재할 사항이 없을 경우,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

평가 등급

- 개발계획에서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
- 단순 구상단계의 개발계획(페이퍼 플랜)으로 사업기간 내 사업추진이 매우 불확실한 경우에는 '다소 부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

[사업의 구체성 평가표]

구분	적정	다소 적정	보통	다소 부적정	부적정
기준	지역 여건 및 현황에의 적합성, 사업대상지 확정 여부, 핵심집객시설 존재 여부,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 여부,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배점	10	9	8	7	6
평가사유					

(2)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

<table>
<tr><td>지표</td><td>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3">• 관계 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및 민간 사업시행자의 노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비율=(반영 건수/관계 기관 협의의견 건수)×100</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지구(구역) 등 지정 신청시 제출한 개발계획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의견을 검토
• 관계 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지자체와 민간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 및 반영 여부를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지구(구역) 등 지정 신청시 제출한 개발계획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의견을 정리
• 정리된 협의의견 건별로 조치계획과 반영 여부를 작성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table>
<tr><th>연번</th><th>관계 기관(부처)</th><th>협의의견</th><th>조치계획</th><th>반영 여부*</th></tr>
<tr><td>1</td><td>환경부</td><td></td><td></td><td></td></tr>
<tr><td>2</td><td>국방부</td><td></td><td></td><td></td></tr>
<tr><td>3</td><td>산림청</td><td></td><td></td><td></td></tr>
<tr><td>4</td><td>⋮</td><td></td><td></td><td></td></tr>
</table>
* 반영 여부는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으로 구분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건수]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반영
(a)</th><th rowspan="2">일부 반영
(b)</th><th colspan="2">미반영</th><th rowspan="2">기타
(e)</th><th rowspan="2">합계
(f=a+b+c+d+e)</th><th rowspan="2">반영률
{(a+b)/f}×100</th></tr>
<tr><th>추후 반영
(c)</th><th>반영 불가능
(d)</th></tr>
<tr><td>건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평가대상</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협의의견의 경중 및 조치계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
- 배점 조정시에는 평가사유에 조정사유를 기재
• 관계 기관 협의의견이 없는 경우(협의 건수가 없는 경우)에는 탁월로 배점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기준
(반영율)</td><td>90% 이상</td><td>80% 이상</td><td>70% 이상</td><td>60% 이상</td><td>60% 미만</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3)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

<table>
<tr><td>지표</td><td colspan="5">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td><td>배점</td><td>5</td></tr>
<tr><td>개념</td><td colspan="7">•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7">• 지자체 및 민간 사업시행자가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는지를 검토
- 주민 의견수렴 횟수, 주민설명회 관련 자료,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7">• 지자체 및 민간 사업시행자가 실시한 주민 의견수렴 노력을 의견수렴 실적,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최대한 상세히 기재
• 증빙자료 : ①주민의견 수렴 노력 관련 자료(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관련 자료, 설문조사 결과 등) 제출
[주민의견 수렴 노력]
<table>
<tr><td rowspan="2">시기
(년월일)</td><td rowspan="2">의견수렴
대상 지역</td><td colspan="4">참석자수</td><td rowspan="2">주요의견</td><td rowspan="2">조치사항</td></tr>
<tr><td>합계</td><td>지자체</td><td>지역주민</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7">• 주민 의견수렴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참석자수와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 등 의견수렴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사유 기재 후 배점 조정이 가능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 평가표]
<table>
<tr><td>구분</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부진</td></tr>
<tr><td>기준</td><td>4회 이상</td><td>3회</td><td>2회</td><td>1회</td><td>미실시</td></tr>
<tr><td>배점</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사업추진 가능성

(1)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5">•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와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거나 협의 중인 사업시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 선정 또는 협의 중인 사업시행자가 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의5, 제30조, 제38조의4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1조 등</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와 협의 중 사업시행자가 있는지를 기재
• 선정 또는 협의 중인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 증빙자료 :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①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출자비율, 재무건전성 등 특정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여부 지자체 검토의견]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 작성)
•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 협의 중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 기재
• 법적요건 충족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의견 기재</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와 법적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평가표]
<table>
<tr><td colspan="2">구분</td><td>적합</td><td>보통</td><td colspan="3">부적합</td></tr>
<tr><td rowspan="2">기준</td><td>사업시행자 선정 여부</td><td>선정</td><td>협의 중</td><td>선정</td><td>협의 중</td><td rowspan="2">선정 또는 협의 중 사업시행자 없음</td></tr>
<tr><td>법적요건 충족 여부</td><td>충족</td><td>충족</td><td>미충족</td><td>미충족</td></tr>
<tr><td colspan="2">배점</td><td>10</td><td>8</td><td>6(제척)</td><td>6(제척)</td><td>6(제척)</td></tr>
<tr><td colspan="2">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table>
<tr><td>지표</td><td>사업시행자 투자의향</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3">• 사업시행자의 투자의향 및 사업추진의 적극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 협약서 등 체결 여부와 협약서 등의 효력 및 구체성을 검토
-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 협약서 등(투자약정서(LOC, Letter of Commitment), 투자협정서(LOA, Letter of Agre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을 확인
-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업관련 내용(투자금액, 협약기간, 협약 주체간 역할 등)의 구체성과 효력 등을 확인</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별도서식은 없으며, 협약서 등 증빙자료로 대체
• 증빙자료 : 투자의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①협약서 등(LOC, LOA, MOU 등) 사본을 제출</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협약서 등 체결 여부와 효력 및 구체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 협약서 등 체결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최하등급으로 평가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기준</td><td colspan="5">협약서 등 체결 여부, 협약서의 효력, 협약서의 구체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3) 토지 확보 용이성

지표	토지 확보 용이성	배점	10
개념	• 사업대상지의 토지 확보 용이성과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노력을 파악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토지 확보율={(사업시행자 매입면적+사용동의서 확보 사유지 면적)/사업대상지 면적}×100		
중점 검토 사항	•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면적과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사유지 면적이 사업대상지에서 차지하는 비율(토지 확보율)을 검토 - 사업시행자 매입면적 :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한 사업대상지 면적 - 사용동의서 확보 사유지 면적 :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사업대상지 면적		
지자체 제출 서식	• 사업대상지의 토지소유 현황과 사업시행자의 토지 확보 노력을 중심으로 작성 • **증빙자료** : ①사업대상지 토지소유 현황(표) 및 도면, ②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와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토지의 현황(표) 및 도면을 제출		
평가 등급	• 토지 확보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소유자수 및 필지수가 많아 토지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평가사유를 기재한 후 배점 조정이 가능		

[토지 확보율]

(단위 : ㎡, %, 필지, 명)

구분	합계 (a)	국공유지				사유지				기타	토지 확보율 {(b+c)/a}×100
		소계	시·군유지	도유지	국유지	소계	사업 시행자 매입(b)	사용 동의서 확보(c)	사용 동의서 미확보		
면적											*평가대상*
필지수											-
소유자수											-

[토지 확보의 용이성 평가표]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기준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5% 미만
배점	10	9	8	7	6
평가사유					

3) 수요확보 가능성

(1)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5">• 개발계획 완료시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개발계획상 제시된 이용객 및 입주수요 목표와 수요추정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
• 지역의 방문객(이용객) 및 입주수요 추이를 파악하고 상위 중장기 수요·공급 계획(광역단위에서의 수급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 관광부문 사업의 경우 : 광역단위에서의 집객시설(호텔, 콘도미니엄 등) 수요 예측 자료(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해당 지역(시설)의 방문객수 추정 자료 등)를 최대한 활용하되, 수요 예측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년도의 방문객(이용객) 추이 등의 자료를 활용
- 산업단지의 경우 : 광역단위에서의 산업단지 수요 추정 자료(국토부의 산업입지 수급계획 자료)와 산업단지 개발현황(입주 및 분양 현황, 투자의향서 제출기업의 부지 수요 규모 등)을 참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관광부문 개발계획은 목표 이용객(방문객) 및 입주수요, 추정방법 및 과정을 제시하고, 이용객(방문객) 확보 가능성에 대한 지자체 검토의견을 작성
• 산업단지부문 개발계획은 입주대상 업종의 범위를 기재하고, 관련 중장기 수요·공급 계획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의견을 작성
- 분양 중 또는 조성완료 산업단지 : 평가시점에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을 검토
• 증빙자료 : ①관광부문 개발계획은 사업대상지에 위치하는 주요 관광자원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용객(방문객) 현황 자료, ②분양 중 또는 조성완료 산업단지는 평가시점에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 자료를 제출
[이용객 및 입주수요 추정]
• 별도서식 없음(3쪽 이내로 작성)
• 관광부문 개발계획 : 목표 이용객(방문객) 및 입주수요, 수요추정방법을 제시하고 이용객(방문객) 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 산업단지부문 개발계획 : 입주대상 업체의 범위를 기재하고, 관련 중장기 수요·공급 계획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관광부문 개발계획은 이용객 및 입주수요 추정 방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사업대상지에 위치하는 주요 관광자원의 이용객(방문객) 추이를 고려
• 산업단지부문 개발계획은 광역단위에서의 산업단지 수요 추정 자료(국토부의 산업입지 수급계획 자료)와 산업단지 개발현황(입주 및 분양 현황, 투자의향서 제출기업의 부지 수요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평가표]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 rowspan="2">관광부문</td><td>기준 : 이용객 및 입주수요 추정 방법의 적절성</td><td>매우 적절</td><td>적절</td><td>보통</td><td>미흡</td><td>부적절</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 colspan="2">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산업단지 부문</td><td>기준 : 중장기 수요·공급 계획과의 부합성</td><td>매우 부합</td><td>부합</td><td>어느 정도 부합</td><td>초과</td><td>매우 초과</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 colspan="2">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table>
<tr><td>지표</td><td>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3">• 지역 내 유사시설의 개발·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수요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지역 내 개발사업간 중복성 여부를 파악하여 개발계획 완료 이후의 원활한 수요확보 가능성을 검토
- 광역 및 시군 차원에서 개발계획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개발사업이 존재하거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
•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광역적 차원에서의 개발현황을 파악하여 입주수요 확보가능을 검토
- 사업대상지가 위치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에 사업내용이 유사한 단지가 기 입지하거나 개발·계획 중인지 여부와 이들 단지의 미분양율, 미입주율, 운영 상황 등을 파악
-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평가지표와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평가지표는 광역적 차원의 실제 개발현황(분양 및 입주 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이용객 및 입주수요 확보시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 내 유사사업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 지역 내에 계획·개발·운영 중인 동일 또는 유사 개발사업이 없거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
• 증빙자료 : 유사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①관광부문 개발계획은 유사 개발사업의 운영현황(연도별(최근 5년) 이용객 및 방문객, 사업규모(사업대상지 면적, 객실 수 등) 등) 자료, ②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개발계획은 해당 시·군 전체의 단지별 개발현황(분양율, 입주율, 이용객 등) 자료를 제출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로 작성)
• 유사시설 존재 유무
• 존재 시 분양 현황, 시설이용현황 등</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유사 개발사업 존재 여부 및 개발현황, 경쟁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유사 개발사업이 작더라도, 유사 개발사업의 운영현황이 어려운 경우(지속적 적자 및 적자폭의 확대 등)에는 낮은 등급으로 평가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평가표]
<table>
<tr><td>구분</td><td>다소 긍정적</td><td>긍정적</td><td>보통</td><td>부정적</td><td>다소 부정적</td></tr>
<tr><td>기준</td><td colspan="5">유사 개발사업 존재 여부 및 개발현황, 경쟁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4) 사업적정성

(1) 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5">• 사업규모(사업면적, 시설규모 등)에 비해 개발계획상 사업비가 과도하거나 세부 산정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유사 개발규모의 사업들과 비교시 개발계획상 사업비가 과도한지 여부를 검토
• 개발계획상 세부 산정내역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별도서식은 없으며, 개발계획 내 사업비 산정내역 또는 증빙자료로 대체
• 증빙자료 : ①개발계획 상 총사업비 산정내역보다 구체적인 자료 또는 사업비 산정시 참고한 유사 개발사업 사업비 자료 있을 경우 제출</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산정내역의 구체성, 유사 개발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비의 적정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table>
<tr><td>구분</td><td>적정</td><td>다소 적정</td><td>보통</td><td>다소 부적정</td><td>부적정</td></tr>
<tr><td>기준</td><td colspan="5">산정내역의 구체성, 유사개발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비의 적정성을 정성적으로 평가</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재원조달 현실성

<table>
<tr><td>지표</td><td>재원조달 현실성</td><td>배점</td><td>15</td></tr>
<tr><td>개념</td><td colspan="3">•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방안을 검토
-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검토
- 재무적 투자자의 확보 여부 검토
-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현황 검토 등
• 사업시행자의 유사규모 개발사업 시행 실적 등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의견을 작성
• 증빙자료 : ①사업시행자의 자본금 확인 가능 자료, ②SPC를 구성한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의 구성 및 출자금액과 출자비율 관련 자료, ③사업시행자의 유사규모 개발사업 시행 실적 자료를 제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방안]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로 작성)
•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의견을 작성</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자본금 규모, SPC 구성 및 재무적 투자자의 확보 여부, 유사규모의 개발사업 시행 실적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았거나 사업시행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등급으로 배점
[재원조달 현실성 평가표]
<table>
<tr><td>구분</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부진</td></tr>
<tr><td>기준</td><td colspan="5">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자본금, SPC 구성 및 재무적 투자자의 확보 여부,
유사규모의 개발사업 시행 실적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td></tr>
<tr><td>배점</td><td>15</td><td>13.5</td><td>12</td><td>10.5</td><td>9</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민간 공동인 경우

1) 계획 충실성

(1) 사업의 구체성

<table>
<tr><td>지표</td><td>사업의 구체성</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3">• 개발계획에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사업의 필요성,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사업대상지, 핵심집객시설,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 등)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able>

중점 검토 사항

- 지역 여건 및 현황에의 적합성, 사업대상지 확정 여부, 핵심집객시설 존재 여부,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 여부,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 지역 여건 및 현황에의 적합성 : 접근성 등 지역 여건 및 현황을 고려할 때, 부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 및 현황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평가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매우 부적합한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검토
  - 사업대상지 확정 : 사업대상지 확정 여부
  - 핵심집객시설 존재 여부 : 핵심집객시설이 개발계획에 제시되어 있고, 핵심집객시설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의 개발계획이 유기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위치,면적 등)
    ※ 핵심집객시설은 관광지로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 관광지를 방문한 이용객들로 하여금 체류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관광지 내 다른 시설의 방문횟수 증가나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로서 파급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설임(호텔, 콘도미니엄, 위락시설, 관광자원 등)
  -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 여부 : 일정 수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여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파악)
  - 기타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등

지자체 제출 서식

- 중점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자체 검토의견을 작성
- 특히, 대부분의 개발계획에서 제시되지 않는 운영방안 및 계획,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

[사업의 구체성에 대한 지자체 검토의견]

구분	해당 지자체 검토의견
구체성 여부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로 기술) • 지역여건 및 현황에의 적합성 • 대상지 확정 여부 • 핵심집객시설 존재 여부 등

※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을 시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 가능)

[사업 완료 후 운영계획]

운영방안 및 계획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로 기술) • 운영방안 및 계획 수립 여부, 수익창출 관련 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술

※ 운영방안 및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특별히 기재할 사항이 없을 경우,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로 기술) • 상위계획 및 타 계획에의 포함 여부,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사업명, 면적, 시설 등) 등을 중심으로 기술 • 상위계획 및 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위계획 및 타 계획의 사업들과 연계효과(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

※ 특별히 기재할 사항이 없을 경우,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

평가 등급

- 개발계획에서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
- 단순 구상단계의 개발계획(페이퍼 플랜)으로 사업기간 내 사업추진이 매우 불확실한 경우에는 '다소 부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

[사업의 구체성 평가표]

구분	적정	다소 적정	보통	다소 부적정	부적정
기준	지역 여건 및 현황에의 적합성, 사업대상지 확정 여부, 핵심집객시설 존재 여부,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 여부, 상위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배점	10	9	8	7	6
평가사유					

(2)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5">• 관계 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및 민간 사업시행자의 노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비율=(반영 건수/관계 기관 협의의견 건수)×100</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지구(구역) 등 지정 신청시 제출한 개발계획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의견을 검토
• 관계 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지자체와 민간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 및 반영 여부를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지구(구역) 등 지정 신청시 제출한 개발계획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의견을 정리
• 정리된 협의의견 건별로 조치계획과 반영 여부를 작성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table><tr><th>연번</th><th>관계 기관(부처)</th><th>협의의견</th><th>조치계획</th><th>반영 여부*</th></tr><tr><td>1</td><td>환경부</td><td></td><td></td><td></td></tr><tr><td>2</td><td>국방부</td><td></td><td></td><td></td></tr><tr><td>3</td><td>산림청</td><td></td><td></td><td></td></tr><tr><td>4</td><td>⋮</td><td></td><td></td><td></td></tr></table>* 반영 여부는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으로 구분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건수]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반영
(a)</th><th rowspan="2">일부 반영
(b)</th><th colspan="2">미반영</th><th rowspan="2">기타
(e)</th><th rowspan="2">합계
(f=a+b+c+d+e)</th><th rowspan="2">반영률
{(a+b)/f}×100</th></tr><tr><th>추후 반영
(c)</th><th>반영 불가능
(d)</th></tr><tr><td>건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평가대상</td></tr></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협의의견의 경중 및 조치계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
- 배점 조정시에는 평가사유에 조정사유를 기재
• 관계 기관 협의의견이 없는 경우(협의 건수가없는 경우)에는 탁월로 배점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 정도 평가표]
<table><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tr><td>기준
(반영율)</td><td>90% 이상</td><td>80% 이상</td><td>70% 이상</td><td>60% 이상</td><td>60% 미만</td></tr><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table></td></tr>
</table>

(3)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td><td>배점</td><td>5</td></tr>
<tr><td>개념</td><td colspan="5">•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지자체 및 민간 사업시행자가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는지를 검토
- 주민 의견수렴 횟수, 주민설명회 관련 자료,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지자체 및 민간 사업시행자가 실시한 주민 의견수렴 노력을 의견수렴 실적,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최대한 상세히 기재
• 증빙자료 : ①주민의견 수렴 노력 관련 자료(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관련 자료, 설문조사 결과 등) 제출
[주민의견 수렴 노력]
<table>
<tr><td rowspan="2">시기
(년월일)</td><td rowspan="2">의견수렴
대상 지역</td><td colspan="4">참석자수</td><td rowspan="2">주요의견</td><td rowspan="2">조치사항</td></tr>
<tr><td>합계</td><td>지자체</td><td>지역주민</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주민 의견수렴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참석자수와 주요의견 및 조치사항 등 의견수렴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사유 기재 후 배점 조정이 가능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 평가표]
<table>
<tr><td>구분</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부진</td></tr>
<tr><td>기준</td><td>4회 이상</td><td>3회</td><td>2회</td><td>1회</td><td>미실시</td></tr>
<tr><td>배점</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사업추진 가능성

(1)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5">• 민간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와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민간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거나 협의 중인 민간 사업시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 선정 또는 협의 중인 민간 사업시행자가 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의5, 제30조, 제38조의4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1조 등</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민간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와 협의 중 민간 사업시행자가 있는지를 기재
• 선정 또는 협의 중인 민간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 증빙자료 :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①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출자비율, 재무건전성 등 특정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여부 지자체 검토의견]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 작성)
• 민간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 협의 중 민간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 기재
• 법적요건 충족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의견 기재</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민간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와 사업시행자 법적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평가표]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적합</th><th>보통</th><th colspan="3">부적합</th></tr>
<tr><td rowspan="2">기준</td><td>사업시행자 선정 여부</td><td>선정</td><td>협의 중</td><td>선정</td><td>협의 중</td><td rowspan="2">선정 또는 협의 중 민간 사업시행자 없음</td></tr>
<tr><td>법적요건 충족 여부</td><td>충족</td><td>충족</td><td>미충족</td><td>미충족</td></tr>
<tr><td colspan="2">배점</td><td>10</td><td>8</td><td>6(제척)</td><td>6(제척)</td><td>6(제척)</td></tr>
<tr><td colspan="2">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사업시행자 투자의향</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5">• 민간 사업시행자의 투자의향 및 사업추진의 적극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지자체와 민간 사업시행자간 협약서 등 체결 여부와 협약서 등의 효력 및 구체성을 검토
- 지자체와 민간 사업시행자간 협약서 등(투자약정서(LOC, Letter of Commitment), 투자협정서(LOA, Letter of Agre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을 확인
-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업관련 내용(투자금액, 협약기간, 협약 주체간 역할 등)의 구체성과 효력 등을 확인</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별도서식은 없으며, 협약서 등 증빙자료로 대체
• 증빙자료 : 투자의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①협약서 등(LOC, LOA, MOU 등) 사본을 제출</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협약서 등 체결 여부와 효력 및 구체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 협약서 등 체결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최하등급으로 평가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평가표]
<table><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tr><td>기준</td><td colspan="5">협약서 등 체결 여부, 협약서의 효력, 협약서의 구체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td></tr><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table></td></tr>
</table>

(3) 토지 확보 용이성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토지 확보 용이성</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5">• 사업대상지의 토지 확보 용이성과 지자체와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노력을 파악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토지 확보율={(국공유지 면적+민간 사업시행자 매입 면적+사용동의서 확보 사유지 면적)/사업대상지 면적}×100</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지자체 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면적과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사유지 면적이 사업대상지에서 차지하는 비율(토지 확보율)을 검토
- 사업시행자 매입면적 : 지자체 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한 사업대상지 면적
- 사용동의서 확보 사유지 면적 : 지자체 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사업대상지 면적</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사업대상지의 토지소유 현황과 지자체 및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 확보 노력을 중심으로 작성
• 증빙자료 : ①사업대상지 토지소유 현황(표) 및 도면, ②지자체 및 민간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와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토지의 현황(표) 및 도면을 제출
[토지 확보율]
(단위 : ㎡, %, 필지, 명)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합계 (a)</th><th colspan="4">국공유지</th><th colspan="4">사유지</th><th rowspan="2">기타</th><th rowspan="2">토지 확보율 {(b+c+d)/a}×100</th></tr>
<tr><th>소계 (b)</th><th>시·군유지</th><th>도유지</th><th>국유지</th><th>소계</th><th>사업 시행자 매입(c)</th><th>사용 동의서 확보(d)</th><th>사용 동의서 미확보</th></tr>
<tr><td>면적</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평가대상</td></tr>
<tr><td>필지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소유자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토지 확보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소유자수 및 필지수가 많아 토지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평가사유를 기재한 후 배점 조정이 가능
[토지 확보의 용이성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기준</td><td>20% 이상</td><td>15% 이상</td><td>10% 이상</td><td>5% 이상</td><td>5% 미만</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3) 수요확보 가능성

(1)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5">• 개발계획 완료시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개발계획상 제시된 이용객 및 입주수요 목표와 수요추정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
• 지역의 방문객(이용객) 및 입주수요 추이를 파악하고 상위 중장기 수요·공급 계획(광역단위에서의 수급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 관광부문 사업의 경우 : 광역단위에서의 집객시설(호텔, 콘도미니엄 등) 수요 예측 자료(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해당 지역(시설)의 방문객수 추정 자료 등)를 최대한 활용하되, 수요 예측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년도의 방문객(이용객) 추이 등의 자료를 활용
- 산업단지의 경우 : 광역단위에서의 산업단지 수요 추정 자료(국토부의 산업입지 수급계획 자료)와 산업단지 개발현황(입주 및 분양 현황, 투자의향서 제출기업의 부지 수요 규모 등)을 참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관광부문 개발계획은 목표 이용객(방문객) 및 입주수요, 추정방법 및 과정을 제시하고, 이용객(방문객) 확보 가능성에 대한 지자체 검토의견을 작성
• 산업단지부문 개발계획은 입주대상 업종의 범위를 기재하고, 관련 중장기 수요·공급 계획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의견을 작성
- 분양 중 또는 조성완료 산업단지 : 평가시점에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을 검토
• 증빙자료 : ①관광부문 개발계획은 사업대상지에 위치하는 주요 관광자원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용객(방문객) 현황 자료, ②분양 중 또는 조성완료 산업단지는 평가시점에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 자료를 제출
[이용객 및 입주수요 추정]
• 별도서식 없음(3쪽 이내로 작성)
• 관광부문 개발계획 : 목표 이용객(방문객) 및 입주수요, 수요추정방법을 제시하고 이용객(방문객) 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 산업단지부문 개발계획 : 입주대상 업체의 범위를 기재하고, 관련 중장기 수요·공급 계획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관광부문 개발계획은 이용객 및 입주수요 추정 방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사업대상지에 위치하는 주요 관광자원의 이용객(방문객) 추이를 고려
• 산업단지부문 개발계획은 광역단위에서의 산업단지 수요 추정 자료(국토부의 산업입지 수급계획 자료)와 산업단지 개발현황(입주 및 분양 현황, 투자의향서 제출기업의 부지 수요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평가표]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 rowspan="2">관광부문</td><td>기준 : 이용객 및 입주수요 추정 방법의 적절성</td><td>매우 적절</td><td>적절</td><td>보통</td><td>미흡</td><td>부적절</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 colspan="2">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산업단지 부문</td><td>기준 : 중장기 수요·공급 계획과의 부합성</td><td>매우 부합</td><td>부합</td><td>어느 정도 부합</td><td>초과</td><td>매우 초과</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 colspan="2">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
</td></tr>
</table>

(2)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table>
<tr><td>지표</td><td>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3">• 지역 내 유사시설의 개발·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수요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지역 내 개발사업간 중복성 여부를 파악하여 개발계획 완료 이후의 원활한 수요확보 가능성을 검토
- 광역 및 시군 차원에서 개발계획과 동일 또는 유사한 개발사업이 존재하거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
•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광역적 차원에서의 개발현황을 파악하여 입주수요 확보가능을 검토
- 사업대상지가 위치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에 사업내용이 유사한 단지가 기 입지하거나 개발·계획 중인지 여부와 이들 단지의 미분양율, 미입주율, 운영 상황 등을 파악
-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평가지표와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평가지표는 광역적 차원의 실제 개발현황(분양 및 입주 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이용객 및 입주수요 확보시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 내 유사사업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 지역 내에 계획·개발·운영 중인 동일 또는 유사 개발사업이 없거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
• 증빙자료 : 유사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①관광부문 개발계획은 유사 개발사업의 운영현황(연도별(최근 5년) 이용객 및 방문객, 사업규모(사업대상지 면적, 객실 수 등) 등) 자료, ②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개발계획은 해당 시·군 전체의 단지별 개발현황(분양율, 입주율, 이용객 등) 자료를 제출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로 작성)
• 유사시설 존재 유무
• 존재 시 분양현황, 시설이용현황 등</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유사 개발사업 존재 여부 및 개발현황, 경쟁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유사 개발사업이 작더라도, 유사 개발사업의 운영현황이 어려운 경우(지속적 적자 및 적자폭의 확대 등)에는 낮은 등급으로 평가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다소 긍정적</th><th>긍정적</th><th>보통</th><th>부정적</th><th>다소 부정적</th></tr>
<tr><td>기준</td><td colspan="5">유사 개발사업 존재 여부 및 개발현황, 경쟁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4) 사업적정성

(1) 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td><td>배점</td><td>5</td></tr>
<tr><td>개념</td><td colspan="5">• 사업규모(사업면적, 시설규모 등)에 비해 개발계획상 사업비가 과도하거나 세부 산정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유사 개발규모의 사업들과 비교시 개발계획상 사업비가 과도한지 여부를 검토
• 개발계획상 세부 산정내역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별도서식은 없으며, 개발계획 내 사업비 산정내역 또는 증빙자료로 대체
• 증빙자료 : ①개발계획 상 총사업비 산정내역보다 구체적인 자료 또는 사업비 산정시 참고한 유사 개발사업 사업비 자료 있을 경우 제출</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산정내역의 구체성, 유사 개발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비의 적정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table>
<tr><th>구분</th><th>적정</th><th>다소 적정</th><th>보통</th><th>다소 부적정</th><th>부적정</th></tr>
<tr><td>기준</td><td colspan="5">산정내역의 구체성, 유사개발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비의 적정성을 정성적으로 평가</td></tr>
<tr><td>배점</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

지표	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	배점	5
개념	• 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 중 기투자 및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실적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중점 검토 사항	• 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 대비 기투자되었거나 관련 부처로부터 확보한 예산액의 비율을 검토 - 개발계획상 사업비 이외에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집행한 국비가 아니므로 주의		
지자체 제출 서식	• 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 중 평가시점까지 기투자된 국비의 누계를 기재 • 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 중 관련 부처로부터 확보한 평가시점 이후의 예산을 기재 • **증빙자료** : 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 중 ①기투자 사업비 내역, ②관련 부처 예산 확보 증빙자료(공문서 등)를 제출		
평가 등급	• 지자체가 작성한 국비 확보율을 기준으로 평가 - 개발계획상 투자계획에 국비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 가능성' 평가지표에 배점을 합산('지방비 확보 가능성' 평가지표의 총배점을 10점으로 배정) • 다만, 관련 부처 계획에 반영되어 있거나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을 경우에도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 - 대부분의 개발계획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국비 확보를 목적으로 종합발전계획 등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		

[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

(단위 ; 천원, %)

관련 부처 (지원 부처)	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a)	기투자 국비 누계		관련 부처 예산확보		국비 확보율 {(b+c)/a)×100
		집행액(b)	집행기간	예산확보액(c)	투자예정 기간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		-				
합계						*평가대상*

[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 평가표]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국비 기투자	기준	기투자	기투지	기투자 없음	기투자 없음	기투자 없음
	배점	2.5	2.5	1.5	1.5	1.5
국비확보율	기준	90% 이상	70% 이상	50% 이상	관련부처 계획 반영	관련 부처 협의중
	배점	2.5	2.25	2	1.75	1.5
평가사유						

(3) 지방비 확보 가능성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지방비 확보 가능성</td><td>배점</td><td>5</td></tr>
<tr><td>개념</td><td colspan="5">• 개발계획상 지방비 투자계획 중 지방비 기투자 및 확보 실적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개발계획상 지방비 투자계획 대비 지방비 기투자 및 확보 예산액의 비율을 검토
- 개발계획상 사업비 이외에 투입된 지방비가 아니므로 주의
-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개발계획상 지방비 투자계획 중 평가시점까지 기투자된 지방비의 누계를 기재
• 개발계획상 지방비 투자계획 중 평가시점 이후 확보된 지방비 예산을 기재
• 증빙자료 : 개발계획상 지방비 투자계획 중 ①기투자 사업비 내역, ②지방비 예산 확보 증빙자료(공문서 등)를 제출
[지방비 확보율]
(단위 ; 천원, %)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지방비
투자계획
(a)</td><td colspan="2">기투자 지방비 누계</td><td colspan="3">지방비 확보</td><td rowspan="2">지방비 확보율
{(b+c)/a}×100</td></tr>
<tr><td>집행액
(b)</td><td>집행기간</td><td>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td><td>예산
확보액(c)</td><td>투자예정
기간</td></tr>
<tr><td>내역</td><td></td><td></td><td></td><td></td><td></td><td></td><td>평가대상</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지자체가 작성한 지방비 확보율을 기준으로 평가
- 개발계획상 투자계획에 지방비가 없을 경우에는 ‘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 평가지표에 배점을 합산(‘국비 기투자 및 관련 부처 예산 확보 여부’ 평가지표의 총배점을 10점으로 배정)
• 다만, 확보한 지방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사유 기재 후 배점 조정이 가능
[지방비 확보 가능성 평가표]
<table>
<tr><td colspan="2">구분</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부진</td></tr>
<tr><td rowspan="2">기투자</td><td>기준</td><td>기투자</td><td>기투자</td><td>기투자 없음</td><td>기투자 없음</td><td>기투자 없음</td></tr>
<tr><td>배점</td><td>2.5</td><td>2.5</td><td>1.5</td><td>1.5</td><td>1.5</td></tr>
<tr><td rowspan="2">확보율</td><td>기준</td><td>80% 이상</td><td>60% 이상</td><td>40% 이상</td><td>20% 이상</td><td>20% 미만</td></tr>
<tr><td>배점</td><td>2.5</td><td>2.25</td><td>2</td><td>1.75</td><td>1.5</td></tr>
<tr><td colspan="2">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4) 재원조달 현실성

<table>
<tr><td>지표</td><td>재원조달 현실성</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3">•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방안을 검토
-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검토
- 재무적 투자자의 확보 여부 검토
- 민간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현황 검토 등
• 민간 사업시행자의 유사규모 개발사업 시행 실적 등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의견을 작성
• 증빙자료 : ①민간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확인 가능 자료, ②SPC를 구성한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의 구성 및 출자금액과 출자비율 관련 자료, ③민간 사업시행자의 유사규모 개발사업 시행 실적 자료를 제출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방안]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로 작성)
•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의견을 작성</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SPC 구성 및 재무적 투자자의 확보 여부, 민간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및 유사규모의 개발사업 시행 실적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민간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았거나 민간 사업시행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등급으로 배점
[재원조달 현실성 평가표]
<table>
<tr><td>구분</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부진</td></tr>
<tr><td>기준</td><td colspan="5">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SPC 구성 및 재무적 투자자의 확보 여부,
민간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및 유사규모의 개발사업 시행 실적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3. 기반시설사업 평가지표

1) 사업공공성 : 기반시설사업의 필요성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기반시설사업의 필요성</td><td>배점</td><td>40</td></tr>
<tr><td>개념</td><td colspan="5">• 모사업과의 연계성 및 모사업 활성화에의 기여 정도, 주민 생활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모사업과의 연계성 및 모사업 활성화에의 기여 여부를 검토
- 추진 중 또는 시설 설치·조성이 완료된 모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당 기반시설사업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확인
- 현 상태에서도 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
•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상당 수준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
- 모사업 진입도로 기능과 함께, 인접 취락지구의 진입도로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해당 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모사업 활성화 효과, 현 상태에서도 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작성
•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기술
[모사업과의 연계성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지자체 검토의견]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로 작성)
• 해당 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모사업 활성화 효과, 현 상태에서도 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작성
•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기술</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모사업과의 연계성(모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지 여부), 모사업 활성화에의 기여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모사업이 없는 기반시설사업은 사업목적, 지역여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다소 불필요', '불필요'로 배점시에는 타 평가지표의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제척하되, 가급적 고려가능한 대안을 평가사유에서 제시
[기반시설사업의 필요성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매우 필요</th><th>필요</th><th>보통</th><th>다소 불필요</th><th>불필요</th></tr>
<tr><td>기준</td><td colspan="5">모사업과의 연계성(모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지 여부),
모사업 활성화에의 기여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td></tr>
<tr><td>배점</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연결성 및 중복성

(1) 타 기반시설과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

지표	타 기반시설과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	배점	20
개념	• 지역 내 주요 도로에의 연결 및 접근성 향상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중점 검토 사항	• 지역 내 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을 검토 - 지역 내 주요 도로에의 연결 및 접근성 향상 가능성을 검토		
지자체 제출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증빙자료로 대체 • **증빙자료** : ①해당 시·군 내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기반시설사업(도로)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상위 도로관련 계획에 반영된 노선 등 포함)		
평가 등급	• 지역 내 주요 도로에의 연결 및 접근성 향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타 기반시설과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 평가표]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기준	지역 내 주요 도로에의 연결 및 접근성 향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배점	20	18	16	14	12
평가사유					

(2) 인접한 유사 기반시설과의 중복성

지표	인접한 유사 기반시설과의 중복성	배점	40
개념	• 유사 기반시설의 인접으로 인한 기능 중복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중점 검토 사항	• 인접한 유사 기반시설과의 중복성(유사 기반시설의 인접으로 인한 기능 중복성 여부)을 검토 - 해당 기반시설사업 추진 지역(노선)과 반경 1㎢ 이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존재하는지를 파악 - 해당 기반시설사업이 진입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모사업으로 접근하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는지 등을 파악		
지자체 제출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타 기반시설과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 평가지표의 증빙자료로 대체		
평가 등급	• 유사 기반시설의 인접으로 인한 기능 중복성 여부를 평가 • 중복성이 '높음', '매우 높음'로 평가될 경우에는 타 평가지표의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제척 [인접한 유사 기반시설과의 중복성 평가표]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기준(중복성)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배점(%)	40	36	32	28	24
평가사유					

[부록 2]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평가표 및 작성서식

【단위사업별 평가결과표】

평가분야	사업시행자 (지자체/민간 등)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가유형 (정성/정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모사업 (1단계)	지자체	모사업의 진척 정도 (40)	토지 확보 용이성	20	18	16	14	12	정량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20	18	16	14	12	정성
		재원조달 가능성 (60)	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	40	36	30	28	24	정량
			재정건전성	20	18	16	14	12	정량
		평가결과(배점 합계)		총_____점					-
	민간 등	모사업의 진척 정도 (40)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15	-	12	-	9	정성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15	13.5	12	10.5	9	정성
			토지 확보 용이성	10	9	8	7	6	정량
		재원조달 가능성 (60)	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	25	22.5	20	17.5	15	정량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	35	31.5	28	24.5	21	정량
		평가결과(배점 합계)		총_____점					-
	지자체· 민간 공동	모사업의 진척 정도 (40)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15	-	12	-	9	정성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10	9	8	7	6	정성
			토지 확보 용이성	10	9	8	7	6	정량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5	4.5	4	3.5	3	정성
		재원조달 가능성 (60)	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	20	18	16	14	12	정량
			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	15	13.5	12	10.5	9	정량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	25	22.5	20	17.5	15	정량
		평가결과(배점 합계)		총_____점					-
기반시설 사업 (2단계)	지자체, 민간 등	사업적절성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	<평가의견>					정량
			시설규모의 적절성	<평가의견>					정량
			국고지원 비용 적절성	<평가의견>					정량
		종합의견							-

1. 모사업(1단계) 평가지표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1) 모사업의 진척 정도

(1) 토지 확보 용이성

<table>
<tr><td>지표</td><td colspan="6">토지 확보 용이성</td><td>배점</td><td>20</td></tr>
<tr><td>개념</td><td colspan="8">• 사업대상지의 토지 확보 용이성과 지자체의 토지확보 노력을 파악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토지 확보율={(국공유지 면적+사용동의서 확보 사유지 면적)/사업대상지 면적}×100</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8">• 사업대상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국공유지 면적 및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사유지 면적이 사업대상지에서 차지하는 비율(토지 확보율)을 검토
- 국공유지 면적 : 지자체 소유지 및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 면적
- 사용동의서 확보 사유지 면적 :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사업대상지 면적
• 개발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최근 매입한 사업대상지를 파악하여 지자체의 토지 확보 노력을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8">• 사업대상지의 토지소유 현황과 토지 확보 노력을 중심으로 작성
• 개발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매입한 토지는 국공유지로 집계되어 기존의 국공유지와 구분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
• 증빙자료 : ①사업대상지 토지소유 현황(표) 및 도면, ②지자체가 개발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와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토지의 현황(표) 및 도면을 제출
[토지 확보율]
(단위 : ㎡, %, 필지, 명)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합계 (a)</td><td colspan="4">국공유지</td><td colspan="3">사유지</td><td rowspan="2">기타</td><td rowspan="2">토지 확보율 {(b+c)/a}×100</td></tr>
<tr><td>소계 (b)</td><td>시·군유지</td><td>도유지</td><td>국유지</td><td>소계</td><td>사용동의서 확보(c)</td><td>사용동의서 미확보</td></tr>
<tr><td>면적</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평가대상</td></tr>
<tr><td>필지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소유자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8">• 토지 확보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유지의 소유자수 및 필지수가 많아 토지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평가사유를 기재한 후 배점 조정이 가능
[토지 확보의 용이성 평가표]
<table>
<tr><td>구분</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부진</td></tr>
<tr><td>기준</td><td>40% 이상</td><td>30% 이상</td><td>20% 이상</td><td>10% 이상</td><td>10% 미만</td></tr>
<tr><td>배점</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table>
<tr><td>지표</td><td colspan="2">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td><td>배점</td><td>20</td></tr>
<tr><td>개념</td><td colspan="4">• 사업대상지에서 국토부 또는 타 부처에 의해 개발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지를 파악하여 개발계획 추진 여건이 성숙하였는지,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개발효과의 제고가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4">•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관련 부처로부터 국비지원이 이루어졌거나(기 투입되었거나)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국비지원과 매칭하여 투입되었거나 투입 예정인 지방비도 검토
• 관련 부처의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거나 확보된 상황은 아니지만, 국비지원 확보 가능성이 높은지를 검토
• 국토부 또는 타 부처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4">•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와 국비 및 지방비 등 사업비 집행 실적을 작성
- 공간적 범위 : 사업대상지에서 이루어진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으로 개발계획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기재
- 시간적 범위 : 현재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상 사업을 기재
• 증빙자료 : ①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계획 등), ②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 의한 국비 및 지방비 등 사업비 집행 실적이 포함된 추진 현황 자료, ③기타 자료제출 서식에서 설명이 필요한 보완자료 등을 제출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및 사업비 집행 실적]
<table>
<tr><td rowspan="3">관련 부처</td><td rowspan="3">관련부처 종합계획명</td><td rowspan="3">관련 부처 종합계획상 사업명</td><td colspan="8">계획사업비 및 집행실적</td><td rowspan="3">관련 부처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 주요 사업내역</td></tr>
<tr><td colspan="2">소계</td><td colspan="2">국비</td><td colspan="2">지방비</td><td colspan="2">민자</td></tr>
<tr><td>계획</td><td>집행</td><td>계획</td><td>집행</td><td>계획</td><td>집행</td><td>계획</td><td>집행</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4">•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와 사업비 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평가표]
<table>
<tr><td>구분</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부진</td></tr>
<tr><td>기준</td><td>반영,
집행실적 있음</td><td>반영</td><td>미반영,
사업계획 수립 중</td><td>미반영,
협의 중</td><td>미반영</td></tr>
<tr><td>배점</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재원조달 가능성

(1) 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

<table>
<tr><td>지표</td><td colspan="4">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td><td>배점</td><td>40</td></tr>
<tr><td>개념</td><td colspan="6">• 개발계획상 국비와 지방비 투자계획 중 기투자 및 관련 부처 등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실적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국비 기투자+지방비 기투자+국비 확보액+지방비 확보액)/
(개발계획상 국비+개발계획상 지방비)}×100</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6">• 개발계획상 국비와 지방비 투자계획 대비 기투자되었거나 관련 부처 등으로부터 확보한 예산액의 비율을 검토
- 개발계획상 사업비 이외에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집행한 국비 및 지방비는 ‘관계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평가지표에서 검토하므로 주의</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6">• 개발계획상 국비와 지방비 투자계획 중 평가시점까지 기투자된 국비와 지방비의 누계를 기재
• 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 중 관련 부처로부터 확보한 평가시점 이후의 예산을 기재
• 개발계획상 지방비 투자계획 중 평가시점 이후 확보된 지방비 예산을 기재
• 증빙자료 : 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 중 ①기투자 사업비 내역, ②관련 부처 예산 확보 증빙자료(공문서 등), 개발계획상 지방비 투자계획 중 ③기투자 사업비 내역, ④지방비 예산 확보 증빙자료(공문서 등)를 제출
[기투자 및 예산 확보 여부]
(단위 ; 천원, %)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관련 부처
(지원 부처)</td><td rowspan="2">개발계획상
투자계획</td><td colspan="2">기투자 누계</td><td colspan="2">예산확보</td></tr>
<tr><td>집행액</td><td>집행기간</td><td>예산확보액</td><td>투자예정 기간</td></tr>
<tr><td rowspan="3">국비</td><td>문화재청</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농림축산식품부</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소계</td><td>(a)</td><td>(b)</td><td></td><td>(c)</td><td></td></tr>
<tr><td rowspan="2">지방비</td><td>도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군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소계</td><td>(d)</td><td>(e)</td><td></td><td>(f)</td><td></td></tr>
<tr><td colspan="2">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td><td colspan="5">{(b+c+e+f)/(a+d)}×100</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6">• 지자체가 작성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을 기준으로 평가
• 다만, 확보한 국비 및 지방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사유 기재 후 배점 조정이 가능
[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 평가표]
<table>
<tr><td>구분</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부진</td></tr>
<tr><td>기준</td><td>50% 이상</td><td>40% 이상</td><td>30% 이상</td><td>20% 이상</td><td>20% 미만</td></tr>
<tr><td>배점</td><td>40</td><td>36</td><td>30</td><td>28</td><td>24</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재정건전성

<table>
<tr><td>지표</td><td colspan="5">재정건전성</td><td>배점</td><td>20</td></tr>
<tr><td>개념</td><td colspan="7">• 지자체가 개발계획상 사업비를 감당할 능력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①재정건전성 : ‘개발사업비 조달가능지수’와 ‘예산대비 채무비율지수’로 산정
- ②개발사업비 조달가능지수=해당 지자체 자체사업비중/동급 지자체 자체사업비중 평균
- ③예산대비 채무비율지수=해당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동급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 평균</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7">• 재정건전성(개발사업비 조달가능지수, 예산대비 채무비율지수)을 검토
• 개발사업비 조달가능지수 : 동급 지자체 자체사업비중 평균과 비교한 해당 지자체의 자체사업비중
- 자체사업비중 : 지자체 전체 총예산 중 지역개발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의 비중
- 통계자료 :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
- 해당 지자체가 ‘시(市)’일 경우, 전국의 ‘시(市)’ 평균과 비교
• 예산대비 채무비율지수 : 동급 지자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평균과 비교한 해당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
- 통계자료 :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
- 해당 지자체가 ‘시(市)’일 경우, 전국의 ‘시(市)’ 평균과 비교</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7">• 예산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개발사업비 조달가능지수와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수를 산출
[개발사업비 조달가능지수]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3">해당 지자체</td><td rowspan="2">동급 지자체 자체사업비중 평균 (d)</td><td rowspan="2">개발사업비 조달가능지수 (c/d)×100</td></tr>
<tr><td>총예산 (최근 3년 평균) (a)</td><td>자체사업비 (최근 3년 평균) (b)</td><td>자체사업비중 (c=b/a)</td></tr>
<tr><td>금액(천원) 및 비율(%)</td><td></td><td></td><td></td><td></td><td>평가대상</td></tr>
</table>
[예산대비 채무비율지수]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3">해당 지자체</td><td rowspan="2">동급 지자체 채무비율 평균 (d)</td><td rowspan="2">예산대비 채무비율지수 (c/d)×100</td></tr>
<tr><td>총예산 (a)</td><td>채무액 (b)</td><td>채무비율 (c=b/a)</td></tr>
<tr><td>금액(천원) 및 비율(%)</td><td></td><td></td><td></td><td></td><td>평가대상</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7">• 지자체가 작성한 개발사업비 조달가능지수와 예산대비 채무비율지수를 기준으로 평가
[재정건전성 평가표]
<table>
<tr><td colspan="2">등급</td><td>매우 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 미흡</td></tr>
<tr><td rowspan="2">개발사업비 조달지수</td><td>기준</td><td>1.5배 이상</td><td>1.5배 미만 ~1.15</td><td>1.15배 미만 ~0.85</td><td>0.85배 미만 ~0.5</td><td>0.5배 이하</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 rowspan="2">예산대비 채무비율지수</td><td>기준</td><td>0.5배 이하</td><td>0.5~ 0.85배 미만</td><td>0.85~ 1.15배 미만</td><td>1.15~ 1.5배 미만</td><td>1.5배 이상</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 colspan="2">배점 합계</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사업시행자가 민간 등인 경우

1) 모사업의 진척 정도

(1)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td><td>배점</td><td>15</td></tr>
<tr><td>개념</td><td colspan="5">•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와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거나 협의 중인 사업시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 선정 또는 협의 중인 사업시행자가 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의5, 제30조, 제38조의4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1조 등</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와 협의 중 사업시행자가 있는지를 기재
• 선정 또는 협의 중인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 증빙자료 :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①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출자비율, 재무건전성 등 특정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여부 지자체 검토의견]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 작성)
•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 협의 중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 기재
• 법적요건 충족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의견 기재</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와 법적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평가표]
<table>
<tr><td colspan="2">구분</td><td>적합</td><td>보통</td><td colspan="2">부적합</td><td></td></tr>
<tr><td rowspan="2">기준</td><td>사업시행자 선정 여부</td><td>선정</td><td>협의 중</td><td>선정</td><td>협의 중</td><td rowspan="2">선정 또는 협의 중 사업시행자 없음</td></tr>
<tr><td>법적요건 충족 여부</td><td>충족</td><td>충족</td><td>미충족</td><td>미충족</td></tr>
<tr><td colspan="2">배점</td><td>15</td><td>12</td><td>9(제척)</td><td>9(제척)</td><td>9(제척)</td></tr>
<tr><td colspan="2">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사업시행자 투자의향</td><td>배점</td><td>15</td></tr>
<tr><td>개념</td><td colspan="5">• 사업시행자의 투자의향 및 사업추진의 적극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 협약서 등 체결 여부와 협약서 등의 효력 및 구체성을 검토
-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 협약서 등(투자약정서(LOC, Letter of Commitment), 투자협정서(LOA, Letter of Agre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을 확인
-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업관련 내용(투자금액, 협약기간, 협약 주체간 역할 등)의 구체성과 효력 등을 확인</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별도서식은 없으며, 협약서 등 증빙자료로 대체
• 증빙자료 : 투자의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①협약서 등(LOC, LOA, MOU 등) 사본을 제출</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협약서 등 체결 여부와 효력 및 구체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 협약서 등 체결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최하등급으로 평가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평가표]
<table><tr><td>구분</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부진</td></tr><tr><td>기준</td><td colspan="5">협약서 등 체결 여부, 협약서의 효력, 협약서의 구체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td></tr><tr><td>배점</td><td>15</td><td>13.5</td><td>12</td><td>10.5</td><td>9</td></tr><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table></td></tr>
</table>

(3) 토지 확보 용이성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토지 확보 용이성</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5">• 사업대상지의 토지 확보 용이성과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노력을 파악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토지 확보율={(사업시행자 매입면적+사용동의서 확보 사유지 면적)/사업대상지 면적}×100</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면적과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사유지 면적이 사업대상지에서 차지하는 비율(토지 확보율)을 검토
- 사업시행자 매입면적 :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한 사업대상지 면적
- 사용동의서 확보 사유지 면적 :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사업대상지 면적</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사업대상지의 토지소유 현황과 사업시행자의 토지 확보 노력을 중심으로 작성
• 증빙자료 : ①사업대상지 토지소유 현황(표) 및 도면, ②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와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토지의 현황(표) 및 도면을 제출
[토지 확보율]
(단위 : ㎡, %, 필지, 명)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합계 (a)</th><th colspan="4">국공유지</th><th colspan="4">사유지</th><th rowspan="2">기타</th><th rowspan="2">토지 확보율 {(b+c)/a}×100</th></tr>
<tr><th>소계</th><th>시·군유지</th><th>도유지</th><th>국유지</th><th>소계</th><th>사업 시행자 매입(b)</th><th>사용 동의서 확보(c)</th><th>사용 동의서 미확보</th></tr>
<tr><td>면적</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평가대상</td></tr>
<tr><td>필지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소유자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토지 확보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소유자수 및 필지수가 많아 토지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평가사유를 기재한 후 배점 조정이 가능
[토지 확보의 용이성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기준</td><td>40% 이상</td><td>30% 이상</td><td>20% 이상</td><td>10% 이상</td><td>10% 미만</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재원조달 가능성

(1) 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

지표	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	배점	25
개념	• 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상 사업비를 감당할 능력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동종업종 부채비율 대비 사업시행자 부채비율={(부채/자본)/(동종업종 부채/동종업종 자본)}×100		
중점 검토 사항	• 동종업종 부채비율 대비 사업시행자 부채비율(동종업종의 비채비율과 비교한 사업시행자 부채비율)을 검토 - 부채 : 국비 신청 직전 년도 결산액 기준 해당 기업의 부채액 ※ 사업시행자가 SPC의 경우 본사의 재무안전성을 평가하며, 출자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 - 자본 : 국비 신청 직전 년도 결산액 기준 해당 기업의 자본금 - 동종업종 부채, 동종업종 자본 : 업종별 구분에서 사업시행자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부채와 자본 평균 ※ 통계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경기·기업경영(사업체)-기업경영(사업체/기업체)-기업경영분석-자산·자본의 관계 비율)		
지자체 제출 서식	• 동종업종 부채비율 대비 사업시행자 부채비율을 산출 • **증빙자료** : ①국비 신청 직전 년도말 사업시행자의 재무재표 [부채비율(국비 신청 직전 년도 결산액 기준)] (백만원, %)		

동종업종 부채비율			사업시행자 부채비율			동종업종 부채비율 대비 사업시행자 부채비율 (d/a)×100
부채비율 (a=(b/c)×100)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d=(e/f)×100)	부채 (e)	자본 (f)	
						평가대상

평가 등급	• 지자체가 산출한 동종업종 부채비율 대비 사업시행자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 평가표]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기준 (동종기업 부채비율 대비 사업시행자 부채비율)	0.5배 미만	0.5배 이상 ~1배 미만	1배 이상 ~1.5배 미만	1.5배 이상 ~2배 미만	2배 이상
배점	25	22.5	20	17.5	15

(2)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

지표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	배점	35
개념	•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상 사업비를 감당할 능력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		
중점 검토 사항	•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을 검토 - 신용평가기관 예 :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등 - B등급(BBB등급) 이상을 보통 수준으로 판단(건설사의 경우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이상이 되어야 시공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지자체 제출 서식	• 신용평가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된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을 기재 • **증빙자료** : ①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사업시행자 신용평가보고서 등		
평가 등급	•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한국신용평가 회사채등급은 9단계 기준(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BBB 이상을 투자등급으로 BB 이하 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구분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기관	평가일자	신용등급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 평가표]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기준(신용등급)	AAA	AA	A	BBB	BBB 미만
배점	35	31.5	28	24.5	21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민간 공동인 경우

1) 모사업의 진척 정도

(1)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td><td>배점</td><td>15</td></tr>
<tr><td>개념</td><td colspan="5">•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와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거나 협의 중인 사업시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
• 선정 또는 협의 중인 사업시행자가 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의5, 제30조, 제38조의4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1조 등</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와 협의 중 사업시행자가 있는지를 기재
• 선정 또는 협의 중인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 증빙자료 :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①근거법 및 관련법에서 출자비율, 재무건전성 등 특정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여부 지자체 검토의견]
• 별도서식 없음(1쪽 이내 작성)
•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 협의 중 사업시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 기재
• 법적요건 충족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의견 기재</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와 법적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평가표]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적합</th><th>보통</th><th colspan="2">부적합</th></tr>
<tr><td rowspan="2">기준</td><td>사업시행자 선정 여부</td><td>선정</td><td>협의 중</td><td>선정</td><td>협의 중</td><td rowspan="2">선정 또는 협의 중 사업시행자 없음</td></tr>
<tr><td>법적요건 충족 여부</td><td>충족</td><td>충족</td><td>미충족</td><td>미충족</td></tr>
<tr><td colspan="2">배점</td><td>15</td><td>12</td><td>9(제척)</td><td>9(제척)</td><td>9(제척)</td></tr>
<tr><td colspan="2">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table>
<tr><td>지표</td><td>사업시행자 투자의향</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3">• 사업시행자의 투자의향 및 사업추진의 적극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 협약서 등 체결 여부와 협약서 등의 효력 및 구체성을 검토
-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 협약서 등(투자약정서(LOC, Letter of Commitment), 투자협정서(LOA, Letter of Agre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을 확인
-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업관련 내용(투자금액, 협약기간, 협약 주체간 역할 등)의 구체성과 효력 등을 확인</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별도서식은 없으며, 협약서 등 증빙자료로 대체
• 증빙자료 : 투자의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①협약서 등(LOC, LOA, MOU 등) 사본을 제출</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협약서 등 체결 여부와 효력 및 구체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 협약서 등 체결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최하등급으로 평가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평가표]
<table><tr><td>구분</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부진</td></tr><tr><td>기준</td><td colspan="5">협약서 등 체결 여부, 협약서의 효력, 협약서의 구체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td></tr><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table></td></tr>
</table>

(3) 토지 확보 용이성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토지 확보 용이성</td><td>배점</td><td>10</td></tr>
<tr><td>개념</td><td colspan="5">• 사업대상지의 토지 확보 용이성과 지자체와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노력을 파악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토지 확보율={(국공유지 면적+민간 사업시행자 매입 면적+사용동의서 확보 사유지 면적)/사업대상지 면적}×100</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지자체 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면적과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사유지 면적이 사업대상지에서 차지하는 비율(토지 확보율)을 검토
- 사업시행자 매입면적 : 지자체 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한 사업대상지 면적
- 사용동의서 확보 사유지 면적 : 지자체 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사업대상지 면적</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사업대상지의 토지소유 현황과 지자체 및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 확보 노력을 중심으로 작성
• 증빙자료 : ①사업대상지 토지소유 현황(표) 및 도면, ②지자체 및 민간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와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토지의 현황(표) 및 도면을 제출
[토지 확보율]
(단위 : ㎡, %, 필지, 명)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합계 (a)</td><td colspan="4">국공유지</td><td colspan="4">사유지</td><td rowspan="2">기타</td><td rowspan="2">토지 확보율 {(b+c+d)/a}×100</td></tr>
<tr><td>소계 (b)</td><td>시·군유지</td><td>도유지</td><td>국유지</td><td>소계</td><td>사업 시행자 매입(c)</td><td>사용 동의서 확보(d)</td><td>사용 동의서 미확보</td></tr>
<tr><td>면적</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평가대상</td></tr>
<tr><td>필지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소유자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토지 확보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소유자수 및 필지수가 많아 토지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평가사유를 기재한 후 배점 조정이 가능
[토지 확보의 용이성 평가표]
<table>
<tr><td>구분</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부진</td></tr>
<tr><td>기준</td><td>40% 이상</td><td>30% 이상</td><td>20% 이상</td><td>10% 이상</td><td>10% 미만</td></tr>
<tr><td>배점</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4)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table>
<tr><td>지표</td><td colspan="2">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td><td>배점</td><td>5</td></tr>
<tr><td>개념</td><td colspan="4">• 사업대상지에서 국토부 또는 타 부처에 의해 개발사업이 추진되었거나(기 투입되었거나) 추진 중인지를 파악하여 개발계획 추진 여건이 성숙하였는지,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개발효과의 제고가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4">•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관련 부처로부터 국비지원이 이루어졌거나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 국비지원과 매칭하여 투입되었거나 투입 예정인 지방비도 검토
• 관련 부처의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거나 확보된 상황은 아니지만, 국비지원 확보 가능성이 높은지를 검토
• 국토부 또는 타 부처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4">•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와 국비 및 지방비 등 사업비 집행 실적을 작성
- 공간적 범위 : 사업대상지에서 이루어진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으로 개발계획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기재
- 시간적 범위 : 현재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상 사업을 기재
• 증빙자료 : ①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계획 등), ②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 의한 국비 및 지방비 등 사업비 집행 실적이 포함된 추진 현황 자료, ③기타 자료제출 서식에서 설명이 필요한 보완자료 등을 제출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및 사업비 집행 실적]
<table>
<tr><td rowspan="3">관련 부처</td><td rowspan="3">관련부처 종합계획명</td><td rowspan="3">관련 부처 종합계획상 사업명</td><td colspan="8">계획사업비 및 집행실적</td><td rowspan="3">관련 부처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 주요 사업내역</td></tr>
<tr><td colspan="2">소계</td><td colspan="2">국비</td><td colspan="2">지방비</td><td colspan="2">민자</td></tr>
<tr><td>계획</td><td>집행</td><td>계획</td><td>집행</td><td>계획</td><td>집행</td><td>계획</td><td>집행</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4">•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와 사업비 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기준</td><td>반영,
집행실적 있음</td><td>반영</td><td>미반영,
사업계획 수립 중</td><td>미반영,
협의 중</td><td>미반영</td></tr>
<tr><td>배점</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재원조달 가능성

(1) 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

<table>
<tr><td>지표</td><td colspan="4">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td><td>배점</td><td>20</td></tr>
<tr><td>개념</td><td colspan="6">• 개발계획상 국비와 지방비 투자계획 중 기투자 및 관련 부처 등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실적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국비 기투자+지방비 기투자+국비 확보액+지방비 확보액)/
(개발계획상 국비+개발계획상 지방비)}×100</td></tr>
<tr><td>중점검토사항</td><td colspan="6">• 개발계획상 국비와 지방비 투자계획 대비 기투자되었거나 관련 부처 등으로부터 확보한 예산액의 비율을 검토
- 개발계획상 사업비 이외에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집행한 국비 및 지방비는 ‘관계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평가지표에서 검토하므로 주의</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6">• 개발계획상 국비와 지방비 투자계획 중 평가시점까지 기투자된 국비와 지방비의 누계를 기재
• 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 중 관련 부처로부터 확보한 평가시점 이후의 예산을 기재
• 개발계획상 지방비 투자계획 중 평가시점 이후 확보된 지방비 예산을 기재
• 증빙자료 : 개발계획상 국비 투자계획 중 ①기투자 사업비 내역, ②관련 부처 예산 확보 증빙자료(공문서 등), 개발계획상 지방비 투자계획 중 ③기투자 사업비 내역, ④지방비 예산 확보 증빙자료(공문서 등)를 제출
[기투자 및 예산 확보 여부]
(단위 ; 천원, %)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관련 부처
(지원 부처)</td><td rowspan="2">개발계획상
투자계획</td><td colspan="2">기투자 누계</td><td colspan="2">예산확보</td></tr>
<tr><td>집행액</td><td>집행기간</td><td>예산확보액</td><td>투자예정 기간</td></tr>
<tr><td rowspan="3">국비</td><td>문화재청</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농림축산식품부</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소계</td><td>(a)</td><td>(b)</td><td></td><td>(c)</td><td></td></tr>
<tr><td rowspan="2">지방비</td><td>도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군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소계</td><td>(d)</td><td>(e)</td><td></td><td>(f)</td><td></td></tr>
<tr><td colspan="2">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td><td colspan="5">{(b+c+e+f)/(a+d)}×100</td></tr>
</table></td></tr>
<tr><td>평가등급</td><td colspan="6">• 지자체가 작성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을 기준으로 평가
• 다만, 확보한 국비 및 지방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사유 기재 후 배점 조정이 가능
[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 평가표]
<table>
<tr><td>구분</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부진</td></tr>
<tr><td>기준</td><td>50% 이상</td><td>40% 이상</td><td>30% 이상</td><td>20% 이상</td><td>20% 미만</td></tr>
<tr><td>배점</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td><td>배점</td><td>15</td></tr>
<tr><td>개념</td><td colspan="5">• 민간 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을 파악하여 민간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상 사업비를 감당할 능력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동종업종 부채비율 대비 민간 사업시행자 부채비율={(부채/자본)/(동종업종 부채/동종업종 자본)}×100</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동종업종 부채비율 대비 민간 사업시행자 부채비율(동종업종의 비채비율과 비교한 민간 사업시행자 부채비율)을 검토
- 부채 : 국비 신청 직전 년도 결산액 기준 해당 기업의 부채액
※ 사업시행자가 SPC의 경우 본사의 재무안전성을 평가하며, 출자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
- 자본 : 국비 신청 직전 년도 결산액 기준 해당 기업의 자본금
- 동종업종 부채, 동종업종 자본 : 업종별 구분에서 민간 사업시행자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부채와 자본 평균
※ 통계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경기·기업경영(사업체)-기업경영(사업체/기업체)-기업경영분석-자산·자본의 관계 비율)</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동종업종 부채비율 대비 민간 사업시행자 부채비율을 산출
• 증빙자료 : ①국비 신청 직전 년도말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무재표
[부채비율(국비 신청 직전 년도 결산액 기준)]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3">동종업종 부채비율</th><th colspan="3">사업시행자 부채비율</th><th rowspan="2">동종업종 부채비율 대비 사업시행자 부채비율 (d/a)×100</th></tr>
<tr><th>부채비율 (a=(b/c)×100)</th><th>부채 (b)</th><th>자본 (c)</th><th>부채비율 (d=(e/f)×100)</th><th>부채 (e)</th><th>자본 (f)</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평가대상</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지자체가 산출한 동종업종 부채비율 대비 민간 사업시행자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기준
(동종기업 부채비율 대비 민간 사업시행자 부채비율)</td><td>0.5배 미만</td><td>0.5배 이상
~1배 미만</td><td>1배 이상
~1.5배 미만</td><td>1.5배 이상
~2배 미만</td><td>2배 이상</td></tr>
<tr><td>배점</td><td>15</td><td>13.5</td><td>12</td><td>10.5</td><td>9</td></tr>
</table></td></tr>
</table>

(3)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

<table>
<tr><td>지표</td><td>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td><td>배점</td><td>25</td></tr>
<tr><td>개념</td><td colspan="3">•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을 파악하여 민간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상 사업비를 감당할 능력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을 검토
- 신용평가기관 예 :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등
- B등급(BBB등급) 이상을 보통 수준으로 판단(건설사의 경우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이상이 되어야 시공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신용평가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된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을 기재
• 증빙자료 : ①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민간 사업시행자 신용평가보고서 등
[신용평가등급]
<table><tr><th>신용평가기관</th><th>평가일자</th><th>신용등급</th></tr><tr><td></td><td></td><td></td></tr></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민간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한국신용평가 회사채등급은 9단계 기준(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BBB 이상을 투자등급으로 BB 이하 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구분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 평가표]
<table><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tr><td>기준(신용등급)</td><td>AAA</td><td>AA</td><td>A</td><td>BBB</td><td>BBB 미만</td></tr><tr><td>배점</td><td>25</td><td>22.5</td><td>20</td><td>17.5</td><td>15</td></tr></table></td></tr>
</table>

2. 기반시설사업(2단계) 평가지표

1)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

<table>
<tr><td>지표</td><td>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td><td>배점</td><td>-</td></tr>
<tr><td>개념</td><td colspan="3">•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을 평가
- 전통적 4단계 수요 추정방법을 활용하여 추정된 교통수요
※ 4단계 수요추정방법 : 통행 발생 → 통행분포 → 수단 선택 → 통행 배정
- 추정된 유발교통수요가 해당 기반시설사업(도로) 적정 교통수요의 60% 이상이면, 낙후지역임을 감안하여 수요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
• 단순 연계형 기반시설사업(도로)의 경우에는 개략 평가를 실시
- 원단위법으로 개략적인 교통수요 평가
- 기존도로와 모사업의 사업대상지만 연계되는 매우 단순한 형태의 소규모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원단위법에 의해 개략적인 교통수요 평가
- 사업유형별 통행량 발생 계수 등을 산출하여 교통수요추정
- 모사업의 사업대상지와 다른 도로 또는 사업대상지와 연계되는 네트워크형 도로의 경우에는 전통적 4단계 수요 추정방법에 의해 유발교통수요를 추정</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별도서식은 없으며, 증빙자료로 대체
• 증빙자료 : 실시설계 보고서를 제출</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별도 평가표가 없으며, 평가의견 및 대안(권고안)을 제시
- 수요 추정 결과 정상 수요의 60%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시설규모를 결정하고, 수요 추정 결과 정상 수요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낙후지역임을 감안하여 시설의 규모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 평가의견]
<table><tr><td>평가의견 및
대안(권고안)제시</td><td></td></tr></table></td></tr>
</table>

2) 시설규모의 적절성

지표	시설규모의 적절성	배점	-
개념	• 시설규모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중점 검토 사항	• 시설규모의 적절성을 평가 - 시설규모의 적절성 :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의 다차로 도로분석 방법에 의해 산출된 차로수와 해당 기반시설사업의 차로수를 비교 - 모사업의 유발교통수요에 의한 해당 기반시설사업의 시설규모(차로수)를 결정 → 산출된 시설규모(차로수)와 해당 기반시설사업의 계획 상 시설규모(차로수)를 비교 → 계획 상 시설규모(차로수)의 수용 또는 대안 제시		
지자체 제출 서식	• 별도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없음		
평가 등급	• 별도 평가표가 없으며, 평가의견 및 대안(권고안)을 제시 - 산출된 시설규모(차로수)와 해당 기반시설사업의 계획 상 시설규모(차로수)를 비교하여 계획 상 시설규모(차로수)의 수용 또는 대안 의견을 제시 [시설규모의 적절성 평가의견] 평가의견 및 대안(권고안)제시		

3) 국고지원 비용 적절성

지표	국고지원 비용 적절성	배점	-
개념	• 국고지원 비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중점 검토 사항	• 국고지원비용의 적절성을 평가 - 적정 시설규모 및 시설규격을 평가하여 적정 비용을 산출하고, 그 적절성을 검토		
지자체 제출 서식	• 별도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없음		
평가 등급	• 별도 평가표가 없으며, 평가의견 및 대안(권고안)을 제시 • 예타지침상 표준사업비 산정방식에 의한 사업비 제시 [국고지원 비용 적절성 평가의견] 평가의견 및 대안(권고안)제시		

[부록 3]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 평가표 및 작성서식

【개발계획 종합평가 등급 및 등급분류 기준】

등급	등급의 의미	기준항목
완료	• 단위사업이 모두 완료 (100% 사업완료)	완료사업 100% : 100점
	• 단위사업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	계획 대비 집행실적+연도별 계획 대비 착수사업 비중 : 90점 이상
	• 단위사업의 상당수가 다소 지연	계획 대비 집행실적+연도별 계획 대비 착수사업 비중 : 90점 미만~70점 이상
	• 단위사업이 불투명하거나,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	계획 대비 집행실적+연도별 계획 대비 착수사업 비중 : 70점 미만
보류	• 단위사업의 대부분이 개발기간 이전의 사업으로 개발계획 추진 일정 상 종합평가가 다소 부적합	지구지정 후 2년 미만 사업은 보류

o 개발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는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아래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

- '계획 대비 집행실적' 평가점수와 '연도별 계획 대비 착수사업 비중' 평가점수의 합계

o 단위사업이 모두 완료된 개발계획은 '완료' 등급으로 구분하고, 지구 지정 후 2년 미만 사업은 '보류' 등급으로 구분

o 종합평가결과 등급 구분시 단위사업이 모두 완료된 '완료' 등급과 개발기간이 충분치 않아 종합평가가 다소 부적합한 '보류' 등급 이외에는 계획 대비 집행실적(총배점 : 20점)과 연도별 계획 대비 착수사업 비중(총배점 : 80점)의 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

- 녹색등 : 90점 이상
- 노란색등 : 90점 미만~70점 이상
- 적색등 : 70점 미만

1. 집행실적 : 총예산현액 대비 총집행액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총예산현액 대비 총집행액</td><td>배점</td><td>20</td></tr>
<tr><td>개념</td><td colspan="5">• 총예산현액 대비 총집행액(사업공정율)을 산출하여 계획추진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총예산현액 대비 총집행액(사업공정율)=(총집행액/총예산현액)×100</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총예산현액 대비 총집행액(사업공정율)을 평가
- 총집행액 : 평가대상 연도의 사업별 실제 집행액 합계
- 총예산현액 : 평가대상 연도의 사업별 예산현액 합계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추경예산 포함</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총예산현액 대비 총집행액(사업공정율)을 집계하여 작성
- 총예산현액 대비 총집행액은 해당 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평가하는 최초 연도에만 누계로 작성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평가대상 연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에 대해서만 작성
• 증빙자료 : ①집행액 관련 증빙자료(실제 예산 집행액 등 증빙자료)
[총예산현액 대비 총집행액]
(단위 : 천원, %)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4">총예산현액</th><th colspan="4">총집행액</th><th rowspan="2">사업공정율
(a'+b'+c')
/(a+b+c)</th></tr>
<tr><th>계
(a+b+c)</th><th>국비
(a)</th><th>지방비
(b)</th><th>민자
(c)</th><th>계
(a'+b'+c')</th><th>국비
(a')</th><th>지방비
(b')</th><th>민자
(c')</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평가대상</td></tr>
</table>
※ 국비 및 지방비의 예산현액은 평가대상 연도의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추경예산 포함</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지자체에서 작성한 사업공정율을 기준으로 평가
[총예산현액 대비 총집행액 평가표]
<table>
<tr><th>기준
(사업공정율)</th><th>90% 이상</th><th>80% 이상</th><th>70% 이상</th><th>60% 이상</th><th>60% 미만</th></tr>
<tr><td>배점</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able></td></tr>
</table>

2. 사업착수 실적 : 목표 착수사업 대비 실제 착수사업 비중

<table>
<tr><td>지표</td><td>목표 착수사업 대비 실제 착수사업 비중</td><td>배점</td><td>80</td></tr>
<tr><td>개념</td><td colspan="3">• 목표 착수사업 대비 실제 착수사업 비중을 산출하여 계획추진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목표 착수사업 대비 실제 착수사업 비중=(실제 착수사업수/계획 착수사업수)×100</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목표 착수사업 대비 실제 착수사업 비중을 평가
- 해당 연도 목표 착수사업수 대비 실제 착수사업수의 비율(%)로 산정
- 실제 착수사업수 : 해당 연도에 실제로 착수한 사업수 합계
- 계획 착수사업수 : 해당 연도에 추진하기로 계획한 착수사업수 합계</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목표 착수사업 대비 실제 착수사업 비중을 집계하여 작성
- 계획 대비 착수사업 비중은 해당 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평가하는 최초 연도에만 누계로 작성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평가대상 연도의 계획착수 사업수 대비 실제 착수사업수의 비율에 대해서만 작성
[계획 대비 착수사업 비중]
(단위 : 개, %)
<table>
<tr><th>구분</th><th>착수계획 사업수
(a)</th><th>실제 착수사업수
(b)</th><th>착수율
(b/a)×100</th></tr>
<tr><td>1차 년도</td><td></td><td></td><td></td></tr>
<tr><td>2차 년도</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td><td>평가대상</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지자체에서 작성한 목표 착수사업 대비 실제 착수사업 비중을 기준으로 평가
[목표 착수사업 대비 실제 착수사업 비중 평가표]
<table>
<tr><th>기준
(사업공정율)</th><th>60% 이상</th><th>50% 이상</th><th>40% 이상</th><th>30% 이상</th><th>30% 미만</th></tr>
<tr><td>배점</td><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
</table></td></tr>
</table>

[부록 4]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 평가 평가표 및 작성서식

【기반시설사업별 평가결과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가유형 (정성/정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예산집행률 (25)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25	22.5	20	17.5	15	정량
사업공정률 (25)	계획 대비 공정진행정도	25	22.5	20	17.5	15	정량
지방비 확보율 (15)	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1)]	15	13.5	12	10.5	9	정량
민간투자액 확보율 (5)	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2)]	5	4.5	4	3.5	3	정량
추진조직 및 관리 역량 (12)	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 여부 및 운영 역량	6	5.4	4.8	4.2	3.6	정성
	자체 점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량	6	5.4	4.8	4.2	3.6	정성
갈등대처 역량 (18)	민원 등 대응, 조치여부	6	5.4	4.8	4.2	3.6	정성
	문제사업에 대한 해결노력 여부	6	5.4	4.8	4.2	3.6	정성
	부진시 만회노력	6	5.4	4.8	4.2	3.6	정성

주1) 민간투자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민간투자액 확보율의 배점을 합산(지방비 확보율 배점을 20점으로 배정)
주2) 지방비 투입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율의 배점을 합산(민간투자액 확보율 배점을 20점으로 배정)

【기반시설사업별 지자체 자체평가결과표(예시)】

사업명		시행방식	①지자체, ②민간 등 ③지자체·민간 공동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중점 검토사항	배점[1]					자체 평가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예산집행률 (25)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예산집행률)을 평가 • 산식 : (집행액/예산액)×100	25 90% 이상	22.5 80% 이상	20 70% 이상	17.5 60% 이상	15 60% 미만		
사업공정률 (25)	계획 대비 공정진행 정도	• 계획 대비 공정진행 정도(사업공정율)를 평가 • 산식 : (실 공정/계획공정)×100	25 90% 이상	22.5 80% 이상	20 70% 이상	17.5 60% 이상	15 60% 미만		
지방비 확보율 (15)	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2]	• 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지방비 확보율)을 평가 • 산식 : (지방비 실제 조달액/지방비 투입 목표액)×100	15 90% 이상	13.5 80% 이상	12 70% 이상	10.5 60% 이상	9 60% 미만		
민간투자액 확보율 (5)	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3]	• 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민간투자액 확보율)을 평가 • 산식 : (민간투자액/민간투자 계획액)×100	5 90% 이상	4.5 80% 이상	4 70% 이상	3.5 60% 이상	3 60% 미만		
추진조직 및 관리 역량 (12)	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 여부 및 운영 역량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구축 및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 -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 여부 -효율적 업무분장, 운영 실적 등	6 중점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5.4	4.8	4.2	3.6		
	자체 점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량	• 지속적 사업관리 역량을 평가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 -사업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및 DB 구축, 관리 여부 등	6 중점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5.4	4.8	4.2	3.6		
갈등대처 역량 (18)	민원 등 대응, 조치여부	• 민원 등 대응, 조치 여부를 파악하여 지자체의 갈등대처 역량을 평가 -민원 해결건수, 민원 조치내용 -민원 대응 우수 조치사례 등	6 중점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5.4	4.8	4.2	3.6		
	문제사업에 대한 해결노력 여부	• 문제사업에 대한 해결노력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갈등대처 역량을 평가 -문제발생 건수, 발생된 문제에 대한 조치내용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 우수 사례 등	6 중점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5.4	4.8	4.2	3.6		
	부진시 만회노력	• 부진사업에 대한 만회 노력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갈등대처 역량을 평가 -부진사업에 대한 만회 노력 내용 및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우수 조치사례 등	6 중점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5.4	4.8	4.2	3.6		

주1) 계획 대비 공정진행정도(사업공정률), 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지방비 확보율), 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민간투자액 확보율) 등은 목표 달성률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우수' 등급으로 하향 조정(의도적인 낮은 목표설정 방지)

주2) 민간투자 계획이 없을 경우(상단의 시행방식을 ①로 선택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액 확보율의 배점을 합산(지방비 확보율 배점을 20점으로 배정)

주3) 지방비 투입 계획이 없을 경우(상단의 시행방식을 ②로 선택한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율의 배점을 합산(민간투자액 확보율 배점을 20점으로 배정)

1. 예산집행률 :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예산현액 대비 집행액</td><td>배점</td><td>25</td></tr>
<tr><td>개념</td><td colspan="5">•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예산집행률)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예산집행률) = (집행액/예산액)×100</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예산집행률을 검토
- 예산액 대비 집행 실적을 비율(%)로 산정
- 집행액 : 평가대상 연도의 실제 집행액
- 예산액 : 평가대상 연도의 예산액(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반영)</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을 산출
• 증빙자료 : 평가대상 연도의 예산액과 집행액 증빙자료를 제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단위 : 천원, %)
<table><tr><td colspan="5">집행액*</td><td colspan="3">예산액**</td><td rowspan="2">예산집행률
(a/b)×100</td></tr><tr><td>계(a)</td><td>1분기</td><td>2분기</td><td>3분기</td><td>4분기</td><td>계(b=c+d)</td><td>당해연도
예산액(c)</td><td>전년도
이월액(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평가대상</td></tr></table>*, ** 집행액과 예산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포함함</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지자체가 작성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 평가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예산집행률) 평가표]
<table><tr><td>구분</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부진</td></tr><tr><td>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td><td>90% 이상</td><td>80% 이상</td><td>70% 이상</td><td>60% 이상</td><td>60% 미만</td></tr><tr><td>배점</td><td>25</td><td>22.5</td><td>20</td><td>17.5</td><td>15</td></tr></table></td></tr>
</table>

2. 사업공정률 : 계획 대비 공정진행정도

<table>
<tr><td>지표</td><td>계획 대비 공정진행정도</td><td>배점</td><td>25</td></tr>
<tr><td>개념</td><td colspan="3">• 계획 대비 공정진행 정도(사업공정율)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계획 대비 공정진행정도(사업공정률)=(실 공정/실시계획상 공정)×100</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사업공정율을 검토
- 계획 공정 대비 사업 집행 실적을 비율(%)로 산정
- 실 공정 : 평가대상 연도의 실제 공정
- 실시계획상 공정 : 실시계획상 평가대상 연도의 공정</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사업공정율을 산출
• 증빙자료 : 실 공정 증빙자료를 제출
[계획 대비 공정진행정도(사업공정율)]
(단위 : 천원)
<table><tr><th>실시계획상 공정(a)</th><th>실 공정(b)</th><th>사업공정률((b/a)×100)</th></tr><tr><td></td><td></td><td>평가대상</td></tr></table>※ 실시계획상 공정 : 실시계획 수립 중일 경우에는 개발계획상 공정 적용</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지자체가 작성한 계획 대비 공정진행 정도(사업공정율)를 기준으로 평가
[계획 대비 공정진행 정도(사업공정율) 평가표]
<table><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tr><td>기준
(사업공정률)</td><td>90% 이상</td><td>80% 이상</td><td>70% 이상</td><td>60% 이상</td><td>60% 미만</td></tr><tr><td>배점</td><td>25</td><td>22.5</td><td>20</td><td>17.5</td><td>15</td></tr></table>※ 목표 달성률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우수’ 등급으로 하향 조정(의도적인 낮은 목표설정 방지)</td></tr>
</table>

3. 지방비 확보율 : 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

<table>
<tr><td>지표</td><td>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td><td>배점</td><td>15</td></tr>
<tr><td>개념</td><td colspan="3">• 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지방비 확보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지방비 확보율)=(지방비 실제 조달액/지방비 투입 목표액)×100</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지방비 확보율을 검토
- 지방비 투입 목표액에 대한 지방비 실제 조달액의 비율(%)로 산정
- 지방비 실제 조달액 : 평가대상 연도의 지방비(추경예산 반영) 조달액
- 지방비 투입 목표액 : 실시계획상 제시된 평가대상 연도의 지방비 투입 목표액</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지방비 확보율을 산출
• 증빙자료 : 평가대상 연도의 실제 지방비 조달액 증빙자료를 제출
[지방비 확보율]
(단위 : 천원, %)
<table>
<tr><th>실시계획상 지방비 투입 목표액(a)</th><th>지방비 실제 조달액(b)</th><th>지방비 확보율(a/b×100)</th></tr>
<tr><td></td><td></td><td>평가대상</td></tr>
</table>
※ 실시계획상 지방비 투입 목표액 : 실시계획 수립 중일 경우에는 개발계획상 지방비 투입 목표액 적용</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지자체가 작성한 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지방비 확보율)을 기준으로 평가
- 민간투자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민간투자액 확보율의 배점을 합산(지방비 확보율 배점을 20점으로 배정)
[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지방비 확보율)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기준
(지방비 확보율)</td><td>90% 이상</td><td>80% 이상</td><td>70% 이상</td><td>60% 이상</td><td>60% 미만</td></tr>
<tr><td>배점</td><td>15</td><td>13.5</td><td>12</td><td>10.5</td><td>9</td></tr>
</table>
※ 목표 달성률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우수’ 등급으로 하향 조정(의도적인 낮은 목표설정 방지)</td></tr>
</table>

4. 민간투자액 확보율 : 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td><td>배점</td><td>5</td></tr>
<tr><td>개념</td><td colspan="5">• 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민간투자액 확보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 산식 : 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민간투자액 확보율)=(민간투자액/민간투자 계획액)×100</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민간투자액 확보율을 검토
- 민간투자 계획액에 대한 실제 민간투자액의 비율(%)로 산정
- 민간투자액 : 평가대상 연도 연말기준으로 민간에서 실제로 투자한 금액
- 민간투자 계획액 : 실시계획상 제시된 평가대상 연도의 민간투자 계획액</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민간투자액 확보율을 산출
• 증빙자료 : 실제 민간투자액 증빙자료(공문서 사본, 영수증 사본 등)를 제출
[민간투자액 확보율]
(단위 : 천원, %)
<table>
<tr><th>실시계획상 민간투자 계획액(a)</th><th>실제 민간투자액(b)</th><th>민간투자율(a/b×100)</th></tr>
<tr><td></td><td></td><td>평가대상</td></tr>
</table>
※ 실시계획상 민간투자 계획액 : 실시계획 수립 중일 경우에는 개발계획상 민간투자 계획액 적용</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지자체가 작성한 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민간투자액 확보율)을 기준으로 평가
• 지방비 투입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율의 배점을 합산(민간투자액 확보율 배점을 20점으로 배정)
[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민간투자액 확보율)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기준
(민간투자액 확보율)</td><td>90% 이상</td><td>80% 이상</td><td>70% 이상</td><td>60% 이상</td><td>60% 미만</td></tr>
<tr><td>배점</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r>
</table>
※ 목표 달성률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우수’ 등급으로 하향 조정(의도적인 낮은 목표설정 방지)</td></tr>
</table>

5. 추진조직 및 관리 역량

1) 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 여부 및 운영 역량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 여부 및 운영 역량</td><td>배점</td><td>6</td></tr>
<tr><td>개념</td><td colspan="5">•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구축 및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 여부,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
- 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 여부 :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조직 운영의 효율성 : 전담조직이 사업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효율적인 업무 분장, 운영 실적 등)를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사업추진 전담체계 조직 현황 및 사업추진 전담체계 운영실적을 작성
- 사업추진 전담체계 운영실적은 전담조직의 주요 활동(회의개최 실적,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실적 등)으로 작성
• 증빙자료 : ①회의 및 설명회 개최 실적 증빙자료(회의록 등)를 제출
[사업추진 전담체계 조직 현황]
<table>
<tr><th>조직명</th><th>구성시점</th><th>소속</th><th>담당자(구성원)</th><th>담당업무</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able>
* 구성원은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교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추진 전담체계 운영 실적]
<table>
<tr><th>일시</th><th>활동내역*</th><th>참석자</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전담조직이 주도적으로 노력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 여부, 사업추진 전담체계 조직구성, 사업추진 전담체계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 여부 및 운영 역량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기준</td><td colspan="5">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여부, 사업추진 전담체계 조직구성,
사업추진 전담체계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td></tr>
<tr><td>배점</td><td>6</td><td>5.4</td><td>4.8</td><td>4.2</td><td>3.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자체 점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량

<table>
<tr><td>지표</td><td>자체 점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량</td><td>배점</td><td>6</td></tr>
<tr><td>개념</td><td colspan="3">• 주기적 점검시스템 운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해당 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를 검토
- 점검시스템 운용을 통해, 추진이 미흡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사업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및 DB 구축, 관리 여부를 검토
- 개발사업 현황 정리수준의 DB는 사업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및 DB로 볼 수 없음
- 점검시스템 및 DB란 연도별로 집행액, 예산액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 지연된 사업 및 추진상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DB를 의미
- 국토부에서 제시한 개발사업 관리 DB(이하 ‘국토부 개발사업 관리 DB’)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DB 작성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 국토부 개발사업 관리 DB의 경우, 연도별로 집행액, 예산액 등의 투입실적을 정리하고 사업추진 상태를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장기 지연된 사업을 구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별도서식은 없으며, 증빙자료로 대체
• 증빙자료 : ①자체 점검을 통한 사업관리 내역 및 실적(보고문건, 결재문 등), ②자체 개발사업 관리 DB 출력본 및 엑셀 파일(사업별 지구 지정 시점부터 평가시점까지 자료가 포함되도록 제시, 국토부에서 제시한 개발사업 관리 DB 작성 대상 사업유형의 경우에는 이를 제시)을 제출</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해당 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 해당 사업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및 DB 구축 및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자체 점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량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기준</td><td colspan="5">해당 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
해당 사업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및 DB 구축 및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td></tr>
<tr><td>배점</td><td>6</td><td>5.4</td><td>4.8</td><td>4.2</td><td>3.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6. 갈등대처 역량

1) 민원 등 대응, 조치여부

<table>
<tr><td>지표</td><td colspan="3">민원 등 대응, 조치여부</td><td>배점</td><td>6</td></tr>
<tr><td>개념</td><td colspan="5">• 민원 등 대응, 조치 여부를 파악하여 지자체의 갈등대처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5">• 민원 해결 건수, 민원 조치 내용, 민원 대응 우수 조치사례 등을 검토
- 민원 해결 건수 : 전체 민원 중 단순 문의성 민원을 제외한 사업관련 민원에 대한 조치 건수
※ 평가대상 민원 : 질의, 법령해석 등의 단순 문의성 민원을 제외한 민원수
- 민원 조치 내용 : 사업관련 민원에 한정하여 민원에 대한 해결 여부와 조치내용
- 민원 대응 우수 조치사례 등</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5">• 민원 발생현황과 민원 해결 여부 및 조치내용, 민원대응 우수사례 등을 작성
[민원 발생현황]
<table>
<tr><th>전체민원수(a)</th><th>단순민원수(b)</th><th>사업관련 민원수(a-b)</th></tr>
<tr><td></td><td></td><td></td></tr>
</table>
[민원 해결여부 및 조치내용]
<table>
<tr><th>No.</th><th>년월</th><th>민원주체</th><th>사업관련 민원내용</th><th>해결여부(O, X)</th><th>조치내용</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민원대응 우수사례]
<table>
<tr><td>• 별도 양식은 없으며, 1건당 1쪽 이내(최대 5건 이내)로 작성
• 민원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강조
• 법, 조례 등 제도개선이나 예산 절감 등을 부각</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5">• 민원 해결 건수, 민원 조치 내용, 민원 대응 우수 조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민원 등 대응, 조치여부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기준</td><td colspan="5">민원 해결 건수, 민원 조치 내용, 민원 대응 우수 조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td></tr>
<tr><td>배점</td><td>6</td><td>5.4</td><td>4.8</td><td>4.2</td><td>3.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2) 문제사업에 대한 해결노력 여부

<table>
<tr><td>지표</td><td>문제사업에 대한 해결노력 여부</td><td>배점</td><td>6</td></tr>
<tr><td>개념</td><td colspan="3">• 문제사업에 대한 해결노력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갈등대처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문제발생 건수, 발생된 문제에 대한 조치내용,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 우수 사례 등을 검토
- 문제발생 건수 : 문제발생 건수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을 요하는 문제로 한정
- 발생된 문제에 대한 조치내용 :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과 조치내용
-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 우수 사례(최대 3가지) 등</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문제 발생 건수 및 해결노력과 조치내용, 문제해결 우수사례 등을 작성
• 증빙자료 : 문제해결 과정 및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공문, 협조문, 회의록, 시행문 등)를 제출
[문제 발생 건수 및 해결노력과 조치내용]
<table>
<tr><th>No.</th><th>년월</th><th>문제발생 내용</th><th>조치내용 및 해결노력</th><th>성과</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문제해결 우수사례]
<table>
<tr><td>• 별도 양식은 없으며, 1건당 1쪽 이내(최대 5건 이내)로 작성
• 문제발생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 내용, 해결노력 사항을 강조
•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나 예산절감 등을 부각</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문제발생 건수 및 발생된 문제에 대한 조치내용,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 우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문제사업에 대한 해결노력 여부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기준</td><td colspan="5">문제발생 건수 및 발생된 문제에 대한 조치내용,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 우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td></tr>
<tr><td>배점</td><td>6</td><td>5.4</td><td>4.8</td><td>4.2</td><td>3.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

3) 부진시 만회노력

<table>
<tr><td>지표</td><td>부진시 만회노력</td><td>배점</td><td>6</td></tr>
<tr><td>개념</td><td colspan="3">• 부진사업에 대한 만회 노력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갈등대처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td></tr>
<tr><td>중점
검토
사항</td><td colspan="3">• 부진사업에 대한 만회 노력 내용 및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우수 조치사례 등을 검토</td></tr>
<tr><td>지자체
제출
서식</td><td colspan="3">• 사업 부진시 사유와 만회노력 내용 및 결과, 만회노력 우수 사례 등을 작성
• 증빙자료 : 부진사업 조치내용 및 성과 관련 증빙가능 자료(공문, 협조문, 회의록, 시행문 등)를 제출
[사업 부진시 사유, 만회노력 내용 및 결과]
<table>
<tr><th>No.</th><th>부진 사유</th><th>조치내용 및 해결노력</th><th>성과(정상화 여부 기재)</th></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만회 노력 우수 사례]
<table>
<tr><td>• 별도 양식은 없으며, 1건당 1쪽 이내(최대 5건 이내)로 작성
• 부진발생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 내용, 해결노력 사항을 강조
• 부진사업 만회노력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되어 발생한 파급효과 사례를 부각</td></tr>
</table></td></tr>
<tr><td>평가
등급</td><td colspan="3">• 부진사업에 대한 만회 노력 내용 및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우수 조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부진시 만회노력 평가표]
<table>
<tr><th>구분</th><th>탁월</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부진</th></tr>
<tr><td>기준</td><td colspan="5">부진사업에 대한 만회 노력 내용 및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우수 조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td></tr>
<tr><td>배점</td><td>6</td><td>5.4</td><td>4.8</td><td>4.2</td><td>3.6</td></tr>
<tr><td>평가사유</td><td colspan="5"></td></tr>
</table></td></tr>
</table>